



자연성지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T/F 작성(협력 : UNESCO MAB)

번역 : 한국보호지역포럼



보호지역 가이드라인 시리즈 제16권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n and
Biosphere
Programme



JAMES COOK UNIVERSITY



Rainforest CRC



WCPA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이 가이드라인은 보호지역 우수사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1권~12권의 가이드라인 편집은 Adrian Phillips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 편집은 Peter Valentine 교수가 담당하였습니다.

본 발간물 시리즈 목록:

National System Planning for Protected Areas. No. 1. Adrian G. Davey, 1998, x + 71pp. Also available in Chinese.

Economic Values of Protected Area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 No. 2. Task Force on Economic Benefits of Protected Areas of the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WCPA) of IUCN, in collaboration with the Economics Service Unit of IUCN, 1998, xii + 52pp. Also available in Russian.

Guidelines for Marine Protected Areas. No. 3. Graeme Kelleher, 1999, xxiv + 107pp.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and Protected Areas: Principles, Guidelines and Case Studies. No. 4. Javier Beltrán, (Ed.),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and WWF International, Gland, Switzerland, 2000, xi + 133pp. Also available in Spanish.

Financing Protected Area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 No. 5. Financing Protected Areas Task Force of the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WCPA) of IUCN, in collaboration with the Economics Unit of IUCN, 2000, viii + 58pp.

Evaluating Effectiveness: A Framework for Assessing th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No. 6. Marc Hockings, Sue Stolton and Nigel Dudley, 2000, x + 121pp. Also available in Chinese and Russian.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for Peace and Co-operation. No. 7. Trevor Sandwith, Clare Shine, Lawrence Hamilton and David Sheppard, 2001, xi + 111pp. Reprinted in 2003. Also available in Chinese.

Sustainable Tourism in Protected Areas: Guidelines for Planning and Management. No. 8. Paul F. J. Eagles, Stephen F. McCool and Christopher D. Haynes, 2002, xv + 183pp. Also available in Chinese, Russian and Spanish.

Management Guidelines for IUCN Category V Protected Areas: Protected Landscapes/Seascapes. No. 9. Adrian Phillips, 2002, xv + 122pp. Also available in Chinese, French and Spanish.

Guidelines for Management Planning of Protected Areas. No. 10. Lee Thomas and Julie Middleton, 2003, ix + 79pp. Also available in Chinese and Japanes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tected Areas: Towards Equity and Enhanced Conservation. No. 11. Grazia Borrini-Feyerabend, Ashish Kothari and Gonzalo Oviedo, 2004, xvii + 112pp.

Forests and Protected Areas: Guidance on the use of the IUCN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No. 12. Nigel Dudley and Adrian Phillips, 2006, x + 58pp.

Sustainable Financing of Protected Areas: A global review of challenges and options. No. 13. Lucy Emerton, Joshua Bishop and Lee Thomas, 2006, x + 97pp.

Evaluating Effectiveness: A Framework for Assessing Management Effectiveness of Protected Areas 2nd Edition. No. 14. Marc Hockings, Sue Stolton, Fiona Leverington, Nigel Dudley and José Courrau, 2006, xiv + 105pp. Also available in Fre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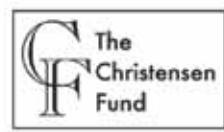
Identification and Gap Analysis of Key Biodiversity Areas: Targets for Comprehensive Protected Area Systems No. 15. Penny F. Langhammer, Mohamed I. Bakarr, Leon A. Bennun, Thomas M. Brooks, Rob P. Clay, Will Darwall, Naamal De Silva, Graham J. Edgar, Güven Eken, Lincoln D.C. Fishpool, Gustavo A.B. da Fonseca, Matthew N. Foster, David H. Knox, Paul Matiku, Elizabeth A. Radford, Ana S.L. Rodrigues, Paul Salaman, Wes Sechrest and Andrew W. Tordoff, 2006, xiv + 116pp.

인터넷 자료: www.iucn.org/themes/wcpa/pubs/guidelines.htm

또는 IUCN Online Library Catalogue: <http://app.iucn.org/dbtw-wpd/iucn.htm>

자연성지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Rainforest CRC



WCPA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1948년에 설립된 IUCN은 80여개 회원국의 110개 정부부처, 800개의 NGO, 180개국 출신의 10,000명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하나의 고유한 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모인 기관이다. IUCN은 세계의 각 사회가 자연의 온전성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원이 공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IUCN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경 지식네트워크로, 세계 75개 이상의 국가가 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IUCN은 다문화적, 다언어적 기관으로서 세계 62개국에 1,000 여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IUCN 본부는 스위스 글랑에 위치해 있다.

웹사이트: www.iucn.org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호지역 관리자,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140개국에 1,300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WCPA는 IUCN 산하의 6개 자발적 위원회 중 하나로서, 스위스 글랑에 소재한 IUCN 본부의 보호지역프로그램(Programme on Protected Areas)에 의해 관리된다. WCPA의 사명은 대표성을 갖는 육지 및 해상 보호지역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설립을 촉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IUCN의 사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www.iucn.org/themes/wcpa

제임스쿡 대학(James Cook University)

제임스쿡 대학은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시리즈에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임스쿡 대학은 학부와 대학원 수준에서 보호지역 관리의 전문화된 수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JCU의 해양과학, 해양생물학, 열대생물학, 환경과학 분야의 연구성과와 관련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은 뛰어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JCU는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MAppSci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학제에 걸친 석·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JCU의 캠퍼스는 그레이트바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와 열대우림 세계유산 지정지 인근의 타운스빌(Townsville)과 케언즈(Cairns)에 소재해 있다.

웹사이트: www.jcu.edu.au

연락처: Peter Valentine 교수 peter.valentine@jcu.edu.au

열대우림 생태관리 협력연구센터(Rainforest CRC)

열대우림 생태관리 협력연구센터는 연구와 교육을 위한 동반자기관으로, 열대우림 지역에서 환경계획 및 관리, 열대우림에 대한 접근 및 방문으로 인한 영향력 관리 및 모니터링, 보전 및 관리 원칙, 변화하는 경관 속에서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 평가, 호주 원주민(Aborigine) 역량개발 및 협력관리 등 핵심 연구분야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센터의 비전은 호주의 열대우림이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및 활용되어 지역공동체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열대우림의 고유한 문화적, 자연적 특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www.rainforest-crc.jcu.edu.au

연락처: rainforestcrc@jcu.edu.au

자연성지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T/F 작성(협력 : UNESCO MAB)

번역 : 한국보호지역포럼

번역 및 감수

제종길	위원장	한국보호지역포럼
신동원	부위원장	한국보호지역포럼
최종관	사무국장	한국보호지역포럼
김보현	간사	한국보호지역포럼
박소영	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허학영	연구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운연	서기관	문화재청
이원호	박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보호지역 가이드라인 시리즈 제16권



자연성지(한국어판)

- ISBN 등록번호 | 978-89-90126-48-1
- 발행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발행처 | 한국보호지역포럼 사무국 T.02-3279-2806
www.paforum.or.kr
- 발행일 | 2012년 9월
- 번역자 | 한국보호지역포럼
제종길, 신동원, 최종관, 김보현, 박소영, 허학영, 조운연, 이원호
- 인쇄 | INNODESIGN T.032-469-2213

원저: Wild, R. and McLeod, C. (Editors) (2008). *Sacred Natural Site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 Gland, Switzerland: IUCN. iii + 72pp.

영어 원문에서 벗어나거나 잘못 또는 누락된 번역은 저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번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영문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사용된 지명과 자료들은 어떤 국가, 영토, 지역, 또는 그 정부의 법적 지위나,
그 국경이나 경계 획정에 대한 IUCN, UNESCO 또는 여타 참여기관 측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 발간물에 제시된 관점들은 IUCN, UNESCO 또는 여타 참여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원저의 제작과정에서 Christensen Fund, LTS International, Sacred Land Film Project, UNESCO,
WWF International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육 및 기타 비상업 목적으로 본 발간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출처를 명기한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자로부터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의 사전 서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재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
발간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지사진: 앞표지: 치악산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성황림으로 성남리마을을 보호해 주는 성황당이 있는 숲이다.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어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뒷표지(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해발 1507m)으로 신라시대에 제단을 만들어
산신제를 지냈던 영봉(靈峰)이다. 노고단은 '할미단'이며, '할미'는 국모신(國母神)인 서술성모(西述聖母:仙桃
聖母)를 일컫는 말이다. © 김보현

천연기념물 제212호로 지정된 관매도 후박나무로 마을 서낭림으로 보호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정초에 마을에서
선출된 제주가 치성을 들이고 있다. © 김보현

주도의 상록수림은 우리나라에서 난대림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보존하고 있다. 어부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서낭당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김보현

보물 제666호 경주 남산의 삼릉계 석불좌상으로 8~9세기경 만들어졌다. 2008년 경비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 보호지역 포럼

Korea Protected Areas Forum

www.paforum.or.kr

한국보호지역포럼은 우리나라 보호지역 정책 선진화와 국제사회의 정책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호지역 관련 정부부처인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06년 출범하였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정책연구, 교육 ·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ix
감사의 말	x
용어정의	xi
약어	xi
헌사	xii
제 1 부 서론 및 배경	1
1. 서문	3
1.1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	3
1.2 용어 사용	3
1.3 가이드라인 대상 독자	3
1.4 사례연구	4
2. 서론	5
3. 자연성지에 대한 배경지식	7
3.1. 자연성지란 무엇인가?	7
3.2. 관리주체 및 이해당사자	7
3.3. 자연성지의 기원과 문화적 유산	8
3.4.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 가치	8
3.5. 경관과 미적 가치	9
3.6. 자연성지의 수와 범위	10
3.7. 자연성지에 대한 위협요인과 손실률	10
3.8. 자연성지와 현대의 보호지역 운동	11
3.9. 자연성지에 대한 국제적 인정	15
제 2 부 가이드라인과 사례연구	19
4.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연성지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	21
4.1 원칙	21
4.2 가이드라인	21
5. 원칙, 가이드라인, 논의, 사례연구	27
제1원칙 보호지역에 위치하는 자연성을 법적으로 인정	28
가이드라인 1.1. 자연적, 문화적 가치	28
가이드라인 1.2. 생태계서비스와 인간 복지	30
가이드라인 1.3. 법적 지위 인정	32
가이드라인 1.4. 협의	35
가이드라인 1.5. 총체적 모델	35

제2원칙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연성지 계획과정과 관리프로그램에 통합	35
가이드라인 2.1. 공원계획	35
가이드라인 2.2. 자연성지의 파악	36
가이드라인 2.3. 비밀성의 존중	37
가이드라인 2.4. 경계표시와 은폐	37
가이드라인 2.5. 구획	38
가이드라인 2.6. 연결과 복원	40
가이드라인 2.7. 생태계적 접근	40
가이드라인 2.8. 경관적 접근	41
가이드라인 2.9. 개발계획 부문의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원	41
가이드라인 2.10. 보호지역 분류체계와 거버넌스	42
가이드라인 2.11. 국제적 차원	42
제3원칙 이해당사자의 동의, 참여, 포용, 협력 촉진	43
가이드라인 3.1. 사전동의	43
가이드라인 3.2. 자발적 참여	44
가이드라인 3.3. 포용	45
가이드라인 3.4. 정통성	47
가이드라인 3.5. 갈등관리	48
제4원칙 자연성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증진을 강화	49
가이드라인 4.1. 다학제적 접근	49
가이드라인 4.2. 통합연구	51
가이드라인 4.3. 전통적 지식	51
가이드라인 4.4. 네트워크 형성	52
가이드라인 4.5. 소통과 공공인식	52
가이드라인 4.6. 목록작성	52
가이드라인 4.7. 문화 재창조	54
가이드라인 4.8. 문화간 대화	55
제5원칙 적절한 관리접근과 가용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성지 보호	57
가이드라인 5.1. 접근성과 가용성	57
가이드라인 5.2. 방문자에 의한 압력요인	58
가이드라인 5.3. 대화와 존중	60
가이드라인 5.4. 관광	60
가이드라인 5.5. 의사결정 통제	61
가이드라인 5.6. 문화적 사용	62
가이드라인 5.7. 보호	62
가이드라인 5.8. 신성모독과 재신성화	64
가이드라인 5.9. 개발압력	65
가이드라인 5.10. 재정조달	65
제6원칙 국가정책틀 내에서 자연성지 관리주체의 권리 존중	66
가이드라인 6.1. 제도적 분석	66
가이드라인 6.2. 법적 보호	66
가이드라인 6.3. 권리 기반 접근	67
가이드라인 6.4. 관리주체의 권리 확정	68
가이드라인 6.5. 토지보유권	70
6. 결론	73

부록

1.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 계획: 생물다양성을 위한 방법론 도입과 서부 과테말라 고원에서 얻은 교훈	75
2. 호주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의 사진촬영 가이드라인 중 발췌	81
3. UN의 원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 2007	84
4. IUCN 원주민과 보호지역에 대한 결의안, 1996	91
5. 원주민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정의	92
6. 제V차 IUCN 세계공원총회(WPC), 2003: 더반협정 및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권고안	93
7. 멜로스 구상의 몬세라트와 우라노폴리스 선언	96
8. 인터넷 등 기타 자료	100
인용문헌	103

상자 목록

1. 인도의 성림 훠손 원인	10
2. 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중 자연성지와 관련한 핵심조항	16
3. 자연성지 또는 성지순례 경로를 포함하는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27
4. 호주의 원주민보호지역(IPA)이 제공하는 긍정적 사회영향	32
5. 미국 국가공원청의 문화계획	36
6. 산악인 출입금지 성산	42
7. 이해당사자 파악 및 분석	45
8. 자연성지의 문화적, 자연적 가치 평가	50
9. 과테말라에서의 자연성지 관리계획	63

사례연구 목록

1. 통가리로 국립공원 – 마오리족에 의한 110년 간의 책임관리	29
2. 관광업에 의해 위협받았다가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신성한 선물”로 인정받은 탄자니아 잔지바르주 미살리 섬	33
3. 일본의 성지 용도지구 구획	35
4. 러시아연방 서부 시베리아의 특별보호지역 및 보호생물종	37
5. 케냐의 카야성림	38
6. 미국 데빌스타워 국가기념물(Mato Tipila)	48
7. 대중에게 인도 성림의 중요성 알리기	53
8. 중국 산시 타이바이샨 국립자연보존지구의 도교 생태사원	54
9. 세계무형유산과 말라위의 츄와(Chewa) 성림	56
10. 콜롬비아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의 카산크와에서 성지를 복원하고 원주민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57
11. 스리랑카 스리파다-아담스피크의 다중신앙 수용	59
12. 호주 울루루-카타추타에서의 문화 존중	61
13. 몽골의 성지 복원	64
14. 불가리아의 릴라수도원 자연공원	67
15. 호주 아남랜드 북동부의 디무루 원주민보호지역(IPA)	68
16. 세계 최초의 종교공원, 빌카노타 종교공원	91

그림 목록

1. 전세계 보호지역의 성장 추세	11
2. 자연성지를 포함하고 있는 74개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별 분포	15
3.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와 인간 복지 간의 연결고리	31
4. 밀레니엄생태계평가 개념적 체제틀의 지역적 적용	44
5. 이해당사자 분석과 갈등관리를 위한 개념적 체계	46
6. 전통적 지식과 관리체계에 대한 4개 분석수준	51

지도 목록

1. 울루루(Uluru)	83
---------------------	----

표 목록

1. 보호지역 카테고리와 거버넌스 유형 별 분류체계	12
2. IUCN 카테고리에 따른 자연성지 예시	13

머리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보전의 가장 핵심적 형태 중 하나는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를 특성화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 가치가 큰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고 핵심적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거의 모든 보호지역이 법제, 정책, 관행이 모두 근거로 삼고 있는 웰로스톤 국립공원 모델이 확립되기 이전부터도 원주민의 지역적, 주류적 문화와 영적 전통은 각각의 세계관 속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왔다. 자연성지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지역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전세계의 수 많은 자연성지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수목의 불법벌채와 야생동물의 사냥에 의한 영향, 외부인의 토지 침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 이루어지는 관광업, 빙곤, 인구변화, 주변 환경의 손상, 전통양식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자원의 가용성 저하 등의 다양한 내외부 압력 및 위협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자연성지들은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관련 지역, 문화, 자원을 지탱하여 온 전통적 신앙, 관습, 기술,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에 의도치 않게 통합된 경우가 많다. 때로 이들 보호지역의 관리방향은 전통공동체에 의한 자연성지의 접근과 이용을 차단하기도 해서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불신과 적대감이 조장되었으며, 자연성지와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화적 측면에서 자연성지의 적합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자연보전 담당기관과 지역적 전통공동체들은 자연성지를 위협하는 요인에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주민공동체, 지역 전통공동체는 중요 자원들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

보호지역 관련기관은 지정된 범위 내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문화적, 영적 차원 기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련 공동체에 자연성지를 문화적, 영적 실현과 숭배를 위한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이해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조직들 역시 지역적 원주민공동체가 자연성지와 그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축적되어 온 역량과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자연성지의 보존과 효과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의 강화 뿐 아니라, 자연성지를 관리하여 온 문화권들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IUCN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T/F(IUCN Task Force on the Cultural and Spiritual Values of Protected Areas)와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이 작성한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신앙 단체들과 원주민, 전통문화권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연성지를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2003년 중국 Kunming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워크숍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공원총회(World Parks Congress)와 2005년 일본 도쿄에서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자연성지와 문화적 경관의 역할(Conserving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 The Role of Sacred Natural Sites and Cultural Landscapes)”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국제심포지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및 개정되었다. 이 회의 이후 이 가이드라인의 구조를 개편하고 근거자료를 추가하며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재평가와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Thomas Schaff 박사

UNESCO 인간과 생물권 계획

“우리가 이곳 데빌스타워(Devil's Tower)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원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자연성지는 그들의 문화를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 데빌스타워에서도 이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Deborah Liggett
미국 데빌스타워국가기념물 관리소장(1994-1997)

감사의 말

본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는 발상은 당시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T/F의 팀장이었던 Allen Putney가 최초로 제안하였다. 그는 UNESCO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Thomas Schaaaf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실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IUCN 사무국의 Gonzalo Oviedo와 성지 영화 프로젝트(Sacred Land Film Project)의 Christopher McLeod가 합류하였다. 2007년 본 IUCN 가이드라인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Robert Wild가 T/F 팀장에 올라, Christopher McLeod와 함께 주저자와 공동편집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Bas Verschuuren을 포함한 T/F의 구성원들은 본 가이드라인의 작성 과정 및 논의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이디어, 사례연구 자료, 사진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지난 10년 간 수 많은 워크숍에서 50개 이상의 사례연구를 작성 및 제공한 수 많은 사람들과 본 가이드라인서에서 제시하는 사례연구를 작성한 이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이 외에도 본 자료의 작성 가능케한 워크숍의 주관자와 자금제공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포드재단(Ford Foundation)에 감사를 표한다. 본 발간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준 크리스천센 기금(Christensen Fund)에도 진심어린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Robert Wild와 Christopher McLeod 소속기관으로서, 본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준 LTS 인터내셔널(LTS International)과 성지 영화 프로젝트에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초안을 검수하여준 수 많은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용어정의

본 발간물에 사용된 용어의 상당수는 본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범위와 목표를 벗어나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때문에 저자들은 아래와 같은 실무적 용어정의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대부분의 단어가 수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많은 근본적인 개념들은 외국에서 영어로 쉽게 번역하기 어렵다(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언어로 전세계의 6,000여개 언어에 담겨 있는 풍부한 의미를 모두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세계의 많은 문화들은 서구권에서 보편적인 현상인 자연과의 분리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흥미롭게도 영어와 달리 다른 수 많은 언어에서는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에 신성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어의 “자연(nature)”, “성스러움(sacred)”, “신앙(faith)”등의 핵심용어들이나,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같이 더 최근에 등장한 용어에 대해서는 외국어로 적절한 대역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문화(Culture). 문화란 한 사회나 사회적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영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에는 예술, 문학 뿐 아니라 개인 생활양식, 단체 생활양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등이 포함된다.¹

관리주체(Custodians). 전통적인 제도의 영향권 하의 개인 또는 집단으로, 특정한 자연성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주체를 의미한다. 관리주체는 자연성지와 역사, 문화, 자아,

영적 실천 등의 측면에 의해 관리를 맺고 있으며, 자연성지의 인근에 거주할 수도 또는 그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거주할 수도 있다.

주류신앙(Mainstream faith). 바하이교, 불교, 기독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유대교, 신토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등 11개의 대규모 종교.

보호지역(Protected Area) (IUCN 정의).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자연적·문화적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법률 등의 실효적 수단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IUCN, 1994).²

보호지역(Protected Area) (CBD 정의). 지리적으로 정의된 영역으로, 구체적인 자연 보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정, 규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성지(Sacred site).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지역

1.2 용어사용 참조

약어

CBD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CA	공동체보전지역(Community Conserved Area)
CEPA	커뮤니케이션, 교육, 공공인식증진(Communication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FPIC	충분한 정보제공 후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PA	원주민보호지역(Indigenous Protected Area)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SNS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
WWF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¹ UNESCO, 2002 http://portal.unesco.org/culture/en/ev.php?URL_ID=13031&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² 본 발간물의 발행시점 현재 다음과 같은 IUCN 정의의 개정초안이 작성되었으나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장기적인 자연보전 뿐만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방법으로 인지, 전용화,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

헌 사

환경과 인간복지에 있어 큰 중요성을 갖는 자연성지의 수 많은 관리자에게 이 발간물을 바칩니다.
이 특별한 장소를 관리하고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결심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제 1 부

서론 및 배경

1. 서문

1.1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

본 가이드라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주안점은 처음부터 원주민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의 자연성지에 맞추어졌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개가 존재하는 이들 공동체는 자연에 대하여 깊은 영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가치는 구체적인 장소를 중심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원주민부족은 자연성지와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자연성지가 파괴될 경우 그들의 존속 자체까지 위협받게 되기도 한다. 더욱이, 원주민공동체나 지역공동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자연성지들은 일반적으로 주류신앙과 관련있는 자연성지에 비해 취약하면서 더 큰 위협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최근 수십년간 보호지역에 전통문화권의 원주민 관리주체에 의해 지켜지고 유지되는 자연성지 수백 곳이 보호지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중인 현 시점에서는 IUCN 정책에 의거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의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원주민공동체, 지역공동체의 자연성지에 우선순위가 부여된 상태이다.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중 주류신앙도 수 많은 자연성지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살피하고 있음이 인식되었다.¹ 따라서 저자들은 다양한 신앙을 망라하여 모든 자연성지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은 지역공동체와 원주민부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주류신앙의 자연성지로부터 도출된 경험과 사례연구도 포함하게 되었다. 주류신앙의 경험을 제한적으로나마 포함시키고자 한 이 시도는 예비적인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류의 대다수가 믿는 주류신앙에서 관리하는 자연성지의 다양성을 분석 및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²

원주민 전통과 지역적 또는 주류적 전통 모두 법적 보호지역 내의 자연성지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4년 후에 본 가이드라인 적용 경험이 검토된 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2 용어 사용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자들은 실무적 용어정의(실무적 용어정의 참조)를 작성하였고 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전반적으로 저자들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사용한 Borrini-Feyerabend *et al.*(2004)의 “원주민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개념의 정의를 사용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정의가 완벽하다거나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토착적”, “지역공동체 신앙”, “영적 전통”이라는 용어는 앞서의 정의에 의거한 원주민부족의 신앙이 지역의 문화적 신념과 관습들에 의해 표현된 형태를 지칭한다.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 수 많은 신앙체계들이 모두 집계된 적은 없으나, 그 수는 6,000개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³ 본 가이드라인에서 저자들은 “흔히 주류신앙이라 불리는 종교”에 대해 Dudley 등 (2005)을 인용하였다. 이때 주류신앙이란 세계자연보호기금 (WWF)과 종교와 자연보전을 위한 연합(ARC: Alliance for Religion and Conservation)이 지난 20년에 걸친 협력 끝에 신앙과 생태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이끌어낸 11개 종교를 의미한다(용어정의 참조).

물론 이 모든 개념을 엄격히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신토교, 도교는 각각 일본과 중국의 토착종교임이 분명하지만, UN 협의의 정의에 의거한 원주민 종교는 아니다.

1.3 가이드라인 대상 독자

본 가이드라인은 최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지정된경계 내에 자연성지가 소재해 있는 보호지역의 관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전통적 관리주체가 갖는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할 때, 이들이 수 많은 세대에 걸쳐 성공적으로 보살펴 온 성지에 대하여 IUCN이나 UNESCO가 관리 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기대되는 것은 보호지역 관리자와 성지의 관리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이 특별한 장소의 보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초점은 보호지역 관리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지만, 저자들은 더 넓은 범위의 이해당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도 본 가이드라인이 참고되기를 희망한다.

¹ 부록 8

² IUCN 보호지역의 문화적, 영적 가치에 대한 태스크포스의 델로스 구상(<http://www.med-ina.org/delos/>)은 이 측면에 있어, 특히 기술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Montserrat(2006)and the Ouranoupolis(2007) statements, Annex 7; Mallarach and Papayannis, 2007; Papayannis and Mallarach, 2008 참조). 이와 관련한 사안들은 델로스 구상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³ 전세계에 알려진 언어가 6,800개이고(Oviedo *et al.*, 2000; Maffi, 2004). 원주민 민족의 수가 5~6,000개이며(Beltrán,2000). 지역공동체의 수는 이보다도 훨씬 많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수치도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즉,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주체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 내부 또는 인근에 자연성지가 소재한 개별 보호지역 관리자
- 보호지역네트워크 내부, 또는 그 영향권 내에 자연성지가 소재한 보호지역 관리자
- 보호지역 관리부처 및 시스템을 담당하는 자연자원 관련 부처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기타 이해당사자에는 아래가 포함된다:

- 보호지역 외부의 토지용도계획을 담당하는 토지계획 당국
- 환경당국, 보호지역 당국과 협의하여 자신의 성지에 대한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그의 생태적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교환하고자 하는 전통적 관리주체
- 비정부기구 등 자연성지의 관리주체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
- 자연성지의 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타 관리주체, 정부,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 지원기관 등

저자들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에 있어 자연성지를 포함하는 보호지역 관리자의 입장을 위주로 두고자 하였다. 가이드라인의 흐름은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지역적인 수준의 내용으로부터 국가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보다 광범위한 국가적 수준의 사안에 있어서 보호지역 관리자들의 역할은 각자의 관리지역 내에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정책변화를 지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기술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적, 과학적, 환원적 자연보전 문화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있으며,⁴ 이러한 개념을 자연성지의 전체론적, 전통지식 기반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전통적 관리주체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가고 있으며, 동시에 자연성지의 관리주체 역시 자신들의 담당 현장에 대한 환경적 관리에 대하여 생태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1.4 사례연구

전 세계적으로 수천 곳의 자연성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될 예시와 사례연구를 선별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완전한 사례 연구를 인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관련되어 그 내용을 보강하여 주는 “단편적 스냅샷(snapshot)”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단편적 사례연구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상당한 분량의(그러나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적은 분량이다) 사례연구 자료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들 사례연구들은 UNESCO, IUCN 그리고 기타 협력기관에서 조직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들이다. 이러한 회의들은 인도(1998),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2003), 멕시코와 일본(2005), 스페인(2006), 몽골, 그리스, 영국(2007)에서 개최된 바 있다.⁵ 이 외에도 WWF와 ARC의 보호지역에 대한 중요한 최근 연구⁶ 및 신앙과 자연에 대한 선행의 연구⁷ 등 여타 관련 연구들도 인용되었다.

⁴ MacDonald, 2004.

⁵ Ramakrishnan *et al.*, 1998; Harmon and Putney, 2005; UNESCO, 2003 and 2006; Pumarejo and Berges, 2005; Mallarachand Papayannis, 2007; UNESCO, 2007; Papayannis and Mallarach, 2007.

⁶ Dudley *et al.*, 2005.

⁷ Edwards and Palmer, 1997; Palmer and Finlay, 2003.

2. 서론

특정 민족에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자연지역은 지구 전체에 걸쳐 분포한다. 이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관찰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지구 상에는 각각 고유한 수천 개의 신앙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중 상당수는 자연보전과 관련한 윤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앙과 육지, 물의 보전 간 연계고리는 Dudley 등(2005)에서 검토된 모든 신앙체계에서 발견된 종교의 특징이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는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지역”으로서 정의된다.

많은 이들에게 자연성지란 자연, 더 큰 우주로의 연결 그리고 집단적, 개인적 회상 등의 요소가 합쳐져 있는 유의미한 장소이다. 자연성지는 신성한 존재, 자연 정령, 선조 등의 거처일 수도 또는 은둔자, 선지자, 성자, 영적 지도자의 주거지일 수도 있고, 종교의식, 사색, 명상, 기도를 위한 장소일 수도 있다. 특별한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성지는 경외감과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자연성지는 또한 세속적으로도 역사, 문화, 여가, 유흥 등의 측면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자연성지는 자연 속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정체성의 근거를 찾는 확대가족, 씨족, 부족, 종교, 국가에 있어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수 많은 사회에서 전통적 자연성지들은 법적 보호지역과 유사한 기능을 충족한다. 이러한 장소에 부여되는 영적 가치로 인해 자연성지에 접근과 이용의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덕분에 이러한 현장 중 상당수는 거의 완전히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성지에서는 인간의 교란이 경감 또는 방지되었으며, 오랜 기간동안 조심스러운 관리가 이루어진 결과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이 확보되었다. 일부 자연성지들은 인간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받아서 반자연상태로 변화하거나 심지어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높은 생물다양성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 후자의 사례로는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농업유산시스템(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이 있으며, 이들은 그를 구성한 공동체 내에서 상당한 영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¹ 즉, 용도가 제한된 자연성지도 있는 반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연성지도 존재한다. 심지어 일부 자연성지들은 수천명에서 수백만명 규모의 성지순례자를 수용하기도 한다.²

인간공동체가 자연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자연성지 만큼은 대체적으로 신중한 보전이

이루어진 사례가 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덕분에 환경적 손상을 피해갈 수 있었으며,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의 은신처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에는 상당수 생물종 생존이 자연성지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중요한 장소들은 손상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 풀을 보존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와 반자연생태계는 그를 형성하고 변화시킨 인간 문화의 영향력을 이해하지 않고는 보전, 관리될 수 없다. 언뜻 훼손되지 않은 듯한 수 많은 생태계들도 실제로는 정교한 관리체계의 적용대상이었던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은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널리 인식되고 있다.³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은 함께 사회적, 생태적 시스템이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극적인 전 지구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산이다. 즉, 자연성지는 문화의 보전과 자연의 보호에 있어서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대체로 현장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성소로서 지위 덕분에 가능하였던 결과물이지, 그와 관련없이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 특별한 장소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라는 두 측면 모두에 있어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성지는 보호지역 내에 포함될 수도,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체계의 외부에 소재할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 보호지역이 더 광범위한 신성한 경관(sacred landscapes)의 작은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자연성지의 인정, 보전, 관리는 특히나 큰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다. 수 많은 보호지역이 지역공동체, 원주민, 전통문화권 인구, 주류신앙의 전통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걸쳐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의 보호지역 성립 과정에서 성지와 전통적인 토지이용의 가치의 중요성은 무시받은 경우가 많았고, 이는 지역적 문화의 근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었다. 상반되는 세계관의 충돌로 발생한 이러한 상황은 많은 경우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원주민, 전통문화권 인구, 지역공동체, 신앙집단, 자연보전 기관과의 건설적인 관계형성과 협력에 장애가 되었다.

¹ Koohafkan and Boerma, 2006.

² E.g. Motonaka, 2005; Wickramasinghe, 2005.

³ 이의 특히 널리 인정된 사례는 호주 원주민의 산불관리(Rose, 2002, and Szabo and Smyth, 2003)이며,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갈수록 널리 인정받고 있다(Tucker and Grim, 2001).

성지가 보호지역을 벗어나서 시골지역이나, 농촌 또는 도시의 경관 속에 소재할 경우, 이들은 토지용도 변경, 빙ゴ, 도시화, 인구이동, 성장, 채광, 농업, 임업 등 다양한 압력요인에 노출되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잉이용, 부적절한 방문, 매장지와 고고학적 유적의 약탈, 기물파손, 방치 등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보호지역은 통상 가치가 큰 경관, 야생동·식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이들은 통상 지역문화와 전통지식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서구적 과학모델에 기반해 있으며, 이는 국립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강제 이주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따라서 자연성지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개발하는 정치 및 환경 분야의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와 같이 간과된 사항을 보강하여, 보호지역 내의 자연성지는 보호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관리 선택지와 절차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 갈수록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역시 보호지역의 전반적 기능의 일부로서 인정받고 있다. 제V차 IUCN 세계공원총회(7th IUCN World Parks Congress)의 3,000여명의 참석자들이 채택하였던 더반협정(Durban Accord)에서는 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장 큰 영감을 주며, 가장 영적인 장소로서 생물종과 생태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고, 음식, 공기, 물의 확보에 가장 핵심적이며, 기후의 안정화에 가장 중요하며, 문화적, 자연적 유산에 있어 가장 고유하여 인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자연성지는 그 존재 자체로서도 인류의 특별한 보호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현대의 자연보전 운동보다도 수백년에서 수천년 이전에 이미 특정 장소들이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가치와 영감이 인정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원주민공동체, 지역공동체, 주류신앙에서 수 많은 자연성지들에 대하여 수행하는 관리와 보호의 가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보호지역시스템과 자연성지를 중첩시킨 각국의 보호지역 당국자들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과정은 많은 경우 전통적 관리주체들의 손실로 이어져서 전통적인 관리를 교란시켰다.

자연성지는 여전히 인류 전체의 뛰어난 자산으로 남아있으며, 훼손과 손실의 계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현장 실무자, 보호지역 관리자, 전통 관리주체의 공유된 경험에 기반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자연성지에 대한 배경지식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다루었던 자연성지의 요소를 더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가이드라인(제4장, 제5장)의 틀을 제시할 것이다.

3.1 자연성지란 무엇인가?

본 가이드라인에서 자연성지(SNS: sacred natural sites)란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지역”으로 정의된다.¹ 전 세계의 수 많은 자연성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있어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공동체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영적 연결고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와 자신이 사는 곳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야 할 이유를 별개로 생각하기가 어렵다.²

자연성지는 “성지(sacred sites)”의 일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의 개념은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정의된다. 성지라는 더 넓은 카테고리는 산림과 같이 대체로 자연적인 지역 뿐 아니라 사원과 같이 인공적이거나 기념물적(monumental)인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지어지거나 기념물적인 속성을 갖는 상당수의 성지는 그 발생원인이 된 종교에서 높은 자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IUCN에서는 그 임무에 부합하도록 주로 자연적인 지역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반적으로 기념물적인 성지, 또는 자연성지 역시 인간문화의 가치있는 요소로서 인정하여 그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세계의 많은 전통공동체들은 그들의 영적 신앙에 부합하도록 산, 화산, 하천, 호수, 용천, 동굴, 수풀, 연못, 연안수, 섬 등의 자연지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왔고, 이를 중 상당수는 성지로서 보존되었다. 이러한 지역에 신성성이 부여되는 근거는 다양하다. 신이나 선조들의 거처이거나, 성수나 약초의 원천일수도,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점 또는 “초인간적” 현실과의 소통의 장일 수도 있고, 또는 계시나 종교적 변혁의 현장일 수도 있다. 어떤 자연성지는 선조들의 매장지이거나, 성지순례의 대상이거나, 사원, 사찰, 교회의 소재지이거나, 특별한 사건, 성자, 영적 지도자와 관련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넓은 경관에 걸쳐서는 구체적인 동·식물종에 신성성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자연성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시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자연성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³

3.2 관리주체 및 이해당사자

자연성을 규정짓는 특성 중 하나는 이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관리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의 영적, 문화적, 생물학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수호자이자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정체성이 해당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수호자들은 많은 경우 집단적으로 일하면서 자연성을 보살피기 위한 다양한 지시사항을 개발해 내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체에 걸쳐 “관리주체(custodians)”라는 단일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관리주체”라는 용어는 단 한 단어로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리적, 소유권적, 제도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자연성지의 관리현황(custodial situat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분석이 필요하다. 상당수 관리주체는 서구적인 “소유권”的 관념을 배격하고 땅, 물, 자연성지 등의 “자원”을 보살피는데에 있어 공동체적 책임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일부 자연성지의 관리주체는 잘 정의된 권리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집단으로서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복수의 집단으로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리주체가 자연성지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거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별 자연성지의 관리현황은 각각 고유하여, 그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집단은 확대가족, 몇 개의 씨족, 부족 등의 토착집단, 공동체 전체, 복수의 토착적 민족집단, 교회, 사찰, 수도회, 복수의 수도회, 종파, 복수의 종교가 모인 집단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자연성지의 관리주체를 파악하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일은 상당한 민감성, 존중, 신뢰 형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어떠한 개인, 집단도 관리주체로서 정통성과 진위성을 보유한다고 쉽게 가정할 수가 없다. 원주민의 경우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전통적인 조직들과 병행하여 작용하는

¹ Oviedo and Jeanrenaud, 2006.

² Oviedo, 2001.

³ Oviedo and Jeanrenaud, 2006.

형태의 지배구조를 강요받은 경우도 많다. 이들 원주민은 국가사회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패, 뇌물, 심지어 허위 조직이나 지도자의 생성까지 경험하여야 하였다.⁴ 이러한 상황은 지역공동체와 주류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복잡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관리주체 공동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과제는 각자의 의사결정 체계가 진정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⁵

복수의 관리주체들이 오래 기간에 걸쳐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활동하여 온 자연성지도 많지만, 오랜 갈등과 불화의 역사가 이어진 지역들도 있다. 보호지역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흔한 현상이며, 국가 등의 다양한 당사자 사이에서 자연성지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보호지역 관리자들에게 심각한 도전과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⁶ 자연성지를 담당하는 보호지역 관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민감성, 협상력, 갈등관리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파악, 고용,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성지의 핵심적 이해당사자는 그 관리주체이지만, 이 외에도 자연성지와 관련된 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이들에는 보호지역 관리기관, 자연성지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주(관리주체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인근지역 토지의 소유주, 임차인이나 영업권 보유인, 공동체 구성원, 정부부처, 자연보전 기관, 방문자, 국내외의 대중 등이 포함된다. (이해당사자 분석 가이드라인은 상자 7 참조)

일부의 경우, 하나의 성지가 둘 이상의 종교에서 신성성을 인정받는데, 각자의 사용 및 관리 규칙에 차이가 있어 각 종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성지로서 돌보아왔던 공동체 자체가 사라져서 지역 주민들이나 정부부처가 그 관리를 계속하게 되기도 한다. 상당수의 오래된 성지들은 그를 중요시했던 본래의 신앙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3.3 자연성지의 기원과 문화적 유산

자연성지의 기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에 대한 지식은 성지를 신성시하는 공동체의 설화와 전설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해당 민족 자체의 발생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발생설화는 해당국가에서 여전히 신성시되는 산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토착신앙과 주류신앙을 막론하고 자연성지가 그 역사적 근원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신과 해당 민족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 특정한 전통 문화권의 선조들이 신들의 자손, 배우자,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연성지의 기원을 다루는 설화들의 일부는 문자로 기록되었고, 수 세대 전부터 이어오던 구전 기록에 대해 이러한 문자 기록이 이루어졌던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화들의 대다수는 그들을 신성시하는 공동체의 구전전통 속에 남아있는 상태이며, 일부 자연성지의 기원은 시간의 흐름에 묻혀 모호해지기도 하였다. 갈수록 성지에 대한 지식의 근거는 고고학적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 상당수 성지들은 200~400년 전에 신성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상당수는 수천년간 신성시되어왔다. 예를 들어 호주 카카두 국립공원(Kakadu National Park)의 절벽에 그려진 벽화는 기원전 25,000~40,00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면 일부 종교는 그 신도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마다 자연성지를 새로이 지정하기도 하여서, 모든 성지가 그처럼 오래된 것은 아니다.

자연성지는 인간과 자연 간의 복합적 관계를 이루는 한 요소이다. 자연성지에서 이 둘은 승배로서 관계를 맺으며, 이 승배의 대상은 자연 그 자체인 경우가 많으나, 그 외에도 중요한 사건, 역사에 대한 회고, 신적인 존재에 대한 종교적 의식의 현장, 명상을 통한 우주와의 대화 등일 수도 있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는 유목민이든 정착한 농민이든, 거친 환경적 조건 하에서 생존하는 다양한 생태문화적 집단은 일관되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숭배심을 나타내었다.”⁷

이와 같이 많은 사회들은 자연성지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자연과의 연결성을 유지하여왔다. 이제는 자연과 동떨어진 듯한 문화나 종교에 있어서도 자연성지와의 관련성은 여전하다. 예를 들어 세속적 서구 사회의 “성역(sanctuary)” 개념이나, 도시의 분수에 동전을 던져넣는 오랜 관습은 고대의 자연성지에서 이루어졌던 관행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3.4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 가치

갈수록 많은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 상당수 자연성지들은 고도의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뒷받침한다
- 자연성지의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인해 서식지에 상당한 변화가 가해진 주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⁴ Colchester and Ferrari, 2007.

⁵ Colchester and Ferrari, 2007.

⁶ Taylor and Geffen, 2003.

⁷ Ramakrishnan et al., 1998, in Ramakrishnan et al., 2003.

- c) 자연성지의 생물다양성은 유사한 서식지 형태를 나타내는 인근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경우가 있다.⁸

이러한 현상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 공동체들이 성지에 대해 제공하는 보호기능의 결과물이라는 주장도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 보호지역도 협소하고 상당부분에 변경이 가해진 경관에 자연성지가 위치한 경우, 그 성지에만 해당지역 본래의 식생이 나타나 생물다양성 보전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자연성지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가장 포괄적인 검토는 Bhagwate와(2006)가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98곳의 기준 자연성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전 세계에 걸쳐 이와 같이 자연성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특히 인도⁹, 케냐¹⁰, 가나¹¹, 탄자니아¹²의 성림(sacred groves)의 사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동·식물종이 오직 자연성지에서만 생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나에서 모나원숭이(Mona monkey)의 아종인 *Cercopithecus mona mona*의 개체군이 유일하게 생존한 지역은 볼타(Volta) 지역의 타피 아톰(Tafi Atome)에 소재한 28ha 규모의 작은 성림이다. 모나원숭이들은 신성한 가치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자체도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 이를 해치는 것은 금기시된다. 매년 2월에 이 원숭이들을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이 덕분에 성림 주변 지역공동체들은 갈수록 커져가는 관광수입의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¹³

자연성지의 보전가치와 그 관리주체들의 관리관행 간의 연관성은 러시아 바이칼 호(Lake Baikal) 주변의 원주민족인 부르야트(Buryat)족의 지도자 Erjen Khamaganova가 다음과 같이 매우 잘 설명한 바 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성지에서 원주민이 수행하는 영적인 노동과 그러한 성지의 높은 생물다양성 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원주민들이 성지에 대해 갖는 신실한 태도와, 원주민들로서는 이 장소의 본질적 조화를 조금이라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돋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성지는 단지 자연 보전활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세계관과 철학의 초석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노력은 서로 상호 연결적, 불가분적이다. 오늘날 희귀 동·식물종의 상당수는 전통문화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장소들이 성지로서 보호받고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원주민들은 성지를 특별히 보호하여왔고, 또한 그럼으로써 신성한 조류,

동물, 나무, 식물, 지형, 하천 형태 등을 보호하여 온 것이다.”¹⁴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오늘날의 성지는 과거에 넓게 분포하였던 식생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은 지역일 경우가 많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가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도 많지만, 소규모 서식지 역시 큰 중요성을 가지며,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생물종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서식지 복원을 중요시하는 추세는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공동체들은 이미 성지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호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¹⁵ 자연성지는 서식지 복원을 위한 중요한 교점이자, 희귀종의 원천, 보호지역 간 연결고리, 생태통로, 완충지 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인 보호지역 내외에서 생태보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지에 대한 지역적 규모의 연구들을 확장시켜 더 포괄적인 지역적, 세계적 개요를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 경관과 미적 가치

상당수의 자연성지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아름다움이 해당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들에 영적 가치나 “권능”이 있다고 믿도록 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극적인 경관, 장엄한 석상, 산, 폭포, 고목 등 자연의 모든 측면은 인간에게 영적인 동요를 겪게 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은 성지와 신성한 경관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제이다. 이러한 신성한 경관에는 인공적 표식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면 극도로 겸손한 전통문화권에서는 어떠한 인공적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작은 돌무덤을 쌓거나, 사찰을 짓거나, 기도깃발을 매다는 경우도 있다. 일부 문화들은 더 장엄한 사리탑, 절, 사원, 수도원 등의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유기적으로” 건설되고, 토산물을 재료로 하고, 땅과 비슷한 색으로 칠해져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지어진다. 이러한 건축물은 그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싸는 자연의 거대한 풍경에 압도당한다.

3.6 자연성지의 수와 범위

자연성지는 다양한 규모로 나타난다. 단 한 그루의 나무나

⁸ E.g. Tiwari *et al.*, 1998.

⁹ Tiwari *et al.*, 1998.

¹⁰ Githitho, 2005.

¹¹ Ormsby, 2007.

¹² Mgumia and Oba, 2003.

¹³ Ormsby, 2007.

¹⁴ Khamaganova, 2007.

¹⁵ Ormsby, 2007.

기암괴석도 자연성지가 될 수 있으며, 반면 한 산의 능선 전체가 자연성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 한 지역의 경관전체가 현지 주민들에 의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안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보호하는 자연성지가 분포하기도 한다.

자연성지의 총 수는 집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인도에만 150곳에서 최대 200,000곳의 성림이 분포한다고 추산된다.¹⁶ 가나에서는 1,900곳의 성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몽골에서는 약 800곳의 자연성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집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약 25만 곳 이상의 자연성지가 존재한다는 추산도 과장된 수치는 아닐 것이다.

토지면적의 측면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억~8억 ha의 산림이 지역공동체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¹⁷, 이러한 산림 중 상당수가 성지로 간주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더해 주류신앙 공동체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면적이 지구의 육지면적의 7%를 차지하고 있다는 추산도 나와 있다. 이러한 토지 모두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종교공동체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 만큼 생물다양성을 위한 의식적 관리가 수행되기에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¹⁸ 따라서 자연성지들은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감소를 위한 전세계적 목표치의 달성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7 자연성지에 대한 위협요인과 손실률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자연성지들도 광범위한 손상을 겪고 있다.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는 문화적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간 이용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모든 종류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평가의 대상이 된 생태계서비스의 약 60%(24개 중 15개)는 훼손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규제서비스 및 문화서비스는 70%)… 문화서비스의 이용은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지만, 생태계들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은 지난 100년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 문화적인 가치가 큰 생태계 및 경관들의 급속한 손실은 사회적 분열과 소외에 기여할 수 있다.”

상자 1. 인도의 성림 훼손 원인

1. **상업적 임업**: 상당수 성림들은 상업적 임업에 의해 파괴되었다.
2. **개발사업**: 국가 귀속 토지에 속해있던 일부 성림은 시가지의 확장과 함께 파괴되었다. 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 역시 다수의 성림을 파괴하였다. 이 외에도 대규모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침수된 성림도 있다.
3. **신앙체계의 전환**: 일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타 종교로 개종하면서 기존 성지는 훼손되었다.
4. **산스크리트화(Sanskritisation)**: 많은 지역에서는 민속적인 토착 신들이 힌두교의 신들로 대체되면서 성림에 사원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5. **성지순례와 관광업**: 지역적, 또는 범인도적 성격을 갖는 성림의 상당수는 다수의 성지순례객과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그 온전성이 침해되었다.
6. **바이오매스(biomass)의 제거**: 상당수 성림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제거와 소의 방목이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이 수 세대에 걸쳐 계속된 결과, 성림의 쇠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7. **침범(Encroachment)**: 지역공동체, 정부부처, 외부로부터의 이주민 등으로 인해 성림의 경계에 대한 침범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8. **현대화와 시장의 힘**: 성림에 대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위협요인은 현대화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적 전통은 서구화된 도시문화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현대적인 교육체계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존중심을 전혀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성림제도는 주민들 중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 문화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확산은 지역공동체의 독립적 정체성이 부정, 침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의 유혹은 성림을 포함한 전통적 자원기반의 파괴를 야기하였다.
9. **파편화(fragmentation)와 천공화(perforation)**: 성림 중 상당수는 도로, 전선 연장선, 다시 농지가 조성된 토지 등으로 인한 파편화와 천공화를 겪은 상태이다. 이러한 파편화는 생물종 손실, 생태기능의 교란 등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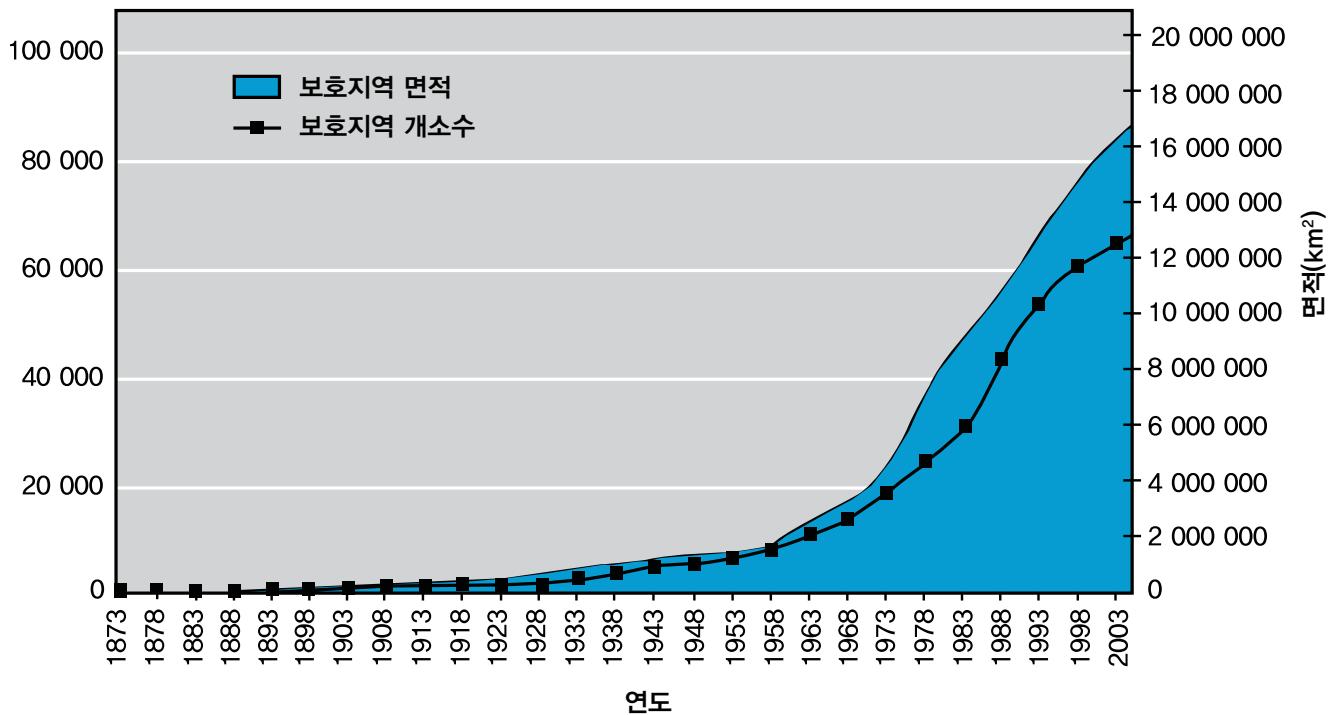
출처: Mahlotta *et al.* 2001 in Gokhale, 2003.

¹⁶ Gokhale, 2003; Chatterjee *et al.*, 2004.

¹⁷ Molnar and Scherr, 2003 in Barrow and Pathak, 2005.

¹⁸ <http://www.arcworld.org/projects.asp?projectID=9>

그림 1. 전세계 보호지역의 성장 추세(Chape et al, 2003).

참고: 약 40억km², 38,427개의 보호지역은 지정연도가 없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음

Malhotra et al(상자 1)은 인도의 성립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여러 위협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위협 요인이 모든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유용한 분석이다.

자연성지의 손실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및 문화의 보전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성지 손실의 정도, 양상, 원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천년생태계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 많은 공동체들이 이 서비스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상실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화서비스 상실의 영향은 측정하기가 특히 어려우나, 많은 사람에게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문화, 지식체계, 종교, 사회적 상호작용은 모두생태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았다. 새천년생태계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지역적(subglobal) 평가에서는 개발도상국가(예를 들어 인도에서 성립의 중요성), 산업국가(예컨대 도시공원의 중요성)를 막론하고, 상당수 지역공동체에게 생태계의 영적, 문화적 가치가 다른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3.8 자연성지와 현대의 보호지역 운동

현대적인 보호지역 운동은 약 140년의 역사를 갖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시초는 1864년에 미국의 요세미티 계곡(Yosemite Valley)이 신탁공유지로 지정되고, 1872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이 지정되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¹⁹ 이 보호지역은 원주민을 배제한 채 야생지(wilderness area)로서 설립되어, 오늘날에는 “옐로스톤 모델(Yellowstone Model)”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²⁰ 그러나 수천년 전에 확립된 자연성지에 비하면 현대의 보호지역은 새로운 토지관리 형태를 띤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2005년도 보고서 “종교를 넘어 서(Beyond Belief)”에서 결론내렸듯이: “성지의 지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서식지 보호 방식이다.”

현대의 보호지역이 급속하게 확장 및 개발되는 동안 (그림 1 참조),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기존 전통 공동체의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근시안적 사고나 의도적 무시가 이루어졌다. 단적으로 IUCN의 원주민 및 전통문화권 인구 및 보호지역에 대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elines on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and Protected Areas)²¹에 수록된 사례연구 11건 중 단 한 건에 서만 보호지역 설립 사전에 지역공동체의 공식적인 협의

¹⁹ IUCN, 1994; Stevens, 1997

²⁰ Stevens, 1997

가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지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현상은 보호지역 설립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이렇게 낮은 협의 수준은 또한, 원주민들이 자연보전에 대해 해로운 존재라고 여겨져서 심지어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 보호지역으로부터 강제이주를 당한 경우까지 있었던 기존의 배제적 보호지역 모델의 산물이기도 하다.²²

그러나 지난 50년간은 유럽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지에 보호경관이 지정되고, 최근에는 보호지역이 주민참여적 (people-inclusive) 모델의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보호지역에 대한 배제적 모델의 대안이 등장하였다.²³ 지난 20여 년 간의 보호지역 관련 논의는 상당 부분 이러한 전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여러 중요한 연구들이 그 진행과정을

기록하였다.²⁴ 보호지역의 포괄성과 참여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1980년대의 공동체 교육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에 통합 보전 및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인해 확장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하에 개발되었던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개념”, 1970년대 중반에 인도와 네팔의 임업계에서 시작되어 남부아시아 지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공동, 합동 관리방식을 따랐다.

오늘날 주류 자연보전 관행이 된 이러한 변화들은 IUCN의 보호지역 분류체계 발전과정에도 반영되었다. 보호지역의 분류를 위한 작업의 시작은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완성된 분류안은 10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었으며 1978년에 만들어졌다. 현행 분류법은 이에 6개의 보호지역 분류 카테고리는 1994년에 완성되었다.²⁵ 이 6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들은 천연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교란의

표 1: 보호지역 카테고리 따른 거버넌스 유형의 분류(Borrini-Feyerabend *et al.*, 2004)

거버넌스 형태	A. 정부에 의한 거버넌스			B. 공동 거버넌스			C. 민간 거버넌스			D. 원주민, 지역 공동체에 의한 거버넌스	
보호지역 분류	연방정부, 국가의 부처 및 기관	국가내 정부의 부처 및 기관(예:지방 정부)	정부 위임에 의한 관리(예: NGO)	초국경적 관리	협력적 관리	합동 관리	개인 토지 소유주에 의해 지정 및 운영	비영리조직에 의해 지정 및 운영	영리기업에 의해 지정 및 운영	원주민 자치지역 및 보전지역	공동체 보전지역
Ia. 엄정자연 보존지											
Ib. 야생보호 지역											
II. 국립공원											
III. 자연기념물											
IV. 서식지/ 생물종 관리지											
V. 육지/해양 보호경관											
VI. 자원관리 보호지역											

²¹ Beltrán, 2000, p.39.

²² West and Brechin, 1991; Adams and McShane, 1992; Stevens, 1997

²³ Phillips 2003, in Borrini-Feyerabend *et al.*, 2004.

²⁴ West and Brechin, 1991; Wells and Brandon, 1992; Kempf, 1993; Stevens, 1997.

표 2: IUCN 카테고리에 따른 자연성지 예시(Verschuuren et al., 2007)

Ia	엄정자연보존지(Strict Nature Reserve): 주로 과학적 목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		
	스리랑카	Yala National Park	불교와 힌두교에 중요한 지역으로, 종교적 이유로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
	러시아 연방	Yuganskiy Kanthy	기독교에 중요한 지역으로, 벨로야로스크 지역의 놈토호(LakeNumto) – Khanty와 네네츠(Nenets) 성지 주변에 보호지역이 조성되어 있음
Ib	야생보호지역(Wilderness Area): 야생지의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몽골	Bogd Khan Mountain	이 산지는 불교에 중요한 곳이었으며, 이전에는 샤머니즘에 중요한 곳이었다. 공식적으로 성산으로 지정되어있다. 이 산지가 1294년부터 야생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존재함.
	몽골	Dornod Mongol	불교에 중요한 지역. Vangiin Tsagaan Uul(White Mountain of Vangi)은 이 보존지구 내에 위치한 성산 봉우리임.
II	국립공원(National Park): 생태계 보호 및 여가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말라위	Nyika National Park	4개의 성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이 곳에서 기우제를 지냄.
	일본	Kii Mountains National Parks and WHS	천 년이 넘게 계속 사용되어 온 신토(Shinto)교 및 불교의 신사와 절, 신성지역, 순례지가 여러 곳 분포하고 있음.
	인도	Great Himalayan National Park	힌두교의 종교적 중요성을 갖는 많은 장소를 포함
III	자연기념물(Natural Monument): 특정한 자연요소의 보전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캄보디아	Phnom Prich Wildlife Sanctuary	성림으로서 기능한 소규모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임 (또 다른 예시로는 케냐의 카야성림(Kaya)이 있음).
	러시아 연방	Golden Mountains of Altai WHS	알타이 토착민과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성지
	그리스	Mount Athos WHS	천 년 이상 수도활동이 지속된 수 백 개의 작은 수도 공동체, 암자, 15여개의 수도원을 포함하는 그리스 정교회의 본거지
	스페인	Montserrat Nature Reserve and Natural Park	14세기 이래로 순례여행의 중심지가 된 고대의 암자와 기독교 수도원이 위치한 곳으로서, 오늘날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가 찾는 보호지역
IV	서식지/생물종 관리지(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관리개입을 통한 자연보전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레바논	Qadisha Valley and the Forests of the Cedars of God WHS	기독교 마론파의 성림으로서, 중요한 수도원, 암자, 고위 종교인들의 거처를 포함
	보르네오	tembawang gardens	높은수준의 생물다양성을 갖춘 tembawang gardens 같은 일부 성지는 지속적인 간섭이나 식재가 필요
	스리랑카	Peak Wilderness Park (Sri Pada–Adams Peak)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의 자연성지로서, 이 모든 종교의 순례자를 끌어 모으고 있음.

표 2: IUCN 카테고리에 따른 자연성지 예시(Verschuuren *et al.*, 2007)

V	육지/해양 보호경관(Protected Landscape/Seascape): 육지/해양 경관의 보전과 여가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중국	Xishuangbanna National Park	여러 개의 성지(성림, 성산)를 포함하는 경관지로서, 지역공동체에 의해 오랫동안 관리되어 왔으며,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갖는 중요 문화경관의 일부임.
	루마니아	Vanatori Neamt Natural Park	16개의 기독교 수도원과 더불어, 유럽들소, 불곰, 이리 등 야생동물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분포하는 루마니아의 영적 중심부
VI	자원관리 보호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에콰도르	Cayapas Mataje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맹그로브 숲을 포함하고 있고, 지역민에 의해 숭배되는 중요영성 지도자(spirit dweller)들의 거처로서 잘 알려진 지속가능한 사용지역
	미국	San Francisco Peaks, National Forest	12개 이상의 북미 인디언 부족의 성지
	이집트	St Catherine Area WHS, Mt Sinai	4개의 성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이 곳에서 기우제를 지냄.

증가 수준을 나타내어 주었다. 바로 이 시기에 “경관보호”과 “자원관리 보호지역”이 더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처음의 4개 카테고리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기도 하였다.²⁶

이상의 6개 카테고리를 망라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IUCN의 보호지역 정의이다: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자연적·문화적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법률 등의 실효적 수단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IUCN, 1994, 2008).”²⁷

IUCN의 기준 정의 및 개정 초안은 모두 생물다양성과 자연 뿐 아니라, 문화적 자원과 가치 역시 보호 가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에는 법적 인정 외에도 관행적 관리(customary management)와 같은 문화적 관리방식도 효과적인 보호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호지역의 설립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지역공동체 역시 특정한 지역을 자연보전 목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3년 더반 세계공원총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이곳에서 공동체보전지역(CCA: Community Conserved Area)의 개념

이 보호지역 단체 사이에서 거버넌스 형태로서 새로이 광범위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표 1>에는 IUCN의 보호지역 분류체계 6개와 더반회의에서 확정된 CCA 거버넌스의 유형 분류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²⁸

이 새로운 거버넌스 유형분류는 토지관리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들이 수행한 중요한 역사적 역할이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CCA 개념의 구체화는 현재 진형중이며, 그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함의도 계속하여 새로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자연성지와 공동체보전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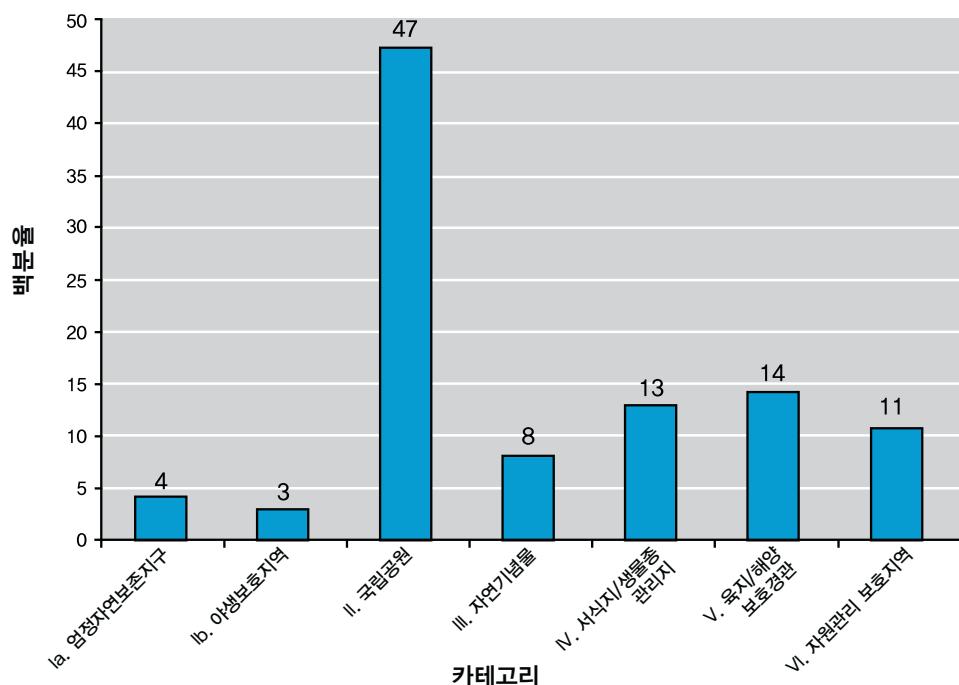
최근 연구들은 6개 IUCN 관리카테고리 모두에 걸쳐 자연성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Dudley *et al.*(2005)은 보고서 “종교를 넘어서(Beyond Belief)”에서 자연성지를 포함하고 있는 100개의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해당 보호지역들의 IUCN 관리카테고리를 제시함과 더불어(보호지역 중 74%가 이 정보를 기록하였다. 그림 2), 국제 보호지역 협약(convention) 또는 계획(programme) 중 하나에 의거한 해당 현장의 국제적 지정근거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된 100개의 보호지역은 주제와 연관된 구체적인 요소를 보일 수 있도록 채택되었으며, 자연성지를 포함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임의로

²⁵ IUCN, 1994.

²⁶ Brown *et al.*, 2005

²⁷ 본 발간물의 발행시점 현재 다음과 같은 IUCN 정의의 개정초안이 작성되었으나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장기적인 자연보전 뿐만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방법으로 인지, 전용화,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

²⁸ BORRINI fEYERABEND, 2004.

그림 2: 자연성을 포함하고 있는 74개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Dudley *et al.*, 2005).

선별된 하위표본집단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자연성지와 IUCN 분류체계 간의 관계 패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연구의 결과가 아닌, 단지 지시적 의미를 갖는 자료로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자연성지는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IUCN 분류체계 I~IV에 해당하는 엄정자연보존지, 야생보호지역, 국립공원, 생물종/서식지 관리지에 속해 있었다. 이는 현대적 보호의 방식이 자연성지에 대한 금지규정을 통해 인간의 접근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기준의 문화적 기제들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 관리체계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신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에 있었다.

IUCN 보호지역 분류체계와 성지 간의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되 잠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IUCN 분류체계가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교란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당지역들에서 이전에는 인간에 의한 개입 또는 관리가 부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연성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전통적 요인들이야말로 인위적 교란의 감소를 이끈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전통적 요소들은 IUCN 관리카테고리 I~IV에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성이 매우 크기도 하다.

이 4개 카테고리에 대한 IUCN의 1994년도 보호지역 가이드라인안에서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개정작업 중이다. 현재에는 모든 보호지역이 적절한 선에서 “자연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며, 영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국가적,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있다.²⁹ 저자들은 모든 IUCN 카테고리에 걸쳐서 문화적, 정신적 가치와 자연성지에 대한 더 명시적이고 강력한 인정과 지지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자연성지가 모든 IUCN 카테고리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신장될수록, 보호지역 분류체계가 자연성지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더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증대될 것이다. 상당수 자연성지들은 이미 국립공원(카테고리 II), 자연기념물(카테고리 III)로서 지정되었고, 마다 가스카에서는 자연성지를 카테고리 Ia인 엄정자연보존지구로서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Dudley, 개인 의사 통신).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이 허용되어 있는 보호지역에서 용도구획을 통해 일부 자연성지의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제한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9 자연성지에 대한 국제적 인정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보호지역은 다양한 계획(programme), 협약(convention), 선언(declaration)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을 제정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인간과 생물권 계획(Ma-

²⁹ IUCN, 2008.

and the Biosphere Programme) (1970), 람사르협약으로도 잘 알려진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Ramsar Convention) (1971),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등이 있다. 이 중 마지막 선언은 원주민들의 자연성을 보호함에 있어 원주민들에게 관리 권한을 더욱 부여하고, 그들과 연관된 전통관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성지의 보호를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있어 참조사항이 된다.

Dudley *et al.*(2005)에서 수행한 자연성을 포함하고 있는 보호지역 100개를 대상으로 한 자료 분석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연구대상 보호지역 중 17%는 세계자연유산 지정지이고, 5%는 람사르습지이며, 3%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이 분석은 아직 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서, 각 보호지역 종류 별로 자연성을 포함하고 있는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위에서 언급한 계획, 협약, 선언에 대해 아래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한다:

- **인간과 생물권 계획 1970:**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리에 인간의 필요에 대한 고려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있어 표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하에 인정되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설립은 고도로 혁신적이며, 자연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시도들을 나타낸다. 이들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적 주권관할 하에 놓여 있으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네트워크(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를 통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으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05개국에 529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몇년 간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담을 통해 자연성지의 관리에 대한 교훈을 파악 및 도출하는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 **람사르협약 1971:** 습지보전협약의 중심적 메시지는 자연보전, 그리고 자연의 현명하거나 지속가능한 사용이다. 습지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을 관리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람사르습지로서 특별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습지의 수는 1,708개, 총 면적은 1억 5,300만 ha에 달한다. 이들은 IUCN 정의에 의거한 보호지역에 항상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타 국제기관에 의해 보호지로 지정된 지역과 중첩되어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자연성지 역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 람사르 습지 내에 위치해 있다. 현재까지 람사르협약에서 신성적 가치는 큰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현재 작성되고 있다.

- **세계유산협약 1972:** UNESCO는 이 협약을 통해 인류에게 뛰어난 가치를 갖는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식별, 보호, 보존을 장려하고자 한다. 184개국이 서명한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유산 지정지의 지명과 등재를 담당한다. 국제사회 전체는 그 소재지와 무관하게 세계유산 지정지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전

상자 2. 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중 자연성지와 관련한 핵심조항

“원주민의 지식, 문화, 전통관행에 대한 존중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개발과 환경의 올바른 관리에 기여한다는 사실의 인정…”

제11조

- 원주민에게는 스스로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들을 실천 및 재활성화할 권리가 있다. 이에는 고고학적 빌굴현장, 역사유적, 유물, 전통적 도안, 전통의식, 전통기술, 전통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예술 등을 포함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자문화의 요소들을 유지, 보호,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 각국은 충분한 정보 제공 후 자유의사에 의해 제공된 원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원주민들의 법, 전통, 관습을 위배하여 그들의 문화적, 지적, 종교적, 영적 재산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원주민과의 협의 하에 원상회복을 포함한 각종 효과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국가배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 원주민에게는 스스로의 영적, 종교적 전통, 관습, 의식을 실현, 실천, 개발, 교육할 권리를 가지며, 그 종교적, 문화적 중요 장소를 유지, 보호하고, 그에 외부 간섭 없이 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종교의식에 사용할 용구를 사용 및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자민족인의 유해의 송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

상자 2. 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중 자연성지와 관련한 핵심조항(계속)

제25조

원주민은 점유 등의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소유, 사용하여 온 토지나 영토, 물과 해안 연안, 여타의 자원에 대해 그들이 가지는 특유의 정신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권리가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책임을 전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 원주민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소유, 점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 획득한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원주민은 전통적 소유, 또는 다른 방식의 전통적 점유 또는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한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하여 소유, 이용, 개발, 통제의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이러한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법적 인정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인정은 해당 원주민의 관습과 전통, 토지 소유체계에 대한 적절한 존중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9조

- 원주민은 토지, 영토, 자원의 환경과 생산적인 역량을 보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각국은 원주민이 그러한 보전과 보호를 차별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2조

- 원주민은 그들의 토지, 영토, 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원주민의 토지와 영토,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특히 그들의 광물, 수자원 또는 기타 자원의 개발, 이용, 채취와 관련된 사업을 허가하기 이전에, 원주민의 대표기관을 통해 해당 원주민과 신의에 근거한 협의, 협력을 수행하여, 원주민의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근거한 사전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각국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상을 위한 효과적 기제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원주민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한 그 제도적 구조와 고유한 관습, 종교, 전통, 절차, 관행, 그리고 기준에 존재하였던 경우 사법적 체계와 관습 등을 증진, 발전, 유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세계적으로 660개의 세계문화유산지, 166개의 세계 자연유산지, 그리고 25개의 복합 세계문화자연유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상당수 세계유산지는 자연성지와 신성 경관을 포함하고 있다. 유형유산에 집중하여왔던 세계 유산협약은 점점 무형적 가치를 갖는 대상도 인정해가고 있는 추세이다.³⁰

- 생물다양성협약 1992:** 1992년 리오 지구정상회의 (Rio Earth Summit)에서 150개국 정부 지도자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이 단지 동·식물, 미생물,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식량 안보, 의약품, 청정한 공기, 주거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수요 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은 전통적 지식과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생물다양성협약

은 자연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크웨이 구 원주민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에 의해 전통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되어 온 성지 및 육지, 해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안에 대한 문화, 환경, 사회 영향평가를 위한 자발적가이드라인(Akwé: Kon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Cultural,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regarding Developments Proposed to Take Place on, or which are Likely to Impact on, Sacred Sites and on Lands and Waters Traditionally Occupied or Used by Indigenous or Local Communities)을 작성한 바 있다.³¹

³⁰ Rössler, 2003

³¹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2004

- **생활유산 2003:** 2003년 체결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ICH: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또는 생활유산협약은 구전문학, 공연예술(전통음악, 무용, 연극 등), 사회적 관행,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행, 전통공예 등의 영역을 다룬다.³² 이 협약은 따라서 자연성지와 관련된 많은 관행들과 연관을 가지며, 특히 “자연에 대한 지식 및 관행” 영역의 연관성이 크다.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UNESCO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선정하는 계획을 운영하였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자연성지와 관련된 걸작들도 선정되었다.
-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2007년에 발표된 이 UN 선언문(부록 3)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들을 제시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원주민의 지식, 문화, 전통관행에 대한 존중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개발과 환경의 올바른 관리에 기여 한다는 사실의 인정.”

〈상자 2〉에는 자연성지에 대한 핵심 조항과 문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인정 및 보존하기 위한 광범위한 체제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생활유산 협약이 발효되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반포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제들 간의 조율된 협력을 도모하여 자연성지와 그 관리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한 기회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³² 본 협약은 2006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 12월 현재 87개국이 서명하였다.

제 2 부

가이드라인과 사례연구

본 가이드라인은 2개 부분으로 구성;

제4장: 6개 원칙과 44개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본문

제5장: 텍스트와 관련 사례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별 상세 설명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 내에 소재한 자연성지에 대한 인식 증진과 공감적 관리의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보호지역 관리자와 전통적 관리주체 간의 생산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공조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최선의 경우, 자연성지들이 정부의 보호지역체계와 관리자에 의해 지원 받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자연성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관리주체와 보호지역 관리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 대상독자는 개별 보호지역의 관리자와

보호지역 시스템의 관리자 및 계획가이다. IUCN과 UNESCO가 수 세대간 성공적으로 성지를 관리하여 온 전통 관리주체들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착 및 전통 공동체와 각종 주류신앙, 그리고 그 지지조직이 보호지역 관리자와 상호교류하고, 성지 관리에 생태적인 고려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는 바이다.

또한, 천연자원 관리부처, 주 계획국, 사유지 내 보호지역 관리자 등의 기타 이해당사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관에 소재한 자연성지를 보호 및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지지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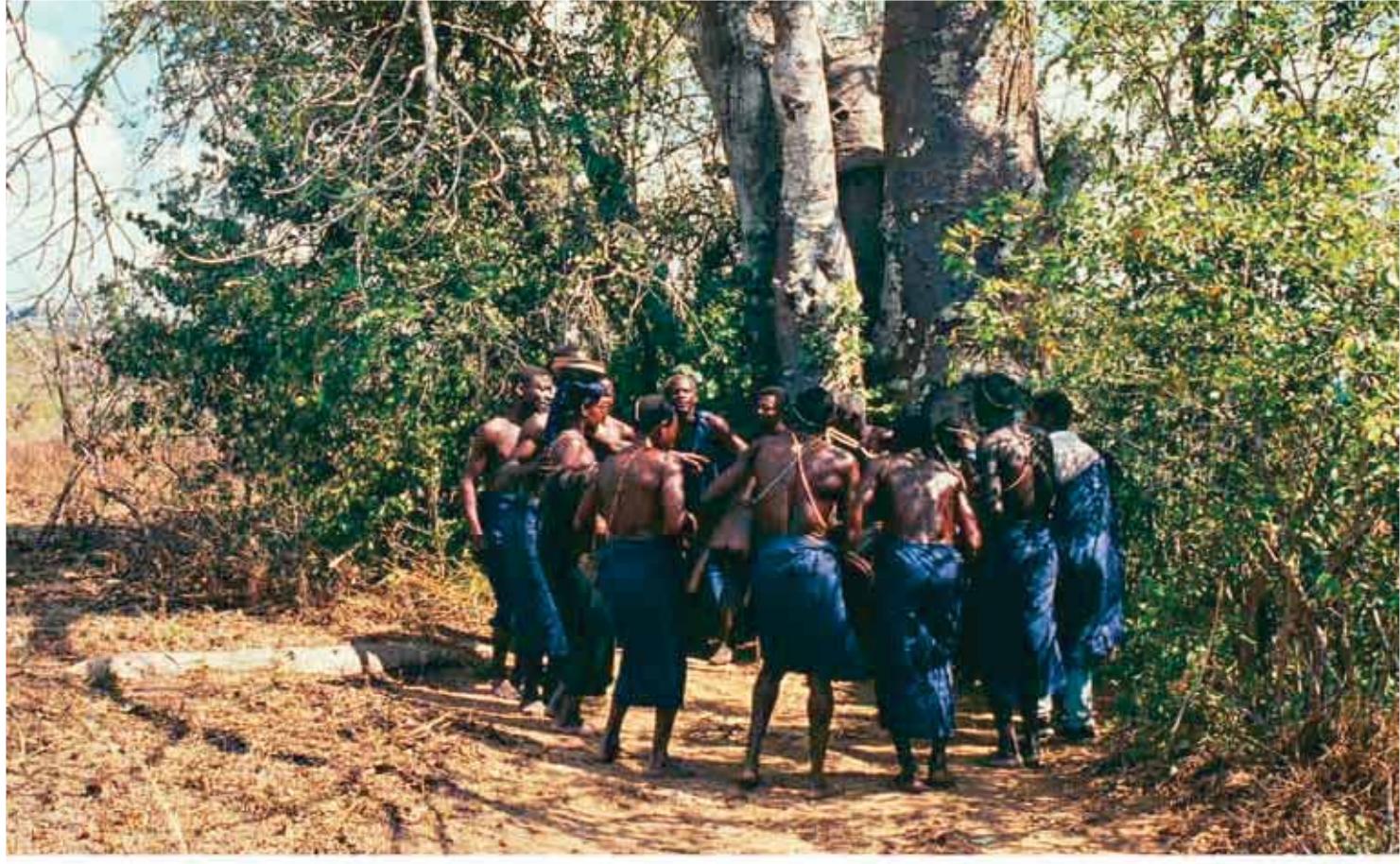
본 가이드라인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현실화 될 경우,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동반자관계가 확립되어, 자연성지와 그 관리 문화의 오랜 생존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의 마운트섀스타(Mount Shasta)에서 위네멘 윈투(Winnemem Wintu)족 지도자인 Florence Jones가 섀스타-트리니티 국유림(Shasta-Trinity National Forest)에서 4일간 계속되는 불 축제의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위네멘 족 인디언들은 1990년대에 그들의 성산에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에 반대하였고, 미국 산림청 역시 북미 인디언들의 영적 전통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였다 (Christopher McLead 촬영)

[아래]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서 거행되는 의식은 이 성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인 아푸(Apu)에 대한 송배의 의미로 거행된다. 이러한 의식을 위한 모임은 주변 지역공동체가 모여서 지구 상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지역 중 하나인 이곳의 관리에 대해 논의할 기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사례연구 16 참조).

(Oscar Minera 촬영 ©UNEP / Topham / The Image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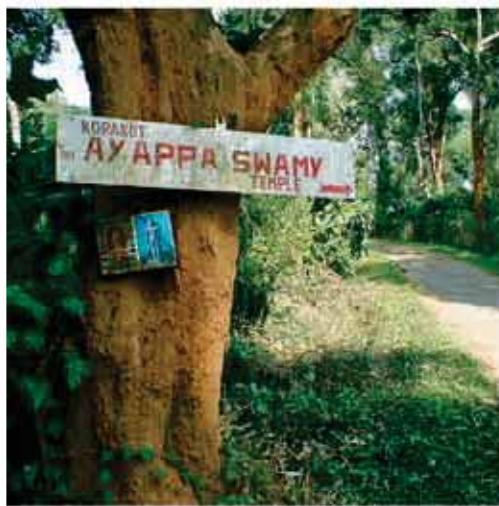
[위] “영혼의 집” – 미지肯다 족(Miikenda)의 원로들이 케냐의 카야성림에서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곳인 치지아 차 네레(Chizia Cha Nyere)에 모여있다(사진©WWF–Canon / Elizabeth Obel-Law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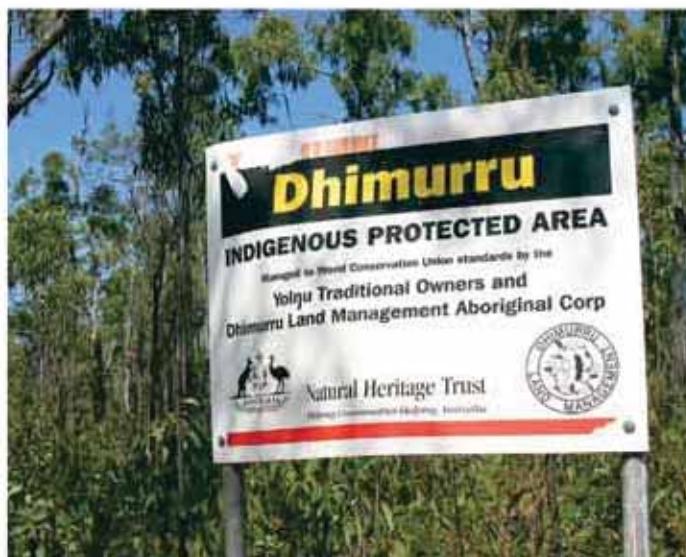
[오른쪽] 좌측에 미지肯다 족 관광가이드가, 우측에는 콜레 지역(Kwale District)의 카야 키논도(Kaya Kinondo)를 찾은 방문자들이 서있다. 카야의 원로들이 제시한 규칙 중 하나는 성림을 찾은 방문자들이 존중의 의미로 반드시 검은색 전통의상인 키코이 (kikoi)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자들은 또한 공인된 관광가이드의 동반 하에서만 관광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4일에 한번씩 관광을 금하여 성림에 휴식기를 주고, 관광 전용 지역을 지정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칙이 있다 (사례연구 5). (Robert Wild 촬영)

[아래, 왼쪽] 인도에서는 2000년의 성림축제(sacred groves festival) 이후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카르나타카 주(Karnataka state)의 코다구(Kodagu)에 위치한 성림으로 향하는 표지판을 자랑스럽게 내보이게 되었다(사례연구 7 참조). (Shonil Bhagwat 촬영)



[아래, 오른쪽] 코빌카두 족(Kovilkadu)의 연례 종교의식에서는 남부 인도의 타밀나두 주(Tamil Nadu state)에 소재한 성림들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신들을 숭배한다. (National Museum of Mankind, IGRMS, Bhopal, India 촬영)





[맨 위 왼쪽, 오른쪽] 미국의 레인보우 브릿지 국가기념물(Rainbow Bridge National Monument)과 와이피오 계곡(Waipi'o Valley)에서 보호지역 관리자들이 다양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자들을 교육시키고 자연성지를 보호하고 있다.(Christopher McLeod 촬영)

[위, 왼쪽] 바로 위 오른쪽에 나타난 암석형상은 호주 아남랜드 북동부에 거주하는 구마티(Gumatj), 망갈릴리(Mangalili), 왕구리(Wanguri) 부족들이 “꿈꾸는 무명갈전갱이(giant trevally)”라는 의미의 가이나다(Gaynada), 또는 응구이칼(Nguykai)로 부르는 곳이다. 이는 사진에 나타난 트럭 훈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근의 광산마을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는 자연성지이다. 이 암석의 노두에서는 캠핑과 수영이 금지되어 있다. 이 지역은 디무루(Dhimurru)와 노던준주 국립공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청(Parks and Wildlife Service of the Northern Territory Rangers)이 집행하는 허가체계에 의해 관리된다(사례연구 15 참조). (위 촬영 Jane Dermer, Dhimurru LandManagement Aboriginal Corporation, 좌측 촬영 Christopher McLe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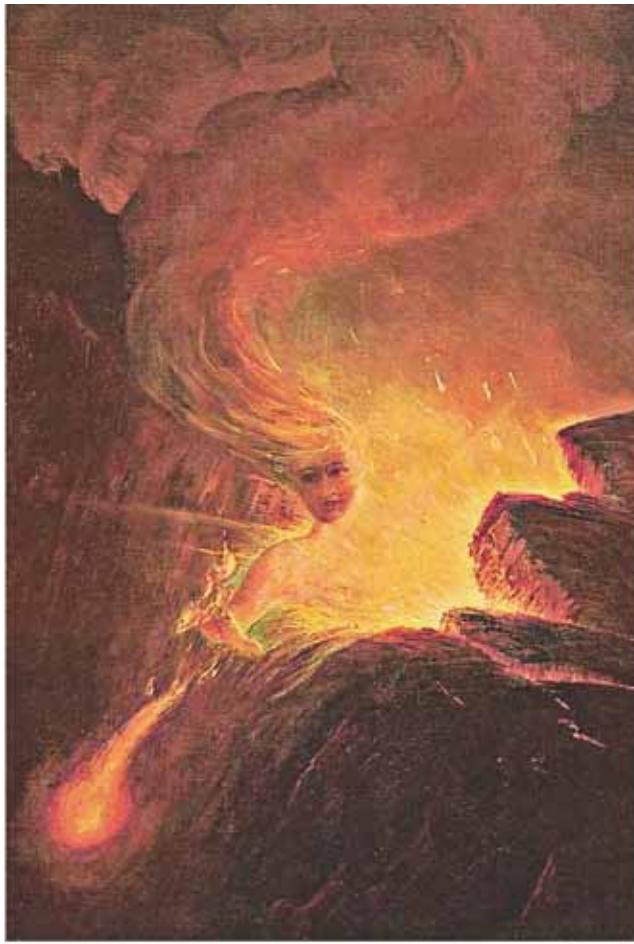
[위]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호피 족 (Hopi) 원로인 달튼테일러(Dalton Taylor)가 국립공원 관리청 소속의 고고학자인 잔 발ஸ(Jan Balsom)에게 관광객들이 호피족들이 신전에 남긴 독수리 깃털 공물을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협의 이후 미국 국가공원 관리청은 이 신전을 피해서 등산로를 다시 지정하였고, 그 결과 이와 같은 교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협의를 촬영한 영상은 성지 관련 사안에 대해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사용되었다. (*Christopher McLeod*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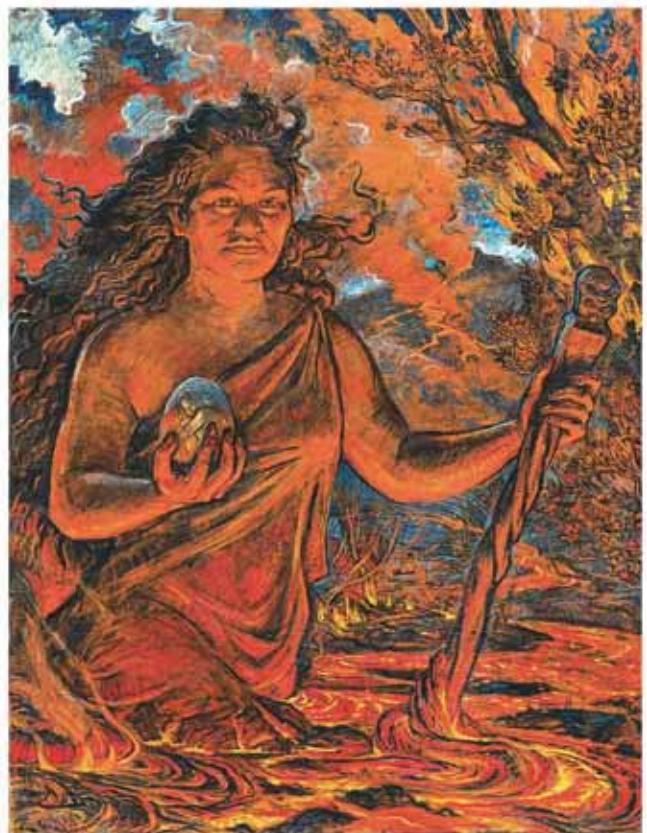
[오른쪽] 나바호 족 인디언인 기예르모 로드리게즈 나바로(Guillermo Rodriguez-Navarro), UNESCO의 Thomas Schaaf, 타이로나 족 인디오 연맹 (Confederación Indígena Tayrona)의 로헬리오 메히아 이즈게이르도(Rogelio Mejia Izquierdo)가 콜롬비아의 시에라네바다데 산티마르타 생물권보전지역 및 국립공원의 경계를 확장하여 타이로나 족의 성지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례연구 10 참조). (*Christopher McLeod* 촬영)



[아래 오른쪽] 마다가스카의 암브레산 국립공원 (Montagne d' Ambre National Park)에 위치한 성스러운 폭포가 우측의 공원 관리인에 의해 방문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 곳의 인근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영혼이 나무, 물, 바위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구전전설에 따르면, 이 영혼들이 옛날에는 안트시라나나(Antsirananana)라고 불리는 주변지역에 살았다가, 산림에 대한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암버산에 온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지역주민들은 이 폭포를 찾아 풍요, 다산, 정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 (*Nigel Dudley* 촬영)



[위] 좌측에는 2005년 이전까지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방문자센터에 전시되어 있던 펠레(Pele) 여신의 그림이다. 우측의 그림은 수십 명의 지역 화가들이 출품한 그림 중 이 지역의 창조신으로 송배되는 펠레 여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인정받아 선정된 것이다. (좌측 그림 David Howard Hitchcock 작품, 우측 그림 Arthur Johnsen 작품)



[아래] 호주의 울루루 카타추타 국립공원(Uluru-Kata Tjuta National Park)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사진가들에게는 민감한 지역의 방문이 장려되지 않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사진촬영이 금지되기도 한다(사례연구 12 참조). (표지판 사진 울루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관리청의 승인 하에 1991년에 Christopher McLeod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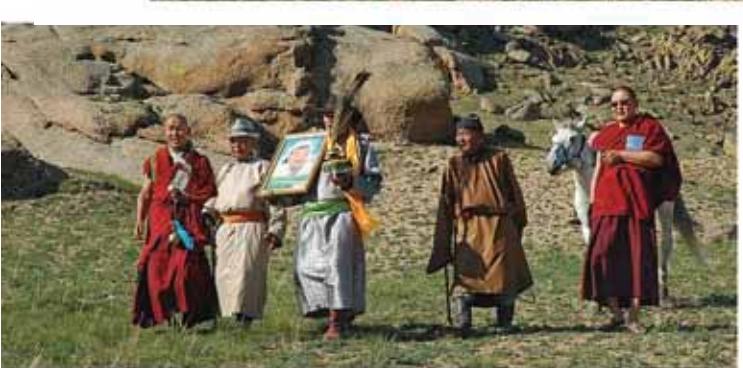


[위] 가나에는 약 1,900개의 성림이 있으며, 이들은 희소한 생물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마을 또는 대대적으로 활용되는 경관인근에 위치한 잔존 성숙림으로서 특징지어진다. 위 사진들에 나타난 것은 보아벵-피에마 원숭이 성소(Boabeng-Fiema Monkey Sanctuary)와, 타피아토메 원숭이 성소(Tafi Atome Monkey Sanctuary)에 서식하는 모나원숭이(Mona monkey)이다. 이들은 가나 내에 분포하는 모나원숭이 아종의 유일한 개체군으로서,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진다.(우측 촬영 Alison Ormsby, 좌측 촬영 Michael Scace)



[아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샤만 마리아 아만키나(shaman Maria Amanchian)와 문화 전문가 마야 에렌바에바(Maya Erlenbaeva)가 러시아 남부 시베리아 알타이 공화국(Altai Republic)의 공식적 보호지역 경계 밖에 소재하는 성지들을 지도에 나타내고 있다.(Christopher McLeod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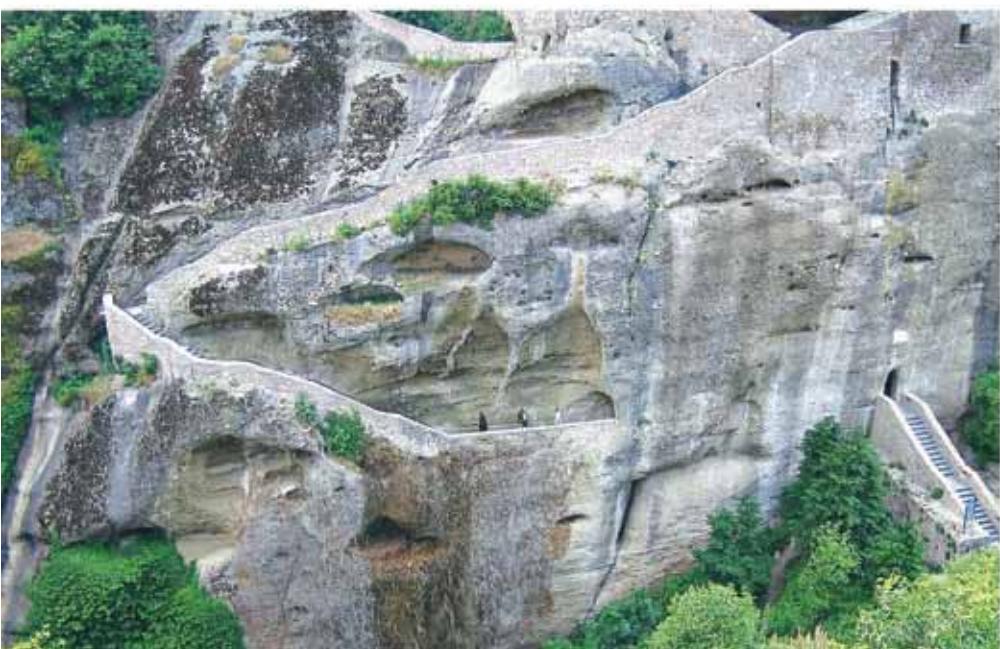
[왼쪽] 선사시대의 암각화들은 알타이 문화유산의 상징적 존재이지만 도굴되어 암시장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산양 그림의 뿔 부분은 도굴꾼에 의해 훼손되었다.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의 츄이우지 자연공원(Chui Oozy Nature Park)은 이 지역 원로들이 이러한 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하였다.(Christopher McLeod 촬영)



[위, 왼쪽] 몽골의 복드칸 산(Bogd Khan Mountain)은 징기스칸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1778년 이래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아 온 자연성지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광활한 칸 헨티 산지 보호지역(Khan Khentii Mountain Protected Area)의 일부가 되었다. 상당 기간 동안 억압이 지속된 끝에 이 불교 승려(lama)들의 주도로 종교의식도 부활하였다. 이 의식은 산의 정령들에 대한 숭배와, 가뭄 및 폭설의 방지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사진에는 이 산의 정상에 위치한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서 의식을 수행한 승려들이 산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왼쪽에서 세번째 사람은 칸헨티 특별보호지역의 관리소장인 J. Boldbaatar이며, 그의 우측에 선 사람은 최초의 현대적 공원관리원이다(사례연구 13 참조). (Robert Wild 촬영)



[왼쪽] 불가리아의 릴라수도원(Rila Monastery)은 10세기 릴라의 성 이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큰곰, 늑대, 멧돼지가 분포하는 릴라산의 중심부에 소재해 있다. 릴라수도원 자연공원(Rila Monastery Natural Park)은 자연과 이 수도원 간의 합일관계를 보존 및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었다(사례연구 14 참조). (Nencho Lazarov, www.imagesfrombulgaria.com 촬영)



[왼쪽] 그리스 테살리아 메테오라의 고유한 기암괴석은 11세기부터 은자와 금옥주의자들을 끌어모았으며, 14세기에는 이곳에 수도원들이 지어졌다. 극적으로 우뚝 솟은 암석들은 참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이집트대머리독수리(Egyptian Vulture)와 유럽산늑대(European Wolf) 등 희귀동·식물종들의 서식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메테이라는 그 문학적,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Thymio Papayannis 촬영)



[위, 왼쪽] 말라위 츄와 족(Chewa)의 나우 형제단(Nyau brotherhood) 소속의 굴레 월클루(Gule Wamkulu) 춤꾼이 탈을 쓴 채 공공행사에 참여하려고 성당을 나서고 있다(사례연구 9 참조). (*Karen Edwards* 촬영)

[위, 오른쪽] 러시아의 성스러운 바이칼 호(Lake Baikal)를 기념하는 의식이 9개 부르야트(Buryat) 부족들의 영적 지도자인 알탄–에르데니(Altan-Erdeni)에 의해 거행되고 있다. (*Vladimir Chenkirov* 촬영)

[중간, 왼쪽] 과테말라 서부 고원의 화구호인 성스러운 치차발 석호(Chichabal lagoon) 물 위에 꽃들이 공물로 남겨져 있다(부록 1 참조). 충게 중 이를 간 5,000 여명의 사람들이 이 석호의 연안으로 모여서 마야맘(Maya-Mam) 의식을 거행하고 기우제와 풍작제를 지낸다. (*Estuardo Secaira* 촬영)

[중간, 오른쪽]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는 페루 쿠스코 (Cusco) 남쪽의 아우상가테 산(Mt. Ausangate)에서 한 영적 지도자가 대지(Pachamama)에 공물을 바치고 있다. (*Allen Putney* 촬영)

[아래, 오른쪽] 호주의 젊은 애보리진이 족 원주민들은 자신의 민족을 대지와 연결짓는 노래와 춤들을 배움으로써 문화적 경관과 성지를 보살핀다는 전통적 책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Christopher McLeod* 촬영)



4.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연성지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

2006년에 이미 본 가이드라인의 작업본이 7쪽 분량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었었는데¹, 현행 가이드라인은 그 초기 개념들을 확장하고 관련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향후 4년간 현장에서 검증되어 검토 및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상세하고 규범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상태이다. 44개 가이드라인은 6개 원칙으로 묶여 있으며,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내용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국가적인 내용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적, 국가적 규모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개별 보호지역 관리자들이 자연성지의 국지적, 국가적, 국제적 관리 개선을 위해 적절, 적합한 정책변화를 지지할 것이 권장된다.

4.1 원칙

제1원칙 보호지역에 소재하는 자연성지를 법적으로 인정

제2원칙 보호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는 보호지역의 계획과정과 관리프로그램에 통합

제3원칙 이해당사자의 동의, 참여, 포용, 협력 촉진

제4원칙 자연성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신장을 장려

제5원칙 적절한 관리접근성과 가용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성지를 보호

제6원칙 국가정책틀 내에서 자연성지 관리주체의 권리를 존중

4.2 가이드라인

제1원칙 보호지역에 소재하는 자연성지를 법적으로 인정

가이드라인 1.1 자연적, 문화적 가치: 자연성지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가이드라인 1.2 생태계서비스와 인간 복지: 자연성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안녕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과,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는 문화적, 영적 영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¹ UNESCO, 2006, pp. 326-331.

가이드라인 1.3 법적 지위 인정: 정부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 및 민간보호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현재 보호지역으로 공식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에 전통 관리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 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가이드라인 1.4 협의: 모든 논의과정에 있어 적절한 전통문화 관리주체, 계승인, 지도자 등을 참여시키고, 보호지역 내 또는 인근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법적 인정과 관리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구한다.

가이드라인 1.5 총체적 모델: 자연성지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하나의 총체적 관리모델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며, 그것이 인류의 유형, 무형 유산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제2원칙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연성을 계획과정과 관리프로그램에 통합

가이드라인 2.1 공원계획: 관리계획을 개정하여 보호지역 경계 내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과정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2.2 자연성지의 파악: 비밀유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통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수행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참여적 관리계획 과정의 일환으로서 보호지역 내부와 인근 성지의 위치, 성격, 용도, 거버넌스 등을 파악한다.

가이드라인 2.3 비밀의 존중: 관리주체에게 자연성지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밝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요청 시 항상 보호지역 관계기관과 공유되는 비밀정보를 보호할 장치를 확립한다.

가이드라인 2.4 경계표시와 은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자연성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자연성을 대규모 엄정보호지 내에 위치시켜 그 정확한 위치를 은폐한다.

가이드라인 2.5 용도구획: 부정적인 외부영향력에 취약한 성지의 인근지역에는 지원지역(support zone), 완충지역(buffer zone), 전이지역(transition zone) 등을 지정한다.

가이드라인 2.6 연결과 복원: 자연성지와 그와 유사한 생태를 보유한 지역들 사이에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연결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경관에서는 대규모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 2.7 생태계적 접근: 공정한 방식으로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영적 가치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는 토지, 물, 생물자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생태계적 접근법을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2.8 경관적 접근: 자연성지에 대해 경관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더 광범위한 문화적 경관, 보호지역체계, 생태통로 등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한다.

가이드라인 2.9 개발계획 부문의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원: 개발계획 당국자들은 보호지역체계 외부에 위치한 토지의 상당 부분의 계획을 주도한다. 농촌지역 전반에 걸쳐서 자연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이들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가이드라인 2.10 보호지역 카테고리체계와 거버넌스: 자연성지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와 거버넌스 모든 유형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식적인 보호지역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연성지도 그 관리주체의 희망에 따라 공동체 보전지역 등의 법적, 전통적 장치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인정 및 지원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가이드라인 2.11 국제적 차원: 자연성지 및 이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은 국경을 넘어서서 분포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거나 향후 지정될 접경 평화공원(transboundary peace parks)의 내외부에 소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제3원칙 이해당사자의 동의, 참여, 포용, 협력 촉진

가이드라인 3.1 사전동의: 새로운 공식적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체계 내에 자연성지를 포함시키거나, 자연성지에 영향을 주는 개발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적절한 관리주체로부터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를 확보한다.

가이드라인 3.2 자발적 참여: 국가 또는 여타 이해당사자에 의한 자연성지 관리 참여가 이루어질 시, 항상 적절한 관리주체로부터는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확보한다.

가이드라인 3.3 포용: 자연성지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소외된(marginalized) 주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관리주체, 핵심 이해당사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급 국가정책 결정 시에도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를 확실하게 정의한다.

가이드라인 3.4 정통성: 자연성지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통성과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가이드라인 3.5 갈등관리: 적절, 적합할 시에는 갈등관리, 중재, 갈등해소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통적 관리주체와 현대의 주민, 자원 이용자, 관리자 등 사이의 상호이해를 촉진한다.

제4원칙 자연성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증진을 강화

가이드라인 4.1 학제적 접근: 자연성지에 대한 학제적,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여, 지역 원로, 종교적, 영적 지도자, 지역사회, 보호지역 관리자,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예술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등을 모두 참여한다.

가이드라인 4.2 통합연구: 생물다양성 가치를 연구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자연성지의 기여도를 평가하며, 특히 문화적원인으로 인한 인간 행동이 어떻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였는지 사회적 차원의 의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생물학, 사회학 통합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 4.3 전통적 지식: 생물다양성협약(CBD) 제8(j)조에 의거하여, 자연성지와 관련한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의 전통지식, 혁신, 관행 등을 존중, 보존, 유지,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4.4 네트워크 형성: 자연성지의 전통적 관리주체와 지지자, 보호지역 관리자,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용자 등이 모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가이드라인 4.5 소통과 공공인식: 지지적 소통,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성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교육자료의 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움, 표현, 평가의 방식을 통합한다.

가이드라인 4.6 목록작성: 비밀유지의 필요와 취약성이 큰 자연성지에 있어, 관리주체에 의한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성지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UN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UN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에 포함시킨다. 제한적 배포 대상 정보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개발한다.

가이드라인 4.7 문화 재창조: 지역 문화의 유·무형 유산, 다양한 문화적 표현 양식, 토착적, 지역적, 주류 신앙전통의 환경윤리 등을 유지 및 재활성화하는데 자연성지의 역할을 인식한다.

가이드라인 4.8 문화 간 대화: 자연성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여 상호이해, 존중, 관용, 화해, 평화 등의 신장을 도모한다.

제5원칙 적절한 관리접근성과 가용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성지 보호

가이드라인 5.1. 접근성과 가용성: 자연성지가 공식지정된 보호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전통 관리주체에 의한 접근성과 가용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절한 정책, 규준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 5.2. 방문자에 의한 압력요인: 방문자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요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성지에 대한 방문자 접근에 대하여 적절한 정책, 규칙, 행동수칙, 시설, 관행 등을 개발하면서 성지순례와 계절적 사용 수준 변동으로 인한 압력요인을 특별히 고려한다.

가이드라인 5.3 대화와 존중: 관련있는 전통종교, 지역사회 지도자, 여가 이용객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보호지역 규제와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공공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성지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통제한다.

가이드라인 5.4 관광: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은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지만, 이러한 관광활동은 문화적으로 적절하여야하고,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리주체 공동체의 가치체계를 주도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가 소유 및 운영하는 관광산업을 지원하되, 해당 공동체가 환경적,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왔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 5.5 의사결정 통제력: 자연성지의 관리주체가 관광활동 등 자연성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지역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와 기타 압력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 균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5.6 문화적 사용: 지속가능한 사용을 담보하는 선에서, 자연성지 내에 서식하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자원의 채취 및 사용에 과도한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 관련 결정은 공동 자원평가 및 합의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내리도록 한다.

가이드라인 5.7 보호: 남용, 오염원, 자연재해, 기후변화의 영향력, 그리고 손괴나 절도와 같은 사회적 위협 요인들을 파악, 연구, 관리, 경감시킴으로써 자연성지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 인위적 사태에 대한 재난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가이드라인 5.8 신성모독과 재신성화: 자연성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성모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정한 선에서 훼손된 자연성지의 회복, 재생, 재신성화를 촉진한다.

가이드라인 5.9 개발압력: 자연성지에 영향을 끼치는 개발사업에 대해 통합 환경, 사회 영향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의 경우에는 개발활동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아크웨이 구(Akwé: Kon)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5.10 재정조달: 적정한 선에서 자연성지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재정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투명성, 윤리,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 창출 및 배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연성지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빙곤임을 인식한다.

제6원칙 국가정책틀 내에서 자연성지 관리주체의 권리 존중

가이드라인 6.1 제도적 분석: 전통적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제도에 의한 자연성지의 관리가 지속 및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관리주체가 없는 자연성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관련기관 등이 그 관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이드라인 6.2 법적 보호: 국가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 등의 토지계획 체제에 의거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자연성지에 대한 인위적, 자연적 위협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관리적 변화의 도입을 지지한다.

가이드라인 6.3 권리 기반 접근: 자연성지가 기본적인 인권, 종교 및 숭배의 자유, 자가개발, 자치자결 등의 가치를 존중하며 권리가 기반이 되는 접근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가이드라인 6.4 관리주체의 권리 확정: 전반적인 국가 보호지역 체제를 내에서 자연성지 관리주체가 자연성지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력과 관리권한을 가지며, 자신들의 가치체계와 상충하는 가치를 강요받는 사태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6.5 토지보유권: 자연성지가 정부 지정 보호지역 또는 민간보호지역 내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토지소유권(tenure rights)이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권리를 다시 관리주체에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이양(devolutio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원칙, 가이드라인, 논의, 사례연구

이 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장의 첫째 상자에는 자연성지(SNS) 또는 성지 순례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에는 각각 그와 연관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상호 참조되어 있다.

상자 3. 자연성지 또는 성지순례 경로를 포함하는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행동	가이드라인 상호참조
1.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보호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연성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러한 자연성지는 잘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지역이 관리인력에게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원 관리인들이 자연성지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여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1, 1.2, 1.3, 2.2
2. 주요 관리주체를 파악하고 그들과 교류한다. 관리주체의 실거주지는 그들이 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통성을 갖춘 관리주체를 확실히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갈등의 전례가 있을 경우 이 관리주체들과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교류 시도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 가능한 한 참여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관리주체가 위임관리 또는 협동관리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 형태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1.3, 1.4, 3.1, 3.2, 3.3, 3.4
3. 갈등의 유무와 그 수준을 파악한다. 갈등이 존재할 경우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갈등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과 중재를 의뢰하라. 이러한 갈등은 보호지역 관리부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때에는 관리정책의 개선,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 촉진(facilitation) 등 방안을 고려하라.	3.5, 4.8, 5.3, 6.3
4. 비밀유지의 필요성을 판별한다. 자연성지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와 최선의 장치를 논의하라. 자연성지의 실제 소재지를 찾아 나서지는 않되, 협상 및 피드백을 위한 장치를 확립함으로써 관리의 적절성을 판정하는 방식이 그 한가지 예가 될 수 있다.	2.3, 2.4, 3.1, 3.2
5. 자연성지가 필요로 하는 관리 수준을 파악한다. 자연성지는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 관리 상의 필요도 매우 다양하다. 초기 단계로서 관리 수준, SNS에 영향을 끼치는 압력요인, 필요로 하는 참여 및 교류의 종류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기법의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2.2, 4.1, 4.2, 4.3, 5.1, 5.2, 5.3, 5.4, 5.7, 5.8, 5.9, 부록 1
6. 관련 종교의 신앙체계를 이해하고, 서구와는 다른 세계관도 타당성 가짐을 인정한다. PA 관리인들이 자연성지와 관련된 신앙체계 또는 종교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그를 이해하고 그 타당성과 보호지역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동의 하에 관리주체의 전통적 지식을 이해하고, SNS가 대변하는 환경윤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1, 1.5, 3.1, 3.3, 3.4, 4.1, 4.2, 4.3
7. 이해당사자 분석을 수행한다. 적절한 경우 공식적으로 이해당사자 분석을 수행하여, 자연성지와 관련된 핵심 이해당사자를 이해하고자 하라. 협의 및 협상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보호지역 관리부처 측의 입장과 역할을 분석하고, 종립적인 제3자 참여시 필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1.4, 3.1, 3.4, 3.5, 상자 7

상자 3. 자연성지 또는 성지순례 경로를 포함하는 보호지역(PA) 관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계속)

행동	가이드라인 상호참조
8. 회의를 주도하고 중재를 수행한다. 적절한 선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함께 모을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한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회의로 진행하고 이후 그 규모를 키우며, 필요한 경우 중재를 수행한다.	2.7, 3.2, 3.3, 1.4
9. 접근 및 용도의 양상을 파악한다. 접근과 용도와 관련된 사안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이해는 참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관광용도는 신성한 가치에 지지적일 수도 그를 저해할 수도 있다. 연중 시기에 따라 지역사회 또는 종교집단에 의한 사용의 필요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4.2, 4.3, 5.1, 5.2, 5.4, 5.5, 5.6
10. 보호지역 관리계획에 자연성지 및 성지순례 경로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킨다.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과장 SNS에 대한 공감적 관리	2.1, 2.5, 2.7, 2.8
11. 보호전략을 개발한다. 관리주체와 협의 하에 SNS를 방문자 압력요인, 손괴, 자원채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획, 관련법 강제집행, 공공교육, 신규 규제 및 법 제정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4, 2.4, 2.5, 4.5, 5.2, 5.4, 5.7, 5.8, 5.9, 6.2, 부록 1
12. 용도지역 지도의 참여적인 지도제작을 고려한다. 보호지역 내 다양한 전통문화권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용도지역을 파악 및 인정하기 위해 참여적 지도제작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2, 4.2, 4.3
13. 소통, 교육, 공공인식 전략을 발전시킨다. SNS의 정기적인 관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적절한 소통경로를 확보한다. 적절한 선에서 일반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공인식 증진 활동을 계획 및 시행하도록 한다.	1.4, 4.5, 4.8, 5.3, 5.4
14. 지속가능한 재정조달을 확보한다. SNS 또는 성지순례 경로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한다.	5.10
15. SNS의 관리를 개선하고 관리주체의 권리를 더 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및 법규 변화를 지지한다. 국가정책적으로 SNS를 보호지역 내로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지를 제공한다.	6.1, 6.2, 6.3, 6.4, 6.5

[제1원칙] 보호지역에 소재하는 자연성지를 법적으로 인정

가이드라인 1.1 자연적, 문화적 가치

자연성지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자연성지는 자연적, 문화적 차원에서 모두 큰 중요성을 갖는다. 자연성지의 자연적 가치는 그를 포함하는 경관, 지리와 그를 구성하는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성지는 또한 미적 감상의 측면에 의해서도 가치를 갖는다. 문화적으로는, 성지가 수 많은 토착적, 지역적, 주류적

신앙전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수 많은 민족들의 정체성과 관련을 맺고 있고, 중요한 의식적,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십년 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은 자연보전 노력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당수 보호지역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들이 국가적, 지역적 경제에 미치는 기여의 정도도 갈수록 넓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호지역이란 여가적, 영적, 문화적, 정체성적, 예술적, 미학적, 교육적, 평화적, 치유적인 가치 등 더 다양한 범위의 가치들을 대변한다(Harmon 와 Putney, 2003). 보호지역 내에 상당수 종교전통과 수 많은 민족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자연성지들이 분포하고 있음은 보호지역이 보유하는 이러한 가치에 상당한 깊이를 더해준다.

사례연구 1. 통가리로 국립공원 – 마오리족의 110년에 걸친 책임관리

눈으로 덮인 통가리로(Tongariro) 산과 그 바로 옆에 위치한 화산인 루아페후 산(Ruapehu)과 응가우루호에 산(Ngauruhoe)은 뉴질랜드 북섬의 화산고원 지대에 장엄하게 솟아 있다. 최소한 14세기 이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여 왔던 마오리 부족들에게 이 지역은 타푸(tapu)로서 신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산은 마오리 족의 역사 중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설 속에서는 마오리 족의 신성한 조상인 동시에 인간 선조들의 거처로서 신성시되고 있다.

동부 폴리네시아의 민족은 약 1300년 즈음에 대형 이중 선체 카누를 타고 수천 마일의 바다를 거너서 뉴질랜드 북섬에 정착하였다. 이렇게 바다를 건넌 최초의 카누 중 하나는 테 아라와(Te Arawa)로 불렸으며, 통가리로 인근 이위(iwi; 부족) 중 하나인 응가티 투와레토아(Ngati Tuwharetoa) 족은 그 카누의 제사장이자 항해사였던 응가토로이랑기(Ngatoroirangi)를 시조로 모시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응가토로이랑기가 이 지역의 화산을 만들고 통가리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한 전설에 의하면, 이 제사장이 뉴질랜드 섬의 내륙을 탐사하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였는데, 그 와중에 통가리로 산의 정상을 오르다가 강한 남풍에 실려 온 극심한 추위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산을 오르면서 지쳐있는 데다가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응가토로이랑기는 머나먼 마오리 족의 고향인 하와이키(Hawaiki) 남아있던 그의 누이들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지하의 용암 형태로 그 제사장의 부름에 응하여 그에게 온기를 전해주었으며, 그에게로 가는 길을 따라서 온천과 화산을 남겼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마오리 족에게 이 지역의 화산 지형은 그들의 역사적 고향이 하와이키와의 연계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족의 조상으로서 숭배받고 있다. 통가리로라는 이름은 남풍을 뜻하는 *tonga*와 잡아채다라는 뜻의 *riro*가 합쳐진 단어로서, 응가토로이랑기를 죽일 뻔한 남풍을 기념하여 지어졌다.

1887년에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유럽인 침략자를 대면하게 된 테 헤우헤우 투키노 4세 부족장(Te Heuheu Tukino IV)은 그들이 마오리 족의 성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이 지역을 “국립공원”이라는 새로운 개념 하에 보호하라는 조건으로 통가리로, 루아페후, 응가우루호 산을 뉴질랜드 정부에 기증한다는 영리하고 통찰력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이 지역이 사유화되면 그의 부족이 쫓겨나고 그 산과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Heuheu, 2005). 이에 따라 1894년 10월에 통가리로 국립공원법이 통과되었고, 통가리로는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고, 그중에서도 원주민이 직접 기증한 사례로는 최초의 국립공원이 되었다.

한 세기가 지난 1990년에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마오리 족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신성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오직 그 자연적, 환경적 가치에만 근거하여 UNESCO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마오리 족의 주장에 의해 이 국립공원은 곧 “연상적 문화경관(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재지명되었다. 연상적 문화경관이란 세계유산위원회가 1992년에 도입한 새로운 분류항목이며, “자연적 요소들이 강력한 종교적, 예술적, 문화적 연상을 유도하는 장소로서, 물질적 문화유적, 유물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1993년에 통가리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거의 정확히 100년 만에 최초의 연상적 문화경관으로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됨으로써 다시 한 번 역사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마오리 족의 신성한 가치 역시 마침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환경보전과 원주민 문화 및 신앙의 상호지지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압력에 대면하고 있기도 하다. 헤피 테 헤우헤우 경(Sir Hepi Te Heuheu)은 그의 조부가 성산을 뉴질랜드 정부에 기증하여 국립공원 지정을 유도한지 백년째가 되는 해에 “타푸(tapu)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산을 통해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산들의 신성이 모독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연간 약 1백만 명의 방문자를 수용한다. 이들은 이 산에서 스키, 등산, 산악자전거, 캠핑, 등반 등의 활동을 즐긴다. 공원 내 지원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산로, 스키 리프트, 전망대, 산악인 숙소, 숙박업소와 위락시설이 있는 국립공원 마을 등이 있다. 주요 문제사항은 쓰레기, 등산로 침식, 침입 식물종, 자동차로 인한 오염, 노후되고 과이용되어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하천에 내보내는 하수체계 등이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뉴질랜드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에서 수행하나 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문화적 가치가 결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가리로 지역의 마오리 족 이위인 응가티 랑기(Ngati Rangi), 응가티 투와레토아(Ngati Tuwharetoa), 응가티 타후(Ngati Tahu)와 협의가 이루어진다. 자연보호부 이사회에서도 몇 석이 마오리 족 일원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 국립공원의 상업화와 관련한 사항은 마오리 부족이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행 공원관리계획은 국립공원 내 위락시설 입지 가능 지역의 확장을 금지하고 있고, 스키시설이 공원 총 면적의 3%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업적 관광안내와 관련한 사안은 현재 계속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마오리 족의 전통, 역사, 문화는 모두 이 산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마오리 족은 이 국립공원의 물리적 완전성 뿐 아니라 그러한 가치들 역시 미래 세대에까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한다. 통가리로 국립공원이 문화적 경관으로 지정된 이후 마오리 족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신장되었다. 마오리 족은 방문자들에게 이 국립공원의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관리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어진 방문자 센터의 전시물을 수정 및 제작하는 데에 참여하는 한편, 세계유산 기념행사의 조직, 교육자료 및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구내 상점(concession) 입장 신청서의 평가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사례연구 1. 통가리로 국립공원 – 마오리족의 110년에 걸친 책임관리(계속)

공원 관리국과 마오리 족 이위 간의 대표적인 협동사례 중 하나는 1995~1996년 사이 일련의 화산폭발로 인해 루아페후 산의 화구호가 말라버리고, 그 배수로에 화산재 퇴적물이 축적됨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상의 위협에 대해 이루어진 대처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화산이류(volcanic mudflow; lahar)의 위협으로 인해 자연보호부는 마오리 족 이위들과 협의 하에 환경 및 문화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모색하였다. 하나의 선택은 불도저로 산의 정상에 도량을 파는 것이었는데, 이는 “원주민들의 온전성과 이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위협” 할 것이라는 마오리 족 이위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자연보호부 장관은 이러한 작업 대신 최신 경보, 경고 체계를 설치하고 황거에후 강(Whangaeahu River)을 따라서 제방을 건설하여 이류가 고속도로로 흘러넘치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이 결정은 그 윤리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인정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찬사를 받았다.

테 헤우헤우 경의 이들인 투무 테 헤우헤우(Tumu Te Heuheu) 부족장은 원주민에 의한 책임관리(stewardship)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Ko Tongariro te maunga
 Ko Taupo de moana
 Ko Ngāti Tuwharetoa
 Ko Te Heuheu te tangata.
 통가리로는 우리 선조들의 산이며
 타우포(Taupo)는 우리의 내해이다
 투와레토아(Tuwharetoa)는 우리의 부족이며
 테 헤우헤우(Te Heuheu)는 사람이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칙인 책임관리와 수호적(guardianship) 기능의 수행이 갖는 중요성으로서, 이는 마오리 언어로는 “카이티아키탕가(kaitiakitanga)”의 원칙으로 불린다. 위와 같은 이야기만을 들으면 우리의 문화적 경관을 관리하는 일도 간단한 듯 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였고, 국립공원의 이용자들과도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의견충돌이 없어왔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카이티아키탕가로서, 즉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격렬하게 수행하여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이 산에 대한 관리전략 초안을 발표하였을 때 투와레토아는 그 중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투와레토아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카이티아키탕가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수행하였다. 선의의 논의가 계속된 끝에 우리는 결국 하나의 관리전략에 합의할 수 있었다.

카이티아키탕가, 또는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완전하게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이 경관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우리 부족의 이해 및 문화적 진실성의 유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를 예민하게 자각하여왔다. 이에서 도전과제는 국립공원과 우리 부족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에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세계유산 관련규정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과제는 하나의 부족으로서 온전하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아들이고 관리하여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 국립공원을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Te Heuheu, 2005).

출처; Te Heuheu, 2005; Polidor, Sacred Land Film Project 참조
http://www.sacredland.org/world_sites_pages/Tongariro.html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은 세계에서 4번째로 설립된 국립공원으로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지정되었으며, 마오리 족이 유럽 발 식민화의 물결 속에서도 해당경관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이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왔던 오랜 노력의 산물이다.

가이드라인 1.2 생태계서비스와 인간 복지

자연성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안녕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과,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는 문화적, 영적 영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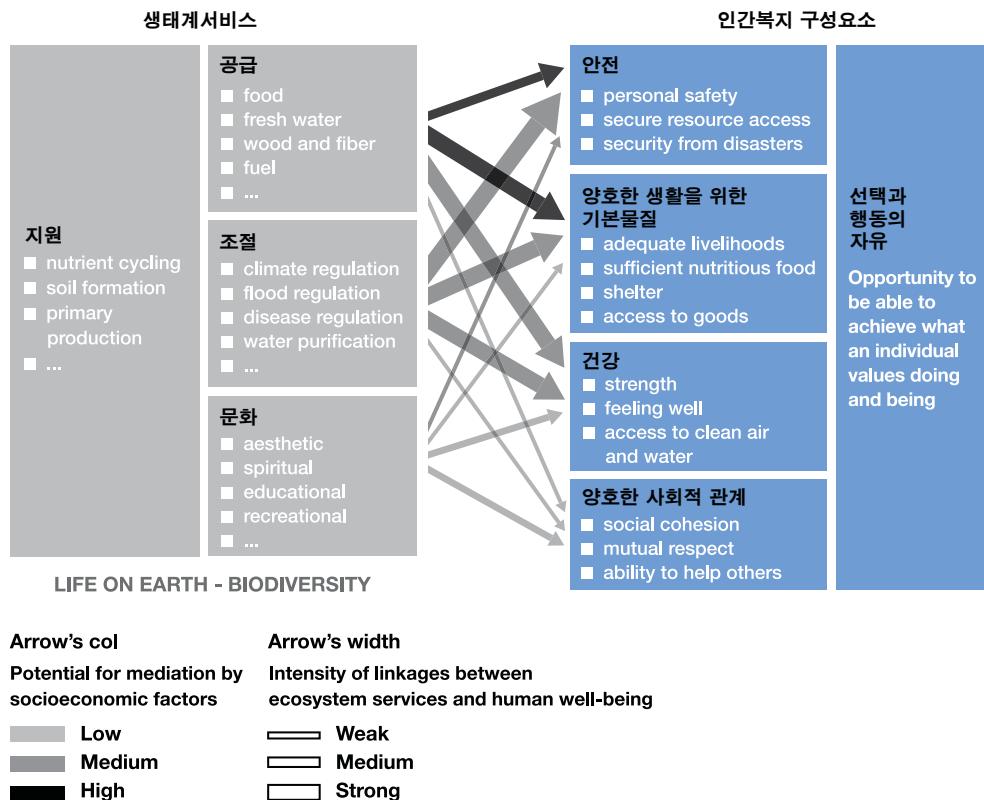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 행복감(well-being)을 느낀다. 이는 세속적인 문화권 뿐 아니라 상당수 종교적인 전통에 속해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연

과 접촉하고 장소성(sense of place)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지 모르며, 실제로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시공원 운동(urban parks movement)은 식재된 녹지공간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사진만으로도 전반적인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적어도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영적”, 또는 “치유적” 경험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들에게 있어 특정 자연지역들은 그들의 영적 전통들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따라서 신성시되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의 특별한 성격은 많은 경우 인위적 영향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며, 고요, 정숙함, 원시적 자연과 장엄한 지형의 아름다움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주류신앙의 신도들 역시도

그림 3.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인간 복지 간의 연계성(밀레니엄생태계평가, 2005)

이 그림은 대표적인 생태계서비스 항목과 인간 복지의 구성요소 간 연계성의 강도를 나타내며,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 연계성이 조정(mediate)될 수 있는 정도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훼손된 생태계서비스의 대체재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정의 여지가 크다) 연계성의 강도와 조정의 가능성은 생태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그림에 나타난 인간 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영향력 외에도 기타 환경적 요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인간 복지가 영향 받을 수 있으며, 생태계 역시 인간 복지 측면의 변화에 의해 다시 영향받게 된다.



이와 비슷한 감정에 영향받는다. 즉, 일반적으로 교란되지 않은 자연과 극적인 경관에 간혹 소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더해져 있을 경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연성지의 가치는 거기서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산의 유역분지, 신성한 우물, 강, 호수 등에 위치한 자연성지는 수원으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그 외에 자연성지가 약재, 식량, 의식 용구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경제학은 자연체계가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의 가치를 일관되게 평가절하해 왔고, 이는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하였다.¹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이 부상하면서 이러한 평가절하 상태가 바로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하천유역이나 해안보호와 같은 물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만 생각되어져왔으며, 자연이 건강과

복지(행복)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최근에서야 생태계 가치평가에 도입되었다. <그림 3>은 문화서비스도 이제 인간 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학적, 영적, 교육적, 여가적 활동은 여타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해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게다가 상당수 공동체에게는 자연성지 그 자체가 복지(행복감)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 연방의 부르야트(Buryat) 족의 일원인 에르옌 카마가노바(Erjen Khamaganova)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모든 원주민 국가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지속하기 위한 체계를 자체적으로 완성하여 왔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성지는 항상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원주민의 전통 속에서 올바르게 교육 받은 사람은 성지를 방문할 때 그 어떤 금기도 깨지 않으며, 그에 따라 해당 장소의 영적 주인들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된다. 일상의 굴레에 짓눌려 온 사람은 성지를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자신이 이렇게 보호받을

¹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상자 4. 호주의 원주민보호지역(IPA)이 제공하는 긍정적 사회영향

내부보고를 통해 집계된 다음 통계는 원주민보호지역이 개선된 사회적 산출을 생성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IPA 공동체 중 95%가 IPA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참여와 개발의 측면에서 혜택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IPA 공동체 중 60%가 IPA 활동에 의해 미취학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IPA 공동체 중 85%가 IPA 활동에 의해 저학년 아동의 학업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IPA 공동체 중 74%가 IPA 관리활동이 약물 오남용의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IPA 공동체 중 74%가 IPA에의 참여로 인해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의 회복과 가족 및 지역사회 구조의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네파분나 공동체(Nepabunna Community) (호주 최초의 IPA인 난타와리나(Nantawarrina) IPA):

“난타와리나 IPA는 모든 것을 바꾸어놓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IPA는 특히 지역사회의 원로들이 학업과 노동을 수행하는 젊은이들을 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출처: Gilligan, 2008

수 있는 은신처에 있다는 느낌은 인간의 정신, 신체, 영혼에 대단히 바람직한 효과를 줄 수 있다.”²

〈상자 4〉에는 호주의 원주민보호지역이 건강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요약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1.3 법적 지위 인정

정부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 및 민간보호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현재 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에 전통 관리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자연성을 문화적인 감수성을 발휘하여 해당 문화권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보호를 강화하고 그 전통적 관리주체의 권리를 존중 및 재확인하여야 한다.

정부 보호지역 내의 자연성지

기존에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 내에 자연성이 소재한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에 의해 그를 정부당국이 인정함으로써, 공원관리에 대한 전통 관리주체들의 기여를 정식화, 합법화할 수 있고, 또한 그럼으로써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보호 정도를 신장시킬 수 있다. 이는 더 광범위한 공동체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서 보호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식적인 인정은 자연성이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증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토착적, 지역적, 주류적 신앙전통에 의해 신성시되는

장소에 있음을 모르는 방문자들에 의해 성지들이 의도치 않게 신성모독을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다. 자연성지의 공식적인 인정은 또한 토지용도 규제에 대한 지역사회, 자연보전 기관, 정부부처 간 갈등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상당수 자연성지의 가치는 그들이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 위치에 대한 비밀성이 유지되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공식인정은 방문자 압력을 증가시켜 고의, 과실에 의한 훼손의 가능성에 자연성지를 더욱 노출시킬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성지의 인정 여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성지의 관리주체들이 사전동의를 제공하고(가이드라인 3.1 참조) 그러한 인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만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각 자연성지의 진정한 관리주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일부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가이드라인 3.4). 가능한 한 자연성지의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들의 전통적인 규칙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며(가이드라인 2.2, 6.4), 일부 경우에는 자연성지의 위치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2.4).

자연성지와 신규 보호지역의 지정

새로이 지정이 제안되는 보호지역의 중심에는 자연성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고 생물다양성, 아름다운 경관 등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제안된 보호지역이라도 그 안에 자연성이 소재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해당 자연성이의 성격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전통 관리주체들의 참여, 동의, 지지가 필요하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곳으로 제안된 장소 중 상당수에서는

² Khamaganova, 2007.

그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당초 해당지역에 대한 원주민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오랜 보호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들 중 상당수는 사원, 사찰 등의 외부적 상징물로서 자신들의 성지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정부나 과학연구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생물다양성 등 가치를 보전함에 있어 원주민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수행한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다.

보호지역 장치를 통해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자연성지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그에 대한 보호를 증강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과 환경 전반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전 및 확신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리주체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 인정은 특히 자연환경이 산업적 농업, 임업, 광업, 벌목업, 고강도 관광업, 주거지 개발 등의 토지용도와 경쟁하여야 하거나, 자연성지 내에 분포하는 자원에 대한 개발압력이 있을 시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사례연구 4 서부 시베리아 참조). 즉, 공식적, 법적인 보호지역 지위의 인정은 관리주체가 자신의 담당지역을 보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성지와 이를 관리하는 원주민 지역공동체 또는 종교적 관리주체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모든 논의가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고 적절한 협상방식³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적절한 한 효과적인 중재 하에 대화가 진행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조건은, 모든 결정이 정통성을 갖춘 적절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사전동의를 확보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수의 사례에서 원주민공동체는 자신들의 문화적 규범에 근거하고 정부에 의해서도 인정받은 보호지역을 개발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사례연구 15, 디무루 IPA 참조). 신규 보호지역은 문화적 감수성과 존중이 갖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자연성지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CBD와 IUCN/UNESCO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우수사례의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가적인 보호지역 법제를 통한 자연성지의 보호를 도모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현재 문화적 감수성을 갖추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연성지와 관리주체를 인정하는 보호지역 법제가 확보되어 있는 국가는 극소수이다. 상당수 보호지역 기관은 군대식 강제집행의 방법론을 취하는 보호주의적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불충분한 법률과 이런식의 부적절한 시행은 수 많은 전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소수자의 권한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연성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인정은 항상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관리주체와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기반한 그들의 사전동의가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가이드라인 1.4, 3.1).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기반한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개념은 국제법에서 주로 원주민공동체에 적용되지만, 자연성지의 관리주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관리주체에 이 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또 하나의 선택은 국가적 보호지역체계를 정의하기 위한 다문화적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각 문화적 집단이 자신들의 기준과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장소를 지명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전통사회는 가치에 기반한 기준을 선호하여, 자연성지,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장소, 또는 특정 집단의 기원과 관련있는 장소 등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연구 2. 관광업에 의해 위협받았다가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신성한 선물”로 인정받은 탄자니아 잔지바르주 미살리 섬

이슬람 교도가 주를 이루는 잔지바르 사회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갖는 미살리 섬(Misali Island)에 대하여 잔지바르(Zanzibar) 정부는 본래 그곳을 외국인 소유의 관광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관광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인가계약(concess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알게 된 이 지역의 어부들과 자연보전주의자들은 힘을 합하여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로비를 펼쳤으며, 그 결과 정부가 결정을 뒤집도록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잔지바르 정부는 어부들을 마미살리 섬 해양보전지역(Marine Conservation Area)의 지도관리자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신성한 선물(Sacred Gift for a Living Planet)”로 지정하여 전세계에 개방하였다.

미살리 섬은 1ha 면적의 소규모 산호섬으로서 탄자니아 인근에 위치한 잔지바르 열도를 이루는 두 개의 주요 섬 중 북쪽에 위치한 펠바 섬(Pemba Island)의 서부 연안에 위치해 있다. 펠바 섬의 26개 어촌과 11,500명의 인구에게 미살리 섬은 어업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³ E.g. principled negotiation(fisher et al., 1992).

사례연구 2. 관광업에 의해 위협받았다가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신성한 선물”로 인정받은 탄자니아 잔지바르주 미살리 섬(계속)

미살리 섬이 갖는 어업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있다. 첫째, 그를 둘러싸고 형성된 산호초들이 풍부한 어장이며, 둘째, 미살리 섬 자체가 어업을 위한 임시 거처를 의미하는다고(dago)이기도 하다. 이 섬 인근의 수역에서 활동하는 어부들 중 상당수는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미살리에서 임시로 생활한다. 이러한 생활의 시기와 기간은 그들이 사용하는 어구와 그들이 주로 잡는 어류종에 따라 조석주기 또는 월주기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문어잡이꾼들은 산호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큰 조건 시에 이 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초반에 이 지역 어부들은 생계에 대한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하였다. 첫째는 미살리 섬을 관광리조트로서 임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그 섬을 더 이상 다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었고, 둘째는 키구미(kigumi)나 다이너마이트 어업과 같은 파괴적 어업관행의 확산이었다.

우선 관광업에 의한 위협에 대면하기 위해 어부들은 이미 이 섬의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던 자연보전 운동가와 협력하여 유럽의 관광업자에게 이 섬의 개발권을 부여하여 그에 관광리조트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도전하였다. 상당한 로비 끝에 정부의 결정은 결국 취하되었고, 이후 어부들이 주도할 공동관리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제안이 진행되어 마침내 1998년에 미살리 섬 해양보전지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파괴적인 어업기법을 통제하고 어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키구미란 지역민들에 의해 개발된 매우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여러 명의 어부들이 막대기와 기둥을 사용하여 물과 산호초를 쳐서 놀라 산호초 밖으로 나온 물고기를 대형 예망(seine net)으로 유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예망에는 모기장이 자주 사용되며, 매우 춤춤하게 짜여져서 아주 작은 치어까지 모두 낚아올린다. 이 때문에 키구미가 이루어진 산호초는 물리적으로 훼손되고 물고기가 모두 사라져 훼손되게 된다.

미살리 섬의 신성한 가치가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종이었다. 이곳은 현지의 이슬람 신앙에 의해 신성한 섬으로 여겨진다. 전래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언자 하드하라(Hadhabra)가 이 섬을 방문하여 어부들에게 기도용 매트인 마실라(msala)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어부들이 마실라가 없다고 하자, 예언자는 섬 자체를 기도매트로 사용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섬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도를 한 예언자의 행위에서 섬의 이름과 그 신성성이 유래하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다.

이러한 지역적 전통과 미살리 섬의 어부들이 거의 전부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이맘들과 합동으로 미살리에서 수산자원의 공동관리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수행을 지지하기 위해 이슬람교의 강력한 환경보호적 가르침들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는 “미살리 윤리 계획”으로 명명되었으며, 탄자니아의 CARE가 이슬람 생태학, 환경관리 재단(Islamic Foundation for Ecolog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의 지원을 받아 주관하였다. 이는 해양보전 분야에서 이슬람교 윤리에 근거한 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첫번째 사례일지도 모른다.⁴

이 프로그램은 종교지도자, 정부 당국자, 어업 공동체를 한 데 모은 워크숍을 조직하여 코란의 가르침과 환경의 사용에 대해 이슬람교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였다. 이 접근은 관련지역에서 환영받았고⁵, 미살리 섬 해양보전지역의 관리가 이슬람교에서 제시하는 윤리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 제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2개의 마을에서 운영되면서 모스크 지도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포스터 제작, 마드라사(Madrassa) 학교를 위한 공모전 개최 등을 수행하여 왔다.

이 사업 진행 초기부터 잔지바르 정부와 이슬람법 전문가인 무프티(Mufti)가 모두 지지를 표하였으며, 2000년에는 정부가 미살리 윤리계획의 사례를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종교와 자연보전을 위한 연합(ARC)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신성한 선물”로서 기증하였다.

이 계획은 펠바 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프로그램 개시 시점에 수행된 기초연구는 어부 중 34%만이 이슬람교가 바다와 수산자원의 사용에 관계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 이 비율은 66%로 상승하였다. 어부들은 구체적인 자연보전 조치를 실천하였고, 그들이 얻은 교훈이 주위 마을로 퍼져나갔다. 이 사업의 핵심적인 결과물 중 하나는 교사용 가이드라인(Khalid and Thani, 2007)의 출판과 배포였는데, 이는 스와힐리어로 번역되어 펠바 섬의 어촌에 배포되고 있다. 이 서적은 다른 이슬람교 공동체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출처: Dudley et al., 2005; Khalid and Thani, 2007.

⁴ Khalid and Thani, 2007.

⁵ Khalid and Thani, 2007.

사례연구 3. 일본의 성지 용도지구 구획

일본의 전통적인 전체론적 토지용도 구획 방식은 크게 3개의 주요 지역을 설정하였다: 먼저 오쿠야마(Okuyama)는 성산의 고원을 의미하고, 사타요마(Satayoma)는 산지 중 고도가 낮은 지대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산림을 의미하며, 히토자토(Hitozato)는 개간되어 집약적인 거주가 이루어지는 농지를 의미한다. 히토자토 내에는 신주 노 모리(Chinju-no-mori)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작은 성림이 있었는데, 이들에는 사찰과 신전이 위치하였고, 주변지역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기능하였다. 일본인들은 카미(Kami)라고 불리는 자연계의 신을 숭배하는데, 이들의 수는 8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신주 노 모리는 신성한 분위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에 이르러 일본인들의 생활양식이 경제적 번영과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변화하면서 이러한 전체론적 관점의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새롭고 긴급한 시도들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확립하였으며 신주-노-모리로 대변되는 신성한 체제의 재도입을 고려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출처: Iwatsuki, 2005; 2007.

가이드라인 1.4 협의

모든 논의과정에 있어 적절한 전통문화 관리주체, 계승인, 지도자 등을 참여시키고, 보호지역 내 또는 인근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법적 인정과 관리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구한다.

자연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 내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전통적 관리주체와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보호지역의 관리와 관련해 관리주체들과 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이며, 더 높은 수준에서의 참여와 공동관리가 이어지기 위한 초석이다. 협의는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야 하고, 그 목표와 한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인력 중 연락 담당관이 모든 소통을 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통은 주의를 기울여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자연성지의 인정과 관리에 관련을 맺고 있는 관리주체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기타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협의를 수행하여야 할 적합한 관리주체, 계승인, 지도자 등을 판별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 될 수 있다(〈상자 7〉의 이해당사자 분석에 대한 내용과 가이드라인 3.4, 3.4 참조). 또한 “관리주체”가 반드시 자연성지와 직접적인 지리적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1.5 총체적 모델

자연성이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하나의 총체적 관리모델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며, 그것이 인류의 유형, 무형 유산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상당수 자연성지들은 수백, 수천년 동안 전통적인 체계 하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들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관리체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에 포함되며, 인간과 자연 간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추구한 최초의 시도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예: 사례연구 3, 일본; 15, 스리파다-아담스 봉우리; 10, 카산크와; 14, 릴라). 따라서 완전한 자연-인간 체계로서 자연성을 보전하는 것은 인류에게 중요한 성과이다.

자연성이가 대변하는 체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를 뒤덮었고 오늘날까지도 서구적 현대화와 동의어인 것으로 간주되는 “개발”的 추세와 극명히 대비된다.⁶ 토착문화, 전통문화는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심각한 생태위기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개념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인류 공동체가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위기의 와중에서 환경과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다.”⁷

이상적으로는 “다문화적 보호지역 체계”의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가 사용하는 기준에 의해 구분된 중요 장소를 완전히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캐나다 외의 세계에서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소수이나, 불가리아의 릴라수도원 자연공원은 해당지역의 영적, 자연적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가치들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관리목표로 하고 있다(사례연구 14).

[제2원칙]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연성을 계획과정과 관리프로그램에 통합

가이드라인 2.1 공원계획

관리계획을 개정하여 보호지역 경계 내에 소재한 자연성이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과정을 시행한다.

⁶ Eade, 2002.

⁷ Tucker and Grim, 2001.

상자 5. 미국 국가공원청(US National Park Service)의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

문화자원에 대한 미국 국가공원청의 정책

계획

국립공원의 효과적인 책임관리를 위해서는 공원 내 문화적 자원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포괄적 계획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효과적 계획은 공원 내 문화자원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다. 이러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원 관리청이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종류별 (1) 분포, (2) 상태, (3) 중요성, (4) 지역적, 국가적 맥락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습득하여야 한다. 문화자원 계획과 그 일부를 이루는 자원평가 과정 중에는 문화자원 전문가와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학자, 전통적으로 그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민족, 기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중 현재 학계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연혁 등의 관련 정보가 고려된다.

계획 결정은 공원의 자원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에 사업제안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고, 잠재적인 악영향의 회피, 경감을 가능하게 해줄 대안이 고려된 후에 이루어진다. 계획 과정 중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의 회피는 최우선순위를 갖는 목표이며, 전통적으로 해당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의 가치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원보존을 위한 접근과 대안이 충분히 파악 및 고려되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문화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과정 중에는 문화자원 전문가, 전통적으로 관련을 맺는 민족, 기타 이해당사자 등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주체에게 참여의 기회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의 문화적 경관은 그 역사적 토지용도와 관행에 의해 의미를 가진다. 토지용도가 경관의 중요성의 원인이 되는 최대 사유인 경우, 논의의 목적은 해당 토지용도로의 계속적 사용과 그 지역의 역사를 대변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유지한다는 두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된다. 한 경관 안의 문화적, 자연적 요소들의 다양성과 배치는 관련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신성한 가치 등의 계속적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과 그 과거, 현재의 용도들은 올바르게 파악되어야 하며, 해당지역과 전통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민족들의 신앙, 태도, 관행, 전통, 가치 등이 계획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U.S. National Park Service, 2001: <http://www.nps.gov/refdesk/mp/chapter5.htm>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현장기반 보전 분야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종계획이 널리 동의 및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단계에 갈수록 큰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핵심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원계획 시의 표준적인 우수사례가 되었다(가이드라인 3.1, 3.2, 3.3 참조).⁸ 더욱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취한 생태계적 접근법(가이드라인 2.7)은 이러한 계획이 제도적 계층구조 내에서 해당 자원과 가장 인접한 단계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 가치와 자연성지들은 일반적으로 보호지역 계획과정 중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의 모든 관리계획에서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과 더불어 자연성지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계획과 관리가 기존 관리주체의 전통적 관리체계를 포함시키거나, 아예 그에 기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 국립공원 관리청은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상자 5>에 발췌. 제시되어 있는 문화자원 관련 계획정책을 개발하였다. 과테말라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 예시는 <부록 1>을 참조하라.

가이드라인 2.2 자연성지의 파악

비밀유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통 관리 주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참여적 관리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보호지역 내부와 인근 성지들의 위치, 성격, 용도, 거버넌스 등을 파악한다.

사전동의와(가이드라인 3.1) 비밀성(가이드라인 2.3)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전제되고, 지역 관리주체의 지원 및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보호지역 내의 성지들을 파악하고, 그 제도적 관리, 거버넌스 구조, 관리를 위한 전통적 규정 등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유용한 접근법 중 하나는 참여적 지도제작과 기록, 그리고 참여적 지리정보체계(PGIS: Participato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의 활용을 통해 자원들의 통상적 용도에 대한 공동 파악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⁹

장소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전통적인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 방식들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관리주체 기관들은 자연성지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측면에 있어 상세한 규칙들을 완성한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 성지의 공통적인

⁸ Thomas and Middleton, 2003.

⁹ Rambaldi et al., 2006; se Annex 8.

사례연구 4. 러시아연방 서부 시베리아의 특별보호지역 및 보호생물종

칸티(Khanty) 및 만시(Mansy) 원주민공동체들과 그들이 생활하는 토지 사이에 오래도록 지속된 관계는 상당수의 성지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 경관의 전반적인 보호뿐 아니라, 유라시안 비버(Eurasian Beaver; Castor fiber)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종의 생존 역시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비버의 생존은 이 지역이 이들 공동체에 의해 신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거의 전적으로 기인한다. 인근의 다른 지역에 서식한 비버는 17세기에 이미 사냥으로 인해 멸종하였다. 지역공동체에 의해 비버가 보호받은 자연성지 중 하나는 추후 말라야 소샤 자연보전지역(Malaya Sosya Natural Reserve)으로 지정되었다.

서부 시베리아의 칸티–만시스크 오크루그–우그라 자치구(Khanty–Mansiysk Autonomous Okrug–Ugra)에 소재한 이들 성지들은 현재 석유 개발 압력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 성지들의 지속가능한 보호 수행의 어려움을 전통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자연이 반드시 전혀 교란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가중시킨다. 허가되지 않은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성지들은 신성성을 상실하고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크루그 자치구의 자연보전 당국자들은 원주민공동체와 함께 오크루그 지역 총 면적의 6%에 해당하는 총 370만ha 면적의 26개 특별자연보호지역(Specially Protected Natural Areas)들을 지정하였다. 이 지역에는 400여개의 자연성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정확한 소재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석유개발의 영향력을 경감시키고,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문화적, 정신적 가치, 그리고 원주민공동체의 가치도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출처: Merkushina, 2007

특성은 접근 및 사용의 제한이다. 가능한 한 자연성지의 관리와 관련해 관리주체들이 스스로 정립한 규정을 존중 및 지원하며, 적절한 선에서 그들을 보호지역의 규정 및 정책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 좋다.

가이드라인 2.3 비밀성의 존중

관리주체에게 자연성지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요청 시 항상 보호지역 관계 기관과 공유되는 비밀정보를 보호할 장치를 확립한다.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의 현황 파악은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 매우 유용하지만, 지역공동체에 자연성지의 정확한 위치, 또는 그것의 문화적 가치, 관행, 역사, 용도 등을 공개하라는 어떠한 압력도 가해져서는 안된다. 일부의 경우 자연성지의 위치가 은폐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접근이 관리주체 공동체 내에서도 성별이나 연령대에 속하는 구성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그 특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지의 존재조차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지에 외부인이 출입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성지의 신성성을 경감시키거나 완전히 훼손하여 그 장소가 버려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성지 관리주체가 그 위치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보호지역 관리자들이 대처하는 방식 중 하나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조치의 의도를 공지할 수 있는 장치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후 관리계획이 성지의 신성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요청되며, 그에 근거하여 관리계획을 수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자는 자연성지의 실제 위치나 그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하지 않고도 관리주체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적인 비밀 정보가 공유될 시에는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개인과 공중에게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몇가지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주체와 합의 하에 그들의 신뢰를 얻은 보호지역 관리인력이 해당 공동체로부터 얻어야 하는 정보를 보유하는 등의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문서기록의 작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2.4 경계표시와 은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자연성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자연성지를 대규모 엄정보호지 내에 위치시켜 그 정확한 위치를 은폐한다.

자연성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접근을 판정하는 결정은 구체적인 장소 뿐 아니라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연성지에 대한 지식, 인식, 공개적 지명도를 신장시키는 것이 최선의 접근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경계를 명확히 표시(demarcate)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성지에 대한 지명도 상승으로 인해 그에 대한 훼손과 신성 모독까지도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책임 것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엄정보호지로 지정하는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자연성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토지구획의 적절한 사용, 방문자용 인도 및 도로는 민감한 지역을 피해 조성, 야생지역에 대한 접근 및 사용 허가제의 도입 및 신중한 운영, 유자격 안내인 대동 의무화 등이 있다. 방문자 압력이 높은 현장의 경우에는 명확한 표지판 안내가,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특히 민감성이 큰 지역에 대해 물리적인 접근 차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사진 참조).

가이드라인 2.5 용도구획

부정적인 외부영향력에 취약한 성지의 인근지역에는 지원지역(support zone), 완충지역(buffer zone), 전이 지역(transition zone) 등을 지정한다.

토지의 용도구획(zoning)은 보호지역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당국의 토지용도 기본계획(master plan)에 있어서도 활용되는 토지용도 계획 및 관리의 표준적인 도구이다. 용도구획은 자연성지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목표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과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당수 자연성지는 보호지역 용도구획과 유사한 형태의 전통적인 구획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당수 성지는 공통적으로 영적 지도자에 의한 출입만이 허용되는 핵심지역 또는 “지성소(inner sanctum)”, 그리고 의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에 소재한 자연성지에 대한 신규 구획 시에는 수 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주체들이 이미 수행한 구획의 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기존의 전통적 구획이 존재

하는 경우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획은 또한 <가이드라인 2.4>에서 논의한 접근의 통제 또는 은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란의 최소화를 필요로 하는 자연성지에 대해서는 그를 둘러싸는 더 넓은 접근제한 지역을 구획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성지 내의 장소에 대해서 역시 관리의 강화를 위해 구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케냐의 카야 세계유산(Kaya World Heritage Site)을 구성하는 성림인 카야 키논도(Kaya Kinondo)에서는 카야 족 원로들이 전통적인 내부 구획구조가 생태 관광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이들은 방문자용 통로와 방문자 지역, 접근을 위한 의복 규정, 사진 촬영의 허용 및 금지 지역을 모두 지정하였다(사례연구 5, 사진 참조).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개념 역시 자연성지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모델 하에서는 “핵심”지역이 자연성지 자체가 되고, 그에 대한 완충지역 (buffer zone) 및 전이지역(transition zone)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특히 자연성을 둘러싼 토지에 변경이 가해진 경우 등 일부의 경우, 완충지역에서는 다른 생계유지 또는 자연보전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득을 창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성림의 가장 자리에 과일나무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나무 등 경제적 활용도가 높은 나무를 심는 경우이다. 이는 성림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해주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생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성림의 보호를 도울 수 있는 조치이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완충지역의 일부가 자연성지에서 발견되는 토착 생물종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원하는 동시에 서식지 복원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가이드라인 2.6).

사례연구 5. 케냐의 카야성림(Kaya sacred forests)

1980년대 말 식물생태학자들이 케냐의 작지만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해안가 산림이 사실상 지역공동체에 의해 관리되는 성림(sacred grove)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의 전통적 관리주체였던 미지肯다 족(Mijikenda)과의 생산적 협동이 개시되었다. 이 협동의 결과로서 2007년에는 카야 성림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 지명되었다.

카야(Kaya)란 “고향집(homestead)”이란 의미로, 이 지역의 카야는 9개 미지肯다 부족의 본래 마을 터를 나타낸다. 미지肯다 족은 타민족의 박해를 피해서 해안가의 짙게 우거진 산림지대로 은신하였지만, 이후 이 카야로부터 벗어나서 산림 외부의 토지를 개간하였다. 현재에는 한 때 광활하게 펼쳐져 있던 산림지대 중 49개의 작은 카야 산림만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갖춘 채 잔존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카야는 현재 케냐의 남아있는 해안가 산림의 10%만을 대변하지만, 그에 비해 대단히 많은 희귀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다. 해안의 산림 중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27곳의 현장 중 7곳이 카야 산림이었다. 케냐의 희귀식물종 중 절반 이상이 해안지대에서 발견되며, 개중 상당수는 카야산림에 분포한다.

위협요인: 1970년대 이후 개발압력으로 인해 카야산림의 일부가 관광업을 위한 개발로 인해 상실되었고, 이 압력요인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광객 대상 판매용 목각품을 제작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유지 필요 등의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미지肯다 족은 전통적 규제를 존중하지만, 전통적인 보호제도의 힘은 미지肯다 족의 법에 따를 의지가 적은 타민족 인구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등의 이유로 크게 약화되었다. 인구성장, 생계유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 빈곤 등은 이러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케냐 해안에서의 부유층 대상 관광업의 발달은 고도로 개발된 호텔 지대와 대부분의 카야들이 소재해 있는 미개발 농촌 배후지

¹⁰ UNESCO, 2003b.

사이의 고전적인 격차를 만들어내었다.¹¹

카야의 원로들은 자신들의 성림이 처한 위협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로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에 공동 보전노력이 수행되었고, 이후 1992년에 해안산림보전기관(Coastal Forest Conservation Unit)이 설립되었다. 이는 WWF의 지원 하에 케냐국립박물관이 카야 원로들과 동반자관계를 맺은 가운데 수행한 사업이었다.

법적 보호: 법적인 보호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를 위한 최선의 장치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고려 대상이 된 사안들은: 카야의 강한 영적·문화적·역사적 가치, 일정한 통제 하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에 의한 접근 가능성, 엄격한 보호의 필요성이었다. 즉, 어떻게 해야 보호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다. 고려된 방법을 산림보전지역(Forest Reserve), 국가기념물(National Monument), 국립공원(National Park)으로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각 방법별로 보호를 주도할 지도기관이 달라질 것이었으며,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법제도, 용도 구조 및 관리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서로 다른 긍정적, 부정적 함의를 갖추고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케냐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s of Kenya)의 주도 하에 관리될 국가기념물로서 지위 부여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이 방안이 엄격한 보호, 주민에 의한 접근 및 이용, 문화적, 생물학적 가치의 활발한 보호 등의 목표를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산 및 박물관 관련 법제는 카야에 적합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 여기까지 완료된 이후 대부분의 카야들은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수정사항에도 불구하고 미지肯다 족 원로들의 전통적 법률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는 이 법률들이 미지肯다 족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었고,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져 국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관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운영진 차원의 이해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로들은 매일 카야를 관리하고, 그들의 전통적 규제를 강제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카야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하며,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해당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케냐국립박물관 측 인력에 도움을 요청한다.

문화 보전: 보전프로그램은 카야 관리와 전통의식의 일부 회복으로 이어졌다. 각 카야 별로 원로회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예를 들어 크왈레 지역(Kwale District)에서는 정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원로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 회의 의장은 직무상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써 전통사회와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수준에서도 카야 원로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생태관광: 현재 관리진의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크왈레 지역의 카야 키논도(Kaya Kinondo)에서는 WWF가 생태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로들은 관리위원회를 이끌면서 카야 내의 방문자 접근 가능 지역 및 사진촬영 가능 지역을 지정한 동시에, 접근 불가 지역과 사진촬영 금지지역도 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방문자용 이동통로가 건설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조건도 제시하였다. 방문자용 통로가 조성된 한 사례에서는 원로들이 지나치게 많은 식생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에 벌금을 부과하였다. 카야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방문자센터가 건설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 관광안내인을 모집하여 훈련도 완료한 상태이다. 이 안내인은 인근 호텔들에서 마을 방문과 식사 일정을 포함하는 반나절 관광코스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로들은 카야의 일부 지역에 대해 방문자의 접근을 허용하였지만, 해당지역의 자연이 정기적으로 사람의 접근으로부터 완전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4일을 1주로 하는 미지肯다 족의 전통적 달력에 따라 4일에 한번씩 산림을 관광객에 대하여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관광객들에게도 미지肯다 족의 달력을 서양식 달력으로 해석하여 휴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로들에게 직접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야의 장기적 생존: 지난 20년간 카야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에 상당한 진전 있었다. 카야의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가 증명되었으며 전통적 관리의 중요성 역시 인정되어 재활성화되고 있다. 카야들은 법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토지용도 변화와 과잉개발에 의한 직접적인 위협요인도 제거되거나 억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케냐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아 케냐국립박물관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야의 원로들 역시 일상적 관리를 자체적인 자원만으로 수행하고 있다. 카야 산림과 원로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도전과제들을 발생시킨다.

카야에서 실제로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의견에 따르면, 카야산림의 장기적인 생존은 카야 주변 지역사회의 생계 개선과 소득창출 성과에 달려있다. 이들의 생계가 개선되고 대안적 소득창출원이 제공될 수 있을 경우 기존 산림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크왈레 지역의 3개 카야에 대해 경제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microfinance)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생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Wild *et al.*, 2007).

저자: Written by R. Wild, based on interviews with Elder Mr Abdalla Ali Mnyensi, Chairman of Kaya Kinondo Council of Elders, Chairman of Kwale District Kaya Committee, and nominated Kaya District Councillor, Elders Omar Rashid Kituzo, Kaya Kinondo Elder, and Deputy Chairman of Ecotourism Management Committee, Ali Mwalimu Mwarandani Kaya Forest Guard, Hemed Mwafundjo Coordinator, Kaya Kinondo Ecotourism Project. Also referenced Githitho, 2003 and 2006.

¹¹ Sindiga, 1996.

가이드라인 2.6 연결과 복원

자연성지와 그와 유사한 생태를 보유한 지역들 사이에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연결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경관에서는 대규모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자연성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성지는 심각하게 훼손 또는 변경된 경관 속에서 희귀종, 토착종, 멸종위기종이 마지막으로 생존할 수 있는은신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통 관리주체들이 이러한 생물종에 대해 제공하는 보호 덕분에 가능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자연성지의 생물다양성적 가치는 이들이 더 넓은지역에 걸친 천연식생의 복원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중심지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성림이 포함하고 있는 큰 식물다양성은 천이적 개념 (successional concepts)에 근거하여 생태계 회생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¹² 이상적으로는 자연성지 간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된 식생을 연결짓는 통로의 확인 또는 확립을 통해 성지의 연속성과 보전가치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성지를 또한 생태적 “징검다리”, 또는 특정 생물종이 같은 경관 내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성지의 기능은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교란 시 생물종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 하에서 경관 전체에 걸쳐 조성된 생태적 네트워크속에서 자연성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가이드라인 2.8).

가이드라인 2.7 생태계적 접근

공정한 방식으로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는 토지, 물, 생물자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생태계적 접근법을 도입한다.

최근 수년 간 생태계적 접근(ecosystem approach)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¹³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명국들에 국가정책과 법제에 이러한 가치를 실무적으로 반영하는 문구를 도입하고, 그를 시행하며, 경험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IUCN 생태계관리위원회(CEM: Commission on Ecosystem Management)는 생태계적 접근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 원칙을 실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한 절차들을 개발하였다.¹⁴ 아래는 이 접근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생태계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이란 공정한 방식으로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 협약의 3가지 목표인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의 비용과 혜택의 공평, 공정한 분담과 공유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기 위해 토지, 물, 생물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생태계적 접근법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12개의 원칙을 5개의 연속적 단계로 구성한다.¹⁵

- 중요성이 가장 크며 최초로 고려할사항: 면적, 핵심 이해당사자
- 차상위 사항: 생태계 구조, 기능, 건강 및 관리
- 경제적 사항
- 공간에 걸친 적응적 관리: 인접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로부터의 영향력
- 시간에 걸친 적응적 관리: 장기목표, 그 달성을 위한 유연한 방법

생태계적 접근법은 초기단계에 이해당사자를 구분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의 4단계를 제시한다.

1단계: 제안된 생태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이해당사자를 구분

2단계: 이들을 일차, 이차, 삼차 이해당사자로 분류하고 각자의 관점을 파악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주체를 일차적 이해당사자로서 분류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영향력이 커서 이차적, 삼차적 우선순위가 부과되어야 할 주체에는 자원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지만 그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정부공무원, 국제보전단체 등이 있다.

3단계: 해당 생태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상대적인 관리역량과 헌신도를 파악

4단계: 정기적으로 소집될 이해당사자 회의를 조직

생태계적 접근법은 토지관리를 위한 효과적이며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체제들을 제공하며, 더욱이 그를 통해 자연성지 관련 사안도 대처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자원들에 대하여 생태계적 접근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¹⁶ 자연성지에 있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전통적인 생태지식과 원주민들의 거버넌스체계가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다(가이드라인 4.3).

¹² Ramakrishnan t al., 1994, 1996, in Ramakrishnan, 2003.

¹³ It was adopted by the Convention at its 5th Conference of Parties, in the year 2000(Decision V/6)

¹⁴ Shepherd, 2003; 2004.

¹⁵ Shepherd, 2003; 2004.

¹⁶ <http://www.iucn.org/themes/cem/ourwork/ecapproach/index.html>

가이드라인 2.8 경관적 접근

자연성지에 대해 경관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더 광범위한 문화적 경관, 보호지역체계, 생태통로 등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한다

자연성지는 자체적인 가치를 보유할 뿐 아니라 더 넓은 경관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경관 전체가 신성한 것으로 믿어지기도 하며, 그 중 일부 장소들이 특수한 기능과 더 높은 영적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일부 신성한 경관에서는 법적 보호지역이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 자연성지가 “통상적”인 경관에 소재하지만 신화적, 역사적, 물리적인 방식으로, 또는 성지순례 경로나 관리주체의 공유를 통해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관들의 상당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갈수록 가장 외딴 지역조차 원주민과 지역민에 의해 변경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인간에 의한 서식지 변경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에 가깝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 세대에 걸쳐 인간의 영향력을 받아 식생종의 분포에 많은 변경이 이루어진 수 많은 경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관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성지가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한 장치는 “보호경관 접근법(protected landscape approach)”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호경관 접근법은 자연보전과 문화보전을 연계시켜, 토지와 인간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인간에 의한 책임관리를 육성한다.¹⁷

Adrian Phillips가 설명한 바와 같이:

“경관이란 다음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 자연과 인간 – 이들이 구체적인 장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 과정
- 과거와 현재 – 이에 따라 경관은 우리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에 대한 기록을 제공
-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이들은 경관 속에서 하나로 합쳐져 우리에게 정체성을 제공”¹⁸

모든 종류의 자연성지는 자연적, 역사적 역사를 기록하고 정체성을 제공하는 고유한 장소를 생성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보호경관 접근법은 자연성지의 보전에 있어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전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경관의 보호는 IUCN

카테고리 I~IV에 해당하는 “엄정보호지(strictly protected areas)”에 비해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경관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보전 접근이 점차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¹⁹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두 개의 주요 장치는 IUCN 카테고리 V–육지/해양 보호경관과 세계유산협약 하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이다.²⁰ 이 두 상호보완적 접근들은 각각 서로 다른 지점을 강조한다. 카테고리 V–육지/해양 보호경관에서 주요 초점은 국가적, 국내적 수준에서의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생태계 온전성 등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다. 반면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 지정은 인간 역사, 문화전통의 연속성, 사회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의 추구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²¹

가이드라인 2.9 개발계획 부문의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원

개발계획 당국자들은 보호지역체계 외부에 위치한 토지의 상당 부분 계획을 주도한다. 농촌지역 전반에 걸쳐서 자연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이들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상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초점은 보호지역 관리자들에 맞추어져 있지만, 토지용도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개발계획 당국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개발계획가는 지역단위의 토지계획과 이보다는 국지적인 개발전략 또는 토지용도계획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가는 보호 지역 관련부처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발계획 과정 중에 보호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호지역 관리부처는 특정 지역의 생물학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 계획 중 성지의 존재를 인정 및 보호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개발계획 당국자는 신규 보호지역의 계획에도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신규 계획의 작성 시 또는 신규 개발 중 주민들의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 협의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발계획 절차가 잘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획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생태적, 문화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지역 관련부처는 지역의 개발계획가에게 구체적인 장소의 문화적, 생물학적 가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성지의 관리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¹⁷ Brown *et al.*, 2005.

¹⁸ Phillips, 2005, original emphasis.

¹⁹ Brown *et al.*, 2005.

²⁰ Phillips, 2005.

²¹ Brown *et al.*, 2005.

가이드라인 2.10 보호지역 카테고리와 거버넌스

자연성지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와 거버넌스 모든 유형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식적인 보호지역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연성지도 그 관리주체의 희망에 따라 공동체 보전지역 등의 법적, 전통적 장치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인정 및 지원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보호지역 분류체계 자연성지는 모든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걸쳐 나타난다.²² 보호지역 체계 내에서 지정된 일부 자연성지는 카테고리 III-천연기념물로서 인정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련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6개의 IUCN 카테고리들 중 어느 경우도 유용할 수 있다. Borrini-Feyerabend *et al.*, (2004)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연보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가 엄격한 보호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고, 공동체들 스스로가 부과한 지역보호 및 자원사용 제한 등 전통적 관행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자연성지들은 접근과 사용 측면에 있어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IUCN 카테고리인 카테고리 Ia – 엄정자연보전지와 가장 유사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성림 중 상당수는 수확, 수렵, 접근에 대한 강한 금지 규정과 함께 가장 제한적인 채취적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강한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성림은 매우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제약의 또 하나의 예시는 지역주민의 신앙적 가치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에 대해 이루어진 가와가보 산

(Mt Kawagebo)의 등반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담겨 있다. 유난성에 소재한 가와가보 산, 티벳자치구의 성산인 카일라스 산(Mount Kailas), 네팔의 마차푸차르(Machhapuchhare), 부탄의 강카르 품섬(Gangkhar Puensum)은 아직까지 등반기들이 “정복”하지 못한 몇 안되는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이다(상지 6 참조).

보호지역 거버넌스: 최근 특히 공동체 수준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보호지역의 복수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세계공원총회(World Parks Congress)에서는 지역공동체와 원주민에 의해 오랜기간 보호받아 온 자연성지 등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보전지역(CCA)”이라는 분류항목이 도입되었다. 이 주제는 원주민공동체, 지역공동체와 보호지역에 대한 WCPA 우수사례 보호지역 가이드라인 시리즈 11권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기도 하였다.²³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권장사항 및 정책방안 중 상당수는 자연성지와 큰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표 1, 부록 8 참조).

가이드라인 2.11 국제적 차원

자연성지 및 이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은 국경을 넘어서서 위치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거나 향후 지정될 접경평화공원(*transboundary peace parks*)의内外부에 소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보호지역은 접경보호지역 등을 통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공조의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경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간 공조의 발상은 1932년

상자 6. 산악인 출입금지 성산

마차푸차르(Machhapuchhare): 네팔에 소재하며, 구릉 족(Gurung)에 의해 신성시 되어 한번도 정상까지의 등반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산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등반시도는 1957년에 이루어졌다.²⁵ 당시 탐사대는 북부 능선을 통해 정상으로부터 50m 지점까지 등반하였으나, 존중의 의미로 정상 자체에 발을 디디지 않기로 한 지역 원로들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산의 여신이 노하지 않도록 산 밑의 계곡에 위치한 성소에 제물을 남겨야 했다. 이후 마차푸차르는 공식적으로 성지로서 선포되었으며, 등산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강카르 품섬(Gangkhar Puensum): 부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해발고도 7,570m, 상대고도 2,990m로, 등반된 적이 없는 산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부탄이 산악인들에게 개방된 1983년 이후 1985년과 1986년에 걸쳐서 이 산에 대하여 4차례의 실패한 등반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9년에는 한 팀이 티벳을 경유하여 이 산에서 두번째로 높은 봉우리를 성공적으로 등반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토착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부탄 내의 해발고도 6,000m 이상의 산에 대한 등반은 금지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등산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

카일라스 산(Mount Kailas): 이 산은 전 세계의 힌두교, 불교, 자아니교, 티벳 토착종교인 본 교(Bon)의 신도 등 십여 명 이상의 인구에게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12세기에 티벳의 가장 유명한 요가 수행자였던 밀라레파(Milarepa)가 이 산의 정상으로 날아올랐다고 하며, 그 이후 이 산에 대한 등반시도가 기록된 바는 없다.

출처: U.S. National Park Service, 2001: <http://www.nps.gov/refdesk/mp/chapter5.htm>

²² <http://www.iucn.org/themes/cem/ourwork/ecapproach/index.html>

²³ Brown *et al.*, 2005.

²⁴ Sandwith *et al.*, 2001.

²⁵ Reynolds, 2003.

캐나다와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다른 접경 보호지역도 개발되고 있다.²⁴ 특히, 접경보호지역의 한 부류인 “평화를 위한 공원(park for peace)”은 평화와 공조의 촉진, 자연적, 문화적 가치의 보호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상당수 접경보호지역은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연성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칼라가디 초국경 공원(Kgalagadi Transfrontier Park)은 코이 족(Khoi)과 산 족(San)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깊은 신성한 가치를 가져왔다. 러시아 연방과 몽골 사이의 초국경적 공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부르야트 족(Buryat)에게 신성시되는 바이칼 호(Lake Baikal)의 유역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²⁵

“몽골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신성한 바이칼 호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심이 깊은 호수로서, 거의 전부가 이 지역의 토착종인 3,000여 생물종의 서식지입니다. 부르야트 부족은 스스로의 기원을 바이칼 호에서 찾으며, 그곳의 동물과 나무 등 자연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지 내의 생물종다양성이 이처럼 크다는 사실은, 이들 성지는 특정 가족 또는 부족의 기원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안의 생물 종 상당수가 조상으로서 섬겨지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²⁶

접경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은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작업이다. 동시에, 자연성지는 평화의 구축과 같은 여타 중요한 가치들이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제3원칙] 이해당사자의 동의, 참여, 포용, 협력 촉진

가이드라인 3.1 사전동의

새로운 공식적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체계 내에 자연성지를 포함시키거나, 자연성지에 영향을 주는 개발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적절한 관리주체로부터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 동의를 확보한다.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

“각 민족이 그들의 토지, 영토, 천연자원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하여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FPIC)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가진다는 원칙은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이 개발, 보전 등 목적으로 그들의 토지 또는 자원을 통제하거나, 그에 접근하고자 하는 비국가 주체들과 관계를 맺을 시에 큰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²⁷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는 국제법 상에 정립된 원칙으로서, CBD, IUCN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 받아들여져 있다.²⁸ 그러나 각 국내법에는 이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시행 정도에는 상당한 격차들이 존재한다.²⁹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에서 상술하였듯이,³⁰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의 원칙은 원주민들이 그들의 토지와 자원에 대해 갖는 내재적이고 사전적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정통성에 기반한 권한을 존중하고, 동등하며 상호 존중적 관계를 맺을 것을 종용하는 의미를 갖는다.”³¹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의 근본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i) 제안된 구상과 그로 인한 영향력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협의의 수행
- (ii) 원주민에 의한 의미있는 수준의 참여
- (iii) 대표성 있는 기관의 확립

원주민이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를 제공할 권리는 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이 선언의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주민에게는 각자의 토지, 영토, 기타 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전략을 결정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광물자원, 수자원 등의 개발, 활용, 채굴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원주민의 토지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원주민의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획득하도록 의무화할 권리가 포함된다.”³²

원주민의 FPIC를 제공할 권리에 대한 존중은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달성을 있어 핵심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자연보전 기관들이 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게 되면 원주민들과, 원주민들의 영토에 보호지역을 설립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³³

이 핵심적인 권리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원칙과 실무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다. FPIC 원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미

²⁶ Drobyshev Yu et al., 2007.

²⁷ Khamaganova, 2007.

²⁸ Colchester and Ferrari, 2007.

²⁹ E.g. at the Vth World Parks Congress(Durban Accord Annex 6).

³⁰ Colchester and Ferrari, 2007.

³¹ IFAD, 2005.

³²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 Twenty-second session, 19-23 July 2004, p.5.

³³ FPP, 2004, Annex 3.

³⁴ Colchester and Ferrari, 2007.

있는 동의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한 공동체 역량구축, 양질의 법적 자문, 원주민 제도의 대표성 강화³⁵ 등의 조치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들이 의미있는 협상에 대비하고 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⁶

가이드라인 3.2 자발적 참여

국가 또는 여타 이해당사자에 의한 자연성지 관리에 참여가 이루어질 시, 항상 적절한 관리주체로부터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확보한다.

자연성지의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자연성지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정한 관리주체와 보호지역 관리국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부처와 원주민 관리주체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신뢰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연성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자연성지의 해손 또는 신성모독을 우려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동의 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려가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없애기 위한 어떠한 압력도 가해져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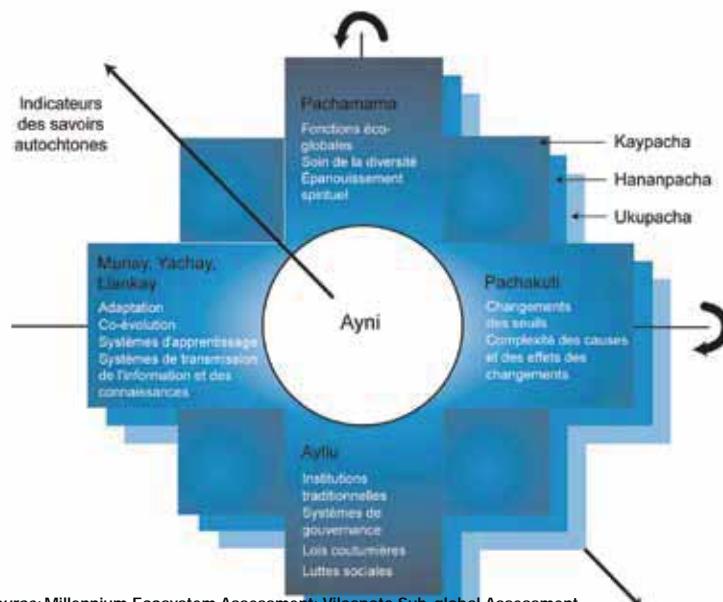
그림 4.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개념적 틀의 지역적 적용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체제들은 다양한 범위의 평가에서 여러 규모로 적용된 바 있다. 특히 더 국지적인 범위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공동체들의 필요와 우려사항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체제들을 적절히 적용시킨 후(adapt)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페루의 빌카노타(Vilcanota) 지역에서 원주민공동체 스스로 주도로 원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수행된 평가의 경우(사례연구 16 참조)에 있어서는, 생태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웨챠 족(Quechua)의 이해 방식을 기반으로 체제들을 처음부터 재창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주에 대한 웨챠 족의 시각은 호혜성(reciprocity; Ayni), 시간과 공간의 불가분성, 모든 과정의 순환적 성격(Pachakuti) 등의 개념이 중요시되며, 이들은 잉카 족이 정의하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또한 웨챠 족 공동체는 사랑(Munay)과 노동(Llankay)을 통해서 주위환경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게(Yachay) 된 다고 믿으며 따라서 이들은 웨챠 공동체를 자연세계와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일루(Ayllu)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제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구성된 체제들은 MA 개념적 체제들과 유사점이 있지만, 그 차이점이 바로 웨챠 족의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빌카노타의 개념적 체제들은 또한 여러 틀 규모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하다(Kaypacha, Hananpacha, Ukupacha). 이들은 공간적 규모 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순환적 관계도 대변한다.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는 변화를 환영하고 적응적 배움의 과정을 통해 변화에 대해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웨챠 족의 적응적 역량이 담겨 있다(다면 현재와 같은 변화속도는 이 공동체에게 조차 도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빌카노타 체제 틀을 나타낸 그림의 십자가 형태는 웨챠 족에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신성한 모양인 “차카나(Chakana)”를 나타내며, 호혜성(Ayni)을 강조하는 심의적, 집단적 의사 결정을 통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파차마마(Pachamama)”는

들과 제도들이 향후 계속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이 점검된다. 단지 MA 체제들을 현지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개념 및 원칙들을 근거로 하여 지역별 개념적 빌카노타 평가 체제에서 웨챠족 공동체



Sourc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Vilcanota Sub-global Assessment

MA 체제를 중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 및 “인간 복지” 구성요소를 조합한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파차쿠티(Pachakuti)란 MA의 “동인(driver)” (직간접적 동인 모두)과 유사하다. 아일루(Ayllu) (Munay, Yachay, Llankay 포함)는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변화와 적응의 순환적 과정 속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파차마마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 가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공동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여왔고, 적응해가고 있는지, 웨챠 족의 원칙

들은 파차마마의 특정한 측면들의 조건과 주제들을(물, 토양, 농생물다양성에 초점)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업무과정을 조율하였다. 이 재화 및 서비스들이 체제들을 새로이 개발하는 작업은 지역 공동체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이 이미 보유한 지식과 원칙들을 통해 지역 환경과 인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상황에 대해 자체적인 문화적, 영적 제도들 내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³⁵ IFAD, 2005.

³⁶ Colchester and Ferrari, 2007.

가이드라인 3.3 포용

자연성지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소외된(marginalized) 주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관리주체, 핵심 이해당사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급 국가정책 결정 시에도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를 확실하게 정의한다.

의사결정 시 최대한 다양한 범위의 이해당사자를 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에게 신성시되는 현장에 있어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에는 공동체 지도자, 부족 원로, 부족장, 영적 지도자, 전통적 토지 소유주 및 전통문화 계승자, 지식 보유자,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포함될 것이다. 주류신앙에게 신성시되는 현장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에는 수도사회적, 종교적 위계 속에서의 다양한 층위들이 포함될 것이다. 특정 현장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상자 7).

“그러나 참여에는 장기간에 걸친 시행기간, 개입의 유연한 설계, 밀접한 모니터링과 평가,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위한 효과적 체계 등이 요구된다.”³⁷

이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외되거나 소수자에 소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데, 특히 해당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해 성별이나 민족

단위로 참여가 거부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적인 문화규범이 기본적인 인권관념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에는 공동체 수준에서 다양한 범위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표준 관행으로서 확립된 상태이나, 이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재강화와 재학습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적 수준의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참여가 유도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 결과 이러한 정책은 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탁상행정식으로 개발되어 현실과 괴리된 부적절한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게 된다. 자연성지는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공동체 수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한 참여가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개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핵심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개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들이 각자의 공동체의 입장을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항상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며, 그 대안은 핵심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개인을 파악하고, 이들이 각자의 공동체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가 훨씬 강력한 방안이지만, 후자 역시 정책과정 중 정보 파악 수준을 훨씬 개선시킬 수 있다.

상자 7. 이해당사자 파악 및 분석

이해당사자 분석은 참여적 개발 과정에 있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구가 되었으며, 상호작용의 패턴에 대한 이해, 개입의 개선, 의사결정 과정의 당사자로 참여 할 주체의 판별, 정책형성 과정의 개선, 갈등의 이해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해당사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자 및 관리자로 정의되며, 이해당사자 분석이란 특정 자원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속성, 상호관계, 이해관계 등에 기반한 설명을 서술할 수 있기 위한 도구를 지칭한다.³⁸

다음은 이해당사자 분석의 수행을 위한 단계이다.³⁹

- 분석의 주 목적을 결정한다.
- 체계와 해당 체계 내의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이해를 확보한다.
- 주요 이해당사자를 파악한다.
-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성격, 상황을 탐구한다.
- 이해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패턴 및 맥락을 구분한다.
- 관리 상의 방법을 정의한다.

³⁷ IFAD, 2005.

³⁸ Ramirez, 1999.

³⁹ Grindle et al. 1995.

상자 7. 이해당사자 파악 및 분석(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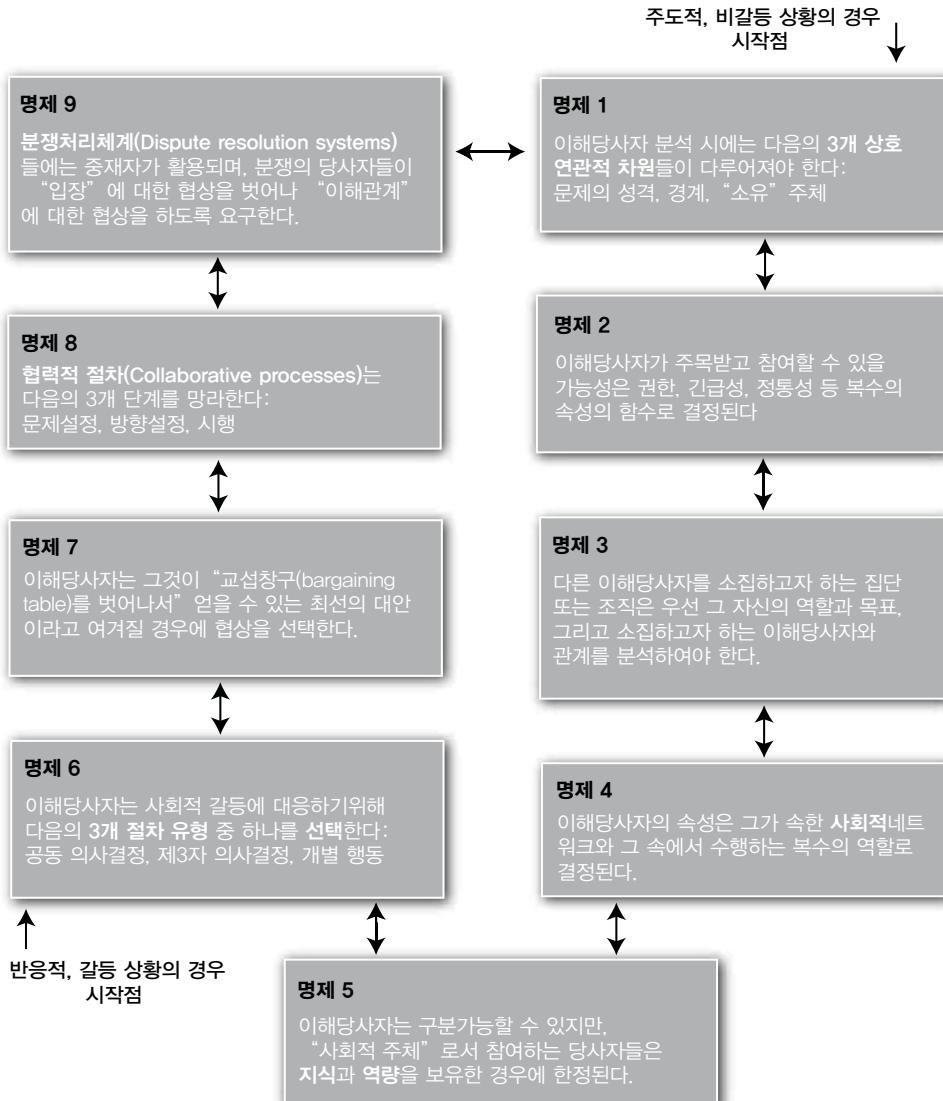
다음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분석의 목적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인가?

이해당사자를 소집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은 타 당사자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정통성, 자원, 타 이해당사자의 포함 또는 배제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이해당사자 분석이 집중될 사유 또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 등과 관련된다.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있어 이 질문들은 “주목받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되며, 이는 권한, 정통성, 특정 사안의 긴급성 등 속성의 결과로 정해진다.⁴⁰

Ramirez(1999)는 질의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의도로 복수의 명제에 기반하여 이해당사자 분석과 갈등관리를 위한 개념적 체제들을 개발하였다(그림 5 참조). 이 명제들은 기존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Ramirez의 연구 원문을 참조할 것이 권장된다. 이 체제들은 갈등상황과 비갈등상황 모두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 이해당사자 분석과 갈등관리를 위한 개념적 체제들(Ramirez, 1999)



⁴⁰ Ramirez, 1999.

상자 7. 이해당사자 파악 및 분석(계속)

이해당사자 분석 도구는 그 자체로 특정 지역 내 집단의 평가 기준이 되는 기준 또는 차원의 목록, 표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를 제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이지만, 쟁점이 되는 사안 또는 문제에 대한 정의에 합의하고, 그 경계를 정의하며, 사안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집단을 판단하는 작업은 항상 가변적이고 복잡하다.

산림 이해당사자를 평가함에 있어 Colfer(1995)는 인간-산림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차원을 구분하였으며(아래), 이를 자연성지 일반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적용시켰다. 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균접성(물리적, 감정적)

이 차원은 일차적으로 자원과의 물리적 근접도를 지칭하며,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자연성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인구 중 상당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로부터 멀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더 광범위한 신성한 지리적 장소는 염두에 둘 경우 해당성이 커 진다.

● 기존 권리

기준에 확립되어 있던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윤리적, 실용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경우 경쟁적, 갈등적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의존성

상당수 공동체는 문제가 되는 자원의 영적, 신성적 가치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의존성은 직접적인 자원 사용의 측면에서는 덜할 수 있지만, 문화적 가치와 해당 사회의 지주로 역할 측면에서는 점점 더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 원주민 지식

상당수 핵심 이해당사자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식과 오랜 관련을 맺으면서 획득한 경험에 근거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특정 현장에 대해 광범위한 지역적 지식이 보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공동체와 그 현장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 자원/문화 통합

문화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연성지는 이러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측면 속이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삶의 의미와 자의식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 권한 부족

특정 자원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해당 자원이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의 일부로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권한 부족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이해당사자 분석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러한 제도와 특정 장소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에 대해 신중히 이해하는 것은, 모든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자연성지와 그 관리에 대한 협상 과정에 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이드라인 3.4 정통성

자연성지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통성과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자연성지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 중 일부는 논의 및 협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과 정통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때 특히 적정한 전통 관리주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리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큰 당사자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실용적 방안은 생태계적 접근법에서 권장하듯이 이해당사자들을 일차, 이차, 삼차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다(가이드라인 2.7).⁴¹

관리주체 역할의 복잡성 역시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일부 자연성지의 경우에는 복수의 관리주체들이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따라서 적정한 개입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연성지의 관리주체, 그리고 공동체 사회의 광범위한 맥락에 대한 신중하고, 심화적이며, 존중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실제적 관리주체와 권한을 부여받은 의사결정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 공동체에 중요성을 갖고 있어서 다수의 문화권과 관리주체가 연관된 자연성지의 경우에 공동체의 권력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신중한 노력 및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⁴¹ Shepherd, 2003; 2004

가이드라인 3.5 갈등관리

적절하고 적합한 갈등관리, 종재, 갈등해소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통적 관리주체와 현대의 주민, 자원 이용자, 관리자 등 사이의 상호이해를 촉진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하나의 자연성지와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대부분은 상호수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⁴²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연성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성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두고 여러 집단이 경쟁하고 있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종재 및 갈등관리 방법론을 동원하여 당사자들이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여도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결과에 불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경우에는 보호지역 관리기관이 종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보호지역 관리자들이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어 제3자 종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호지역 관련 당국자들이 민감한 상황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NGO 역시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데빌스타워 국가기념물의 등반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한 사례에서는(사례연구 6) 일차적으로 몇 차례의 이해당사자 간 회의를 통해 갈등이 관리되었다가,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였다.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경쟁하던 집단들이 긍정적인 관계맺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거버넌스, 종재, 갈등관리 방안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이해당사자와 갈등에 대한 체제들은 상자 7 참조). 협상 방법론,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거친 종재자들이 제시하는 권리안(부록 8) 등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공교육 또한 갈등의 최소화나 방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제4원칙 참조).

사례연구 6. 미국 데빌스타워 국가기념물(Mato Tipila)

미국 최초의 국가기념물(national monument)인 데빌스타워 국가기념물(Devils Tower National Monument)은 주변 초지와 폰데로사 소나무림(ponderosa pine forest)의 한 가운데에 솟아 있으며,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블랙힐스(Black Hills)의 서쪽 가장자리에 소재한 데빌스타워는 장관을 이루는 놀라운 지형일 뿐 아니라 블랙힐스 고유의 산지 및 북부평원(Northern Plains) 동·식물 군락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화적 중요성을 갖기도 한다. 북부평원의 인디언 부족들에게는 곰의 오두막(Bear's Lodge)이라는 의미의 “마토 티필라(Mato Tipila)”로 불리는 데빌스타워는 상당수 북미 인디언들에게 신성시되는 숭배의 대상이다. 이곳은 또한 현지 주민들에게 고향을 상징하는 주요 지형지물이기도 하면서, 북미 최고의 암벽등반 장소로서도 명성이 높다.

1995년에 데빌스타워를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의 이해와 필요에 대응하고, 이러한 사용이 천연자원 및 문화자원에 가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빌스타워 등반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공원 관리 인력, 등반가, 환경단체, 북미 인디언들 간의 수 차례 회의의 결과물로서 완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6월을 자발적인 등반로 폐쇄 기간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연방법과 대통령 지시에 의해 북미 인디언들이 연방정부의 영토에서 전통적인 종교적, 문화적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1995년의 등반관리계획(CMP: Climbing Management Plan)은 등반가들에 의한 여가 목적의 이용과 북미 인디언들에 의한 전통문화적 사용 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시도였다. 데빌스타워에 대해 북미 인디언이 갖는 경외감을 존중하여, 미국 연방 국가공원 관리청(NPS: National Park Service)은 많은 수의 문화활동이 시행되는(예: 하지 의식 등) 6월 중 등반객에 대한 데빌스타워의 자발적 폐쇄 조치를 지지 및 시행하였다. 이 자발적 폐쇄 조치는 중요한 신성지역으로서의 데빌스타워와 관리를 맺고 있는 북미 인디언 부족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확립되었다.

1995년의 등반관리계획 발표는 1996년에 Bear Lodge 곰의 오두막 다중사용협회(Multiple Multiple Use Association) vs. Bruce Babbitt 소송으로 이어졌다. 데빌스타워가 북미 인디언들에게 신성시되는 지역이라는 사안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중심적인 중요성을 차지하였으며, 원고는 6월 중 자발적 폐쇄 조치가 제1차 수정헌법에 의한 제정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98년 4월 와이오밍 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으며, 이 계획이 정부부처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결하였다.

NPS는 2002년에 1995년도 등반관리계획을 재검토 하였고, 2006년에 다음 요소를 포함한 CMP 개정본이 완성되어 대중에 공개되었다.

산악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된 산악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교육 인력에 산악인 레인저(ranger)들이 참여하고, 산악인전용 등록 사무소가 운영되며, 산악인 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다. 산악인 교육 시청각자료의 제작 목적은 안전, 자원에 대한 영향력, 데빌스타워의 문화적 중요성 등에 대한 산악인의 인식을 신장시키기 위한 산악인 것이다.

⁴² Dudley et al., 2005.

사례연구 6. 미국 데빌스타워 국가기념물(Mato Tipila)(계속)

안전기준: NPS는 상업적 가이드들에 대해 충분한 교육 및 검증을 거쳐 역량(competency)을 보유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표준은 데빌스타워 산악인의 40%를 이루는 가이드 동반 산악인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다.

6월 자발적 등반로 폐쇄: NPS는 상당수 전통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6월 한달 간의 자발적 등반로 폐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 자발적 폐쇄조치는 CMP가 확립된 1995년 이후, 매 년 6월마다 발효되어 왔다.

이 외에 유지되는 1995 CMP의 요소에는: 둉지를 트는 매들에 대한 교란 방지를 위한 계절적 등반로 폐쇄, 망치를 사용한 등반용 볼트 교체 허용. 새로운 볼트와 전동드릴 사용도 불허가 포함된다.

데빌스타워 국가기념물 지정 백주년이 되던 2006년 봄에는 최초로 북미 인디언계 인물이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국립공원 내 관리결정에 있어 지역사회의 구성원, 산악인, 부족 구성원의 참여와 의사 전달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 년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주변지역 부족, 산악인,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포용적 회의는 열린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해서 중재자의 참석 하에 등반활동 관련 사안과 관련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회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년 간(2007) 이러한 회의의 준비과정으로서, 다양한 당사자를 함께 모은 몇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현지 등반 안내인의 집에서 Arvol Looking Horse 부족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한 만찬이 열리기도 하였고, 6월에는 지역의 치료주술사가 공원관리청 인력들과 등반 가이드를 부족의 정화의식(sweat lodge ceremony)에 초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사들은 관련 부족, 지역사회, 산악인 집단 등 사이에 더 건설적인 관계 형성 및 새로운 협력관계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부분적으로 데빌스타워의 이용자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공감대로부터 과거의 갈등을 초월하는 상호존중의 정신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동반자관계와 협력시도들이 이어져서 데빌스타워와 그 천연자원, 문화자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D. FireCloud, 데빌스타워 국가기념물 관리소장,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

[제4원칙] 자연성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 증진을 강화

가이드라인 4.1 다학제적 접근

자연성지에 대한 다학제적,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여, 지역 원로, 종교적, 영적 지도자, 지역사회, 보호지역 관리자,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예술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등을 모두 참여시킨다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통합적 연구 및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한다. 자연성지는 환경과 그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역적, 토착적 공동체의 문화적 발현양식과 신앙체계를 함께 보존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상적인 경우, 이 관리체계는 자연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 모두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보전의 지향점, 문화적 보전목표, 영적 신앙체계의 표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론적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상자 8 참조). 생태학자, 문화인류학자 전통문화 계승자 등은 각자의 노력을 합하여서 다학제적, 초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지의 영적 차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언어학자, 철학자, 종교지도자, 시인, 작가,

미술가 등 예술과 인문학계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예술가는 더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성지에 대한 공공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세계유산 지정지인 하와이 화산국립공원(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에서는 킬라우에아 방문센터(Kilauea Visitor Center)에 화산의 여신인 펠레(Pele)의 그림이 오랜 기간 걸려 있었다. 펠레는 모든 형태의 화산활동을 상징하며, 현재 그녀의 거처는 국립공원 내 킬라우에아와 마우나 로아(Mauna Loa)라고 여겨진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산에 속한다. 그러나 하와이 원주민은 20세기 초에 그려진 이 그림이 펠레를 유럽계 미국인처럼 묘사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연구소(The Mountain Institute)와 국립공원 내 쿠파나(kupana) 원로들이 협력하여 펠레의 형상을 나타낼 새로운 대표 그림을 공모하였다. 이 공모전은 화산의 신성성과 살아있는 신인 펠레에 대한 방문자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의도로 개최되었다. 국립공원은 지역 화가들이 접수한 그림들로 넘쳐나 되었으며, 그 그림들로 전시회가 열려 그 중 우승자가 선정되었고, 이 보호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창조적 힘의 새로운 표상으로 대체하게 되었다(사진 참조).

자연성지의 문화적, 자연적 가치 평가

모든 보호지역 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무형의”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의 지역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들이 포함될 것을 권장한다.

- 다음 분야 등의 전통적, 토착적 지식과 지역 관행: 약학, 식물학, 동물학, 동물 교배학, 농업, 수자원 관리, 공예, 지도제작, 구전역사
- 언어, 음악, 노래, 춤, 미술, 문학, 축제, 음식 등에 내재되어 있거나 표현되어 있는 문화적 유산, 정체성, 전통.
- 영성, 의식, 세계관(cosmovision)
- 다음과 같은 사회제도를 통해 발현된 공동체적 가치:
 - 관습적 법체계
 -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자연과의 조화
 -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비폭력, 공감, 공동생활, 타인과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

보호지역 관리정책에는 다음의 문화적, 영성적인 “무형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고, 공공교육 자료에도 이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그것들이 어떻게 보호지역 경관에 내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내재적, 존재론적 가치
- 건강과 치유적 가치
- 관광, 야생지의 경험에 갖는 여가적 가치
- 교육적 가치
- 서구의 과학적 지식 또는 역사
- 장소성
- 미적 자질, 경관적 가치
- 영적 영감, 성지순례의 대상
- 평화와 화해
- 예술적 영감과 표현

독립적인 자연성지, 그보다 광범위한 지역, 또는 대규모 경관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될 경우:

- 고도의 고유성, 오염되지 않은 물, 지속성(sustenance), 물리적 지형 또는 경관적 가치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가치
- 약용 식물, 성스러운 동물, 제의적 용도, 영계 교류 의식(vision questing), 성지순례, 구전 전통 등으로 인한 문화적 가치
- 권능, 적막성, 최소사용 등으로 인한 영적 가치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해당 현장 또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인 생물학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에 근거한 보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저자: C. McLeod.

가이드라인 4.2 통합연구

생물다양성 가치를 연구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자연성지의 기여도를 평가하며, 특히 문화적 원인으로 인한 인간 행동이 어떻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였는지 등 사회적 차원의 의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생물학, 사회학 통합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연성지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보유하며, 따라서 자연보호에 있어서 관리주체의 역할이 점점 더 크게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연성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지 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연성지 및 그와 연관된 문화적 관행이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손실 경감에 기여하는 원리 역시 여전히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성지의 보전적 가치를 밝힌 연구들은 자연성지의 생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관리주체의 희망사항을 존중하는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성지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그와 생물다양성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생물다양성 보호에 있어 자연성지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과적으로 자연성지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정책 및 관행을 향상시킬 것이다(3.4장 참조).

가이드라인 4.3 전통적 지식

생물다양성협약(CBD) 제8(j)조에 의거하여 자연성지와 관련한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들의 전통지식, 혁신, 관행 등을 존중, 보존, 유지,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자연성지는 상당한 생물다양성협약 제8(j)조에 의거하여, 당사자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계

있는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의 전통적 생활양식에 담긴 지식, 혁신, 관행을 존중, 보존,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러한 지식의 광범위한 적용과 더불어, 그러한 지식의 보유자들의 승인과 참여 하에 지식 적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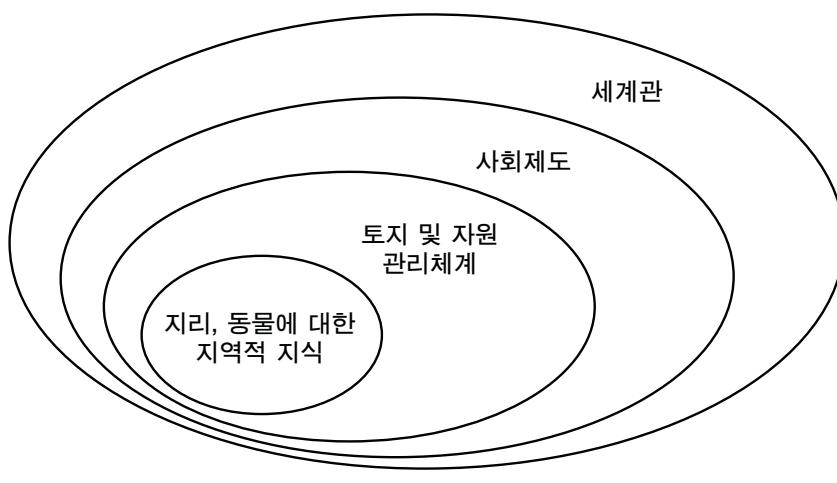
자연성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과학적, 전통적 지식은 모두 완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통합적 관리체제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전통지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 생태학 지식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수 자연성지 관리주체들은 신성한 생물종의 보호자, 전통적 치료사, 약초의, 농경 일정의 의사결정자 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담당하는 지역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주민 문화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통적 생태학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면, 자연성지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그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지식을 보유한 관리주체,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인문학자 등은 모두 통합적으로 협동하여 자연성지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Berkes(1999)는 전통적 지식을 다음의 4개 상호연관적 수준들로 분류한다.

- 1) 지리와 동물에 대한 지역적 지식
- 2) 토지 및 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지식
- 3) 사회제도에 대한 지식 및 분석
- 4) 세계관에 대한 지식 및 분석(그림 6 참조)

이들 4개 수준은 자연성지와 큰 연관성을 갖는 전통지식에 대해 사고하는 데에 유용한 체제들을 제공한다. Berkes와 기타 저자들은⁴³ 또한 전통적 지식과 영적 가치 사이의 중요한 관계도 지적한다.

그림 6. 전통적 지식과 관리체계에 대한 4개 분석수준(Berkes, 1999).



⁴³ E.g. Ramakrishnan, 2003; Khamaganova, 2007.

“서구문화의 세계화는 다른 영향력 외에도 서구적 자원관리 체제의 세계화를 야기하였다. 조금씩 잔존하는 전통적 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환경적 책임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키거나, 현재의 하향식, 중앙적 자원관리에 대해 더 참여적이고 지역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전통적 생태지식이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세계관과 신앙이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일지 모른다. 거의 모든 전통적 생태학 지식체계는 지식, 실천, 그리고 신앙의 복합체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비지배적, 존중적인 인간–자연 관계의 윤리와, 전통적 생태학 지식의 신앙적 요소의 일부로서 신성성의 생태학이 발견된다.”⁴⁴

가이드라인 4.4 네트워크 형성(Networking)

자연성지의 전통적 관리주체와 지지자, 보호지역 관리자,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용자 등이 모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자연성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과 상이한 문화권의 관리주체를 함께 모으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많다. 이는 발상과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상당수 전통적 자연성지 관리주체는 고립된 상태에서 활동한다.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관리주체들을 연결시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할 경우, 자연성지를 보호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지원받게 된다. 이런 방식의 네트워크 형성은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다른 지리적 규모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자연성지를 포함하는 경관이 원주민보다는 최근에 이주한 주민 또는 이용자에게 관리되고 있을 경우, 다양한 사용자들이 함께 모여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 문화경관의 관리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4.5 소통과 공공인식

지지적 소통,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성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교육자료의 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움, 표현, 평가의 방식을 통합한다.

상당수 자연성지가 받는 보호의 수준은, 주변 사회에서 이해, 인정, 지지받는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사회들 중 더 광범위한 집단을 참여시키고 자연성지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통, 교육, 공공인식 증진 활동 등을 통해 대화가 개시되어야 한다. 특히 구전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상당수 공동체들은 소통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에 있어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소통과 교육 관련 학문 분야에서의

최신 성과들은 “양방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극, 무용, 음악, 시 등은 모두 양방향 소통의 수단으로써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공동체 구성원들 뿐 아니라 외부인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예술은 지역적 무형유산, 지식, 윤리 등을 보유 및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사례연구 9, 말라위 참조). 연극과 희곡은 민감한 사안을 논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예를들어 보호지역 관리자에게 그들의 실수를 일깨워주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에 기반하고 있어 지역적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도 하다. 그 이외의 접근법에는 박물관 전시, 이동전시, 축제 등의 활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수단들은 인도에서 성림에 대한 지식을 홍보하기 위해 모두 활용된 바 있다(사례연구 7, 인도의 성림). 인도 국립인류박물관(National Museum of Mankind)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살아있는 시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9개의 모형성림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IUCN 내에서는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EC: Commission 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가 보호지역 관리자들과 관련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지역 번역 프로그램에도 점점 더 보호지역의 신성한 가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사례연구 15, 디무루 IPA).

커뮤니케이션, 교육, 공공인식(CEPA)은 CBD의 최신 주제이며, CBD는 이와 관련해 2010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international biodiversity target)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과 우선순위 행동을 개발하고 있다. CBD는 공공인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CEPA “포털”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⁴⁵

가이드라인 4.6 목록작성

비밀유지 필요 및 취약성이 큰 자연성지에 있어, 관리주체에 의한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성지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UN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UN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에 포함시킨다. 제한적 배포 대상 정보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개발한다.

자연성지의 관리에 사용하고 보전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 관리주체의 판단 하에 필요할 경우, 비밀성을 보장받는 자연성지의 목록(inventory)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목록 작성 시, 그 일환으로 자연성지에 대한 참여적 지도제작 (participatory mapping) 활동을 수행하고, 각 자연성지의 용도와 역사적 관리현황 관련 세부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가이드라인 1.4). 일부 경우에는 특정 지역 내 자연성지의

⁴⁴ Berkes, 1999, p.163, original emphasis.

⁴⁵ CEPA portal: <http://www.cbd.int/programmes/outreach/cepa/home.shtml>

사례연구 7. 대중에게 인도 성림의 중요성 알리기

인도 내 성림(sacred groves)의 문화적, 생물학적, 생태적 중요성과 이 오랜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을 인식하여, 인도 중부 보팔 시(Bhopal City)에 위치한 국립인류박물관(National Museum of Mankind; Indira Gandhi Rashtriya Manav Sangrahalaya – IGRMS)에서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다음과 같은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⁴⁶

교육 목적으로 9개의 모형 성림 제작: 1999년 이 박물관은 Arunachal Pradesh, Chhattisgarh, Kerala, Maharashtra, Manipur, Meghalaya, Rajasthan, Tamil Nadu, West Bengal 주의 9개 성림들의 모형을 200 에이커 면적에 걸쳐 설치하였다. 각주 성림의 현지 토양 및 기후를 고려하여 식물종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각 모형성립에 식재하였다. 이 성림은 각 주의 지역 공동체들이 행한 춤과 제례 의식을 통해 정식으로 신성성이 부여되었으며, 한 성림은 공동체 전통에 따라 보팔 시의 주민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모형들은 선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공동체의 정체성, 순수성, 영속성, 신성적 가치 등을 육성하는 살아있는 묘포(nursery)로서 기능하고 있다.

실내 전시: 성림을 주제로 하여, 인도 성림들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사진, 지도, 차트 등을 활용한 실내 전시가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박물관 방문자들이 성림의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동전시: 1999년~2000년 사이에 67개의 사진과 지도를 활용한 이동전시가 제작되었다.⁴⁷ 이 이동전시의 목표는 지역주민, 다양한 조직들과 상호작용하여 국내 성림에 대하여 더욱 많은 사실을 배우고, 다양한 지역적 관리관행 및 지식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전시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각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아 갈수록 풍부해지고 있다. 이 전시는 인도 전역에 걸쳐 인기가 크다.

성림축제: 2000년 1월에는 15개 주, 185명의 참여자가 주도하는 인도성림축제(National Sacred Grove Festival)가 3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수목관리원, 과학자, 미디어계 인사 등 성림과 연관된 풀뿌리 층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성림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고, 그를 통해 이해당사자 네트워크의 형성, 지역특화적 현장기반 활동의 개발, 관련정보의 출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2007년 3월에도 이와 같은 성림축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가 재활성화되었고, “인도의 성림(Sacred Groves in India)”이라는 제목의 서적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축제는 성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각자 지역 성림의 관리, 보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GRMS는 이 축제의 사후조치 및 박물관 활동의 일환으로서 성림에 대한 구상을 더욱 진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시범 지구단위 계획: 국가수준 계획의 사후조치로서, 카르나타카(Karnataka)의 코다구 지구(Kodagu district)에서 성림 보전전략의 모범 개발 및 시행 사례가 시범시행되었다. 코다구에서는 성림을 데바라카두스(devarakadus)라 부르는데, 이들은 1878년의 인도산림보호법 시행 이후 보호산림(Protected Forest)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데바라카두스들은 불법벌채, 외래종 식재, 방목, 산불, 침입 등으로 인해 훼손을 입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주 산림국은 주민들, 그리고 성림 관리자들과 힘을 합하여 코다구 지구의 성림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주 산림국은 이전에 데바라카두스들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코다구 지구 폰남펫(Ponnampet)의 임업대학의 활발한 참여 하에 협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특별히 조직된 성림 관리자 실무단체의 논의 하에 “공동 산림 보호 및 관리 – 데바라카두스”라는 제안서를 제작하였다. 이 제안서의 목표는 데바라카두스 보호산림 지역의 계획, 보호, 재생, 개발, 관리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이 구상은 2000년 10월 코다구 비라즈펫(Virajpet)에서 개최된 데바라카두 축제에서 개시되었따. 이 산림들과 전통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성림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조직, 구성, 의무와 책임, 산림자원의 공유 체제 등 성림 위원회의 기능과, 그를 모두 총괄하는 “코다구 지구 내 성림위원회 연합(Federation of sacred grove committees of Kodagu District)”이 설립되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주 산림국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성림위원회의 인식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 Yogesh Gokhale, 에너지자원연구소, 인도 뉴델리

⁴⁶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Calcutta; Centre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Barrackpore; Dep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Pune; Indian Institute of Science, Bangalore; Kerala Institute for Research and Training in Anthropology and Development Studies, Kozhikode; St Joseph's College, Thiruchirapalli; Applied Environmental Research Foundation, Pune; Indian Institute of Forest Management, Bhopal; North Eastern Hill University, Shillong; World Wide Fund for Nature-India. 포함

⁴⁷ Malhotra *et al.*, 2000.

총 수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는 자연성지의 자연보전 및 문화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층위에서 적정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목록작성이 자연보전으로 이어진 좋은 예시는 케냐의 카야에 대한 <사례연구 5>에 나타나 있다.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자연성지의 실제적인 수와 범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숫자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현재 지정된 보호지역의 수를 초월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상당수 자연성지는 규모가 작지만, 반면 범위가 매우 큰 경우도 있다. 지구 상에서 가장 큰 20개의 보호지역 중 5개는 토착인(indigenous)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이는 반드시 이들 보호지역이 “신성”하다고 여겨진다는 의미는 아니다).⁴⁸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자연성지의 목록이 작성될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성지의 손실률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자연성지 손실의 양상, 속도,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자연성지의 보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자연성지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지역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들을 UN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UN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에 목록화하면 이들에 대한 전세계적 이해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상지의 목록화가 실현된다면, 목록화 작업이 지역사회와 그 영적 지도자의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근거한 사전동의를 확보한 후에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민감한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배포되도록 효과적인 보호장치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비밀성의 철저한 유지야말로 신뢰를 축적하고 성공적인 협력을 이를 수 있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4.7 문화 재창조

지역 문화의 유무형 유산, 다양한 문화적 표현 양식, 토착적, 지역적, 주류 신앙전통의 환경윤리 등을 유지 및 재활성화하는데 자연성지의 역할을 인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성지의 전통적 관리가 쇠퇴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공동체의 전통과 단절되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연성지들은 공동체 가치와 전통의 재활성화에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관리주체들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경우, 자연성지의 관리와 문화의 지속 모두를 더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일부 문화권에 대한 억압이 해소된 이후 자연과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경우도 있다(사례연구 8).

문화 재활성화(cultural renewal)에 있어 특히 큰 중요성을 갖는 활동은 원주민의 자체적 교육체계의 지원으로서, 이에 있어 자연성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는 원주민이 스스로 교육체계를 확립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타 맥락에서 보더라도 지역공동체들이 문화, 자연, 자연성지에 대한 전통 공동체 지식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데에 교육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rjen Khamaganova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 모국어인 부르야트 어(Buryat)에서는 교육을 “Khumuuzhlekhe”라고 부르며, 이는 인간을 뜻하는 “Kkun”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부르야트 어의 교육을 뜻하는 단어에는 그것이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우리 문화에서 인간이란 세계와 그를 이루는 사건, 현상, 행동의 복잡한 상호연관성과 상호연결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례연구 8: 중국 산시 타이바이산 국립자연보존지구의 도교 생태사원

중국 산시성의 타이바이산(Taibai Shan)은 친링산맥(Qinling Range)의 중심부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다. 이 산은 위기종인 대왕판다(Giant Panda)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은행나무, 희귀 펑, 도룡뇽, 원숭이 종 등도 보호하고 있는 보호지역 네트워크 중 타이바이산 국립자연보전지역(Taibai Shan National Nature Reserve) 내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다른 보호지역에는 저우즈 국립자연보전지역(Zhouzhi National Nature Reserve), 라오신청 자연보전지역(Laoxincheng Nature Reserve), 시안 헤이허 산림공원(Xi'an Heihe Forest Park) 등이 있다.

친링산맥 전체는 중국의 수 많은 도교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신성시되며, 해마다 1백만 명에 이르는 방문자들이 신앙적 이유 뿐 아니라 이곳의 뛰어난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도 찾아오고 있다. WWF-China의 지원 하에 대왕판다를 위한 보전 노력이 개시된 2003년에는 행동적 변화와 인식개선을 유도할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 형태의 보전 노력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 보전계획에서는 수 세기동안 이 산지의 생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여전히 수 많은 방문자들에게 유효한 도교적, 불교적

⁴⁸ 2003년에는 약 102,000개의 보호지역이 있었고, 인도에만 대부분규모가 작은 성립이 150~200,000개 소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호지역의 면적은 18.8백만 km²(Chape et al., 2003)이며, 자연성지의 면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두 영역의 면적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으리라 예상된다.

⁴⁹ Khamaganova, 2007

입장과 관행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성산들은 매우 구체적인 문화적, 종교적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측면에서 성산에 대한 생태적 이해의 양상을 결정짓는다. 1990년대 중반에 중국 도교협회(Daoist Association of China)가 ARC와 함께 수행한 중국 내 5개 성산에 대한 조사에서는 도교 수도승이 거주하는 산지의 환경이 더 잘 보호받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도교는 생태학에 대해 “도교는 다양한 생물종의 숫자를 통해 한 사회가 보유한 풍족함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가치체계를 가진다. 우주의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있을 경우, 그 사회는 풍족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왕국은 쇠퇴하는 것이다.”⁵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도교는 한 사회의 부를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생태적 풍부성을 통해 측정한다.

타이바이산에서 도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보전활동들은 첫째, 친링산맥의 신성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그 핵에 두었고, 둘째, 문화혁명 중파괴되었던 도교신전을 생태교육센터로서 기능하도록 복원하였으며, 셋째,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 구상을 친링산맥의 다른 성산들에까지 확대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두번째 단계는 2007년 6월 중국 최초의 종교적 생태교육센터(ecological traning centre)가 개설되면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⁵¹ 타이바이산 티에지아 도교 생태사원(Taibaishan Tiejia Daoist Ecology Temple)은 도교 신도들에게 수 천년간 중요시되었고 지금까지도 방문자는 유치하고 있는 사원의 유적지에 건설되었다. 이 현장은 신성한 나무와 WWF 방문자 센터에 인접해 있다.

도교 생태사원의 개설 이후 도교와 환경보전에 대해 탐구한 두번째 워크샵이 이어졌다. 이의 참여자에는 18개 사원의 도교 수도자들과 수녀, 공원 관리인력, 환경보전 단체의 대표들 등이 포함되었다. 이곳에서 생태교육을 위한 도교사원연합(Daoist Temple Alliance on Ecology Education)이 결성되면서, 이상의 보전노력을 타이바이산 외부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의 첫 단계들이 취해졌다. 이 연합이 시행할 활동으로 제안된 것에는 사원의 토지 이용 및 관리 행태를 주변지역의 생태와 보호 내로 통합시키고, 도교 생태교육 편람(Daoist Ecology Education handbook)을 저술하는 것 등이 있었다.

출처: Dudley *et al.*, 2005; ARC website: <http://www.arcworld.org/projects.asp?projectID=257>; and Xiaoxin, 2007.

존재를 의미합니다. 부르야트 문화의 성지들은 이러한 상호연관성이 체현된 장소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거듭나고 끝없는 전체성의 일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교육적 도구”이기도 합니다.”⁴⁹

가이드라인 4.8 문화 간 대화

자연성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여 상호이해, 존중, 관용, 화해, 평화 등의 신장을 도모한다.

자연성지는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상호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일부 사례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관리주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평화롭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데(사례연구 11, 스리파다-아담 스피크),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관리기관들은 이러한 집합적 협력

관계를 지지 및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문화 간 대화와 이해를 위한 교량들을 조성하는 동시에 관용, 협조, 화해, 평화 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그 인력들이 기존의 긴장국면을 악화시킨 사례들도 존재하며, 이와 같은 사태는 당연스럽게도 최대한 회피되어야 한다.

자연성지를 통한 문화 간 대화의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상호적 배움과 “양방향적” 활동
(사례연구 15, 디무루 IPA)
- 공동 행사 및 축제
- 공동 연구 및 다양한 지식습득 방식의 탐구
- 옛날의 원 지명의 인식 및 사용을 통해 그 중요성과 의미를 복원

상당수 자연성지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그에 따라 갈등의 초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갈등을

⁵⁰ China Daoist Association, Beijing, China in Palmer and Finlay, 2003

⁵¹ Xiaoxin, 2007

사례연구 9. 세계무형유산과 말라위의 츄와(Chewa) 성림

2005년에는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의 위대한 춤(Great Dance)인 굴레 왈쿨루(Gule Wamkulu)가 UNESCO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지정되었다. 굴레 왈kul루는 츄와 성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형유산과 자연성지 간의 직접적인 연계고리를 제시한다.

“굴레 왈kul루는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에 거주하는 츄와 민족의 비밀종교집단이자 이들이 행하는 의식적 춤이기도 하다. 이 춤은 청년들에게 성인식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나우 형제단(Nyau brotherhood)이 행하며, 성인식의 마지막에 구레 왈kul루가 춤쳐서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였음을 축복한다.

나우의 무용수들은 나무와 짚으로 만든 특별한 의상과 가면을 쓰는데, 이 의상은 야생동물, 죽은 자의 영혼, 노예상인으로부터, 현대의 훈다(Honda)나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나타낸다. 이 각각의 캐릭터는 관객들에게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특정한 비행 행위를 상징하는 악한 존재를 묘사한다. 오늘날에는 츄와 족의 모계사회 체제가 붕괴되었지만, 나우 조직과 굴레 왈kul루의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큰 상태이며, 따라서 츄와 족 남성들은 기독교의 교회와 나우 단체에 동시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⁵²

츄와 성림은 자연적이고 교란되지 않은 식생이 분포하는 작은 지역으로서, 집약적 농업 등의 변형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성림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는 토착종 수목들의 주 서식지가 되며, 그 중 상당수는 소수의 잔존하는 산림 생물다양성의 은신처들로서 기능한다. 지역적으로 “묘지산림(Graveyard Forests)”으로 알려진 이들 성림들은 묘지와 가면마당(mask yard)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츄와 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묘지에 매장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곳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장례식이 이루어질 때 뿐이다. 나머지 시기에는 성인식을 거친 나우 단체의 남성 구성원들만이 이 성림에 출입할 수 있다. 가면마당에서는 나우 단체 구성원이 가면을 제작하고 굴레 왈kul루 춤을 연습한다. 이 무용수들과 가면은 중요한 행사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사진 참조).

전통사회의 지도자들과 굴레 왈kul루는 갈수록 보건부 등의 부처들과 일차보건의료 관련 메세지의 홍보 등을 위해 갈수록 크게 협력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부 역시 참여적 임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이와 유사한 구상을 검토 중이다. 특히 말라위 남부의 산림 보전지역 대부분은 묘지산림과 대비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며, 묘지산림 역시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묘지산림이 관을 위한 목재의 출처로 쓰이는데, AIDS 유행으로 인해 관을 위한 목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DS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성에 대한 태도와 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있어서 전통사회의 지도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⁵³ 전통적 갈대 관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성림에 대한 압력의 일부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는, 말라위의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식량위기, 환경파괴, HIV/AIDS 위기 등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 전통들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굴레 왈kul루 등 이들 전통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백인 신부회(White Fathers)의 무아 미션(Mua Mission)과 가톨릭 교회의 문화적 토착화(inculturation) 정책에 의해 크게 지원받아서 확보될 수 있었다.⁵⁴ 말라위 데즈다 지구에 소재한 무아 미션에서는 응고니 예술센터(Ngoni Arts Centre)가 전통 예술과 공예를 홍보하고 있으며, 그 박물관에는 400여 점 이상의 전통 가면들이 전시되어 있다. 응고니 예술센터는 또한 활발히 활동하는 무용단체를 조직하여 전통무용을 공연하고 개발업자 인력 및 보건, 교육 사업 관려 인력을 위한 문화의식 강연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조직은 또한 전통적, 기독교적 모티프를 모두 사용하는 뛰어난 목각가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며, 그 덕분에 이들 중 일부의 작품들은 바티칸 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수집되고 있다. 무아 미션의 성과들은 이 지역에서 아프리카 전통종교와 기독교의 상호이해를 상당히 진전시켰으며, 굴레 왈kul루가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저자: Wiid. 무아 마을 촌장, 나우 단체 구성원/굴레 무용수, 무아의 백인 신부회 감독관 Father Claude Boucher Chisale와의 인터뷰 기반

⁵² Adapted from UNESCO http://www.unesco.org/culture/intangible-heritage/22afr_uk.htm

⁵³ Bryceson and Fonseca, 2005.

⁵⁴ Ott, 2000; Boucher, 2002a and b.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간 대화, 이해와 관용, 협력, 화해, 평화 구축의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가이드라인 3.5).

[제5원칙] 적절한 관리접근성과 가용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성지 보호

가이드라인 5.1 접근성과 가용성

자연성지가 공식지정된 보호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전통 관리주체에 의한 접근성과 가용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절한 정책, 규준을 개발한다.

자연성지들이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 내에 포함된 경우, 전통적 관리주체들이 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관행이 필요하다. 특히 의식을 행하고 개별 현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접근성의 보장이 중요하다. 일부 경우에는 보호지역 내에 포함된 자연성지의 관리주체들이 보호지역 관리인력의 순찰을 피하여 불법적으로 자신의

성지를 방문하여야 했던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 다른 경우에는 관리주체들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강요받거나 자신들의 자연성지에 출입하기 위해 입장료를 내도록 요구받기도 하였다.

방문자들에게 입장료를 요구하는 보호지역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상당한 요금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이 이미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주체 및 전통문화 계승자들이 자연성지를 방문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연성지와 연관된 상당수 종교관행은 비밀성, 고요, 침묵 등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 의식의 실천자를 방해할 경우 중요한 의식이나 수년에 걸친 종교적 노력이 교란될 수도 있다. 보호지역에 대한 여가적 압력의 증가와 자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에 의해 관리주체의 비밀성 유지 필요성과 외부 방문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범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러한 갈등은 관리주체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례연구 10. 콜롬비아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의 카산크와에서 성지를 복원하고 원주민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원주민의 노력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Sierra Nevada de Santa Marta)의 카산크와(Ka'sankwa) 원주민은 시에라의 집약적 정착촌들이 위치한 해안가 저지대 지역의 4개 성지에 대한 환경적, 문화적, 영적인 회복, 재활, 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릴라와 불법무장단체의 활동, 대규모 바나나 및 기름야자수 농장, 산림훼손, 토지용도 변화, 대형 개발사업, 빙하 후퇴, 하천 건조 등의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이들은 전반적인 사회생태적 체계의 생태적, 영적 균형을 회복하고, 문화전통을 강화하며, 원주민의 영적 지도기관인 마모스(Mamos)의 영적, 사회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의 카산크와는 대산괴이자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해안가 봉우리이기도 하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5,775m(18,942ft)로서, 그 면적은 12,000km²에 달한다. 카산크와의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과 빙하는 29개의 하천의 원류가 되며, 그로부터 저지대의 생산성이 높은 농지와 그곳의 산타 마르타(Santa Marta), 리오아차(Riohacha), 바예두파르(Valledupar) 등에 거주하는 1,000,000명의 시민, 그리고 카리브 해에까지 물을 공급한다. 카산크와의 고산지는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 국립공원과 타이로나(Tayrona) 국립공원 등 2개 국립공원과 3개의 원주민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 전체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시에라네바다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고유성, 다양성이 큰 동시에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테이퍼(Tapir), 마자마 사슴(Red Brocket deer), 짖는원숭이(howler monkey) 등은 재규어, 퓨마, 살쾡이(Little spotted cat) 등의 고양이과 동물과 함께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120개의 포유류 종에 포함된다. 이 국립공원은 또한 46종의 양서류와 파충류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며, 개중 해발고도 3,000m(9,900ft) 이상의 고지대에 서식하는 종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하여 지구 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 국립공원에서만 628개의 조류종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35,000명의 코구이(Kogui), 아르획(Arhwac), 위와(Wiwa), 칸쿠아모(Kankuamo) 족 원주민은 모두 타이로나 문명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타이로나 전통을 계승한 관리주체로서, 그들의 선조가 살던 곳인 카산크와를 어머니의 법(Law of the Mother)에 근거한 문화적, 영적 “사업”을 통해 관리하여 왔다. 이 “사업”들에는 의식, 공물봉헌 등이 포함되며, 성지들의 네트워크에서 마모스 사제 계층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현장들은 타이로나의 전통적 영토 전체에 걸쳐 분포해 있으며, 그 중요도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 있고, 그에 따라 일부는 고지대에, 다른 일부는 중지대, 그리고 나머지는 저지대와 해안에 소재해 있다. 지구의 탄생에 대한 이 원주민들의 설화는 태초에 시에라 인근지역이 중심부에 높은 산이 놓여 있고, 물의 순환이 끝나는 바다까지 이어지는 “검은선”이라는 경계로 둘러싸인 영토였다고 전한다. 이 영토는 세상의 중심으로서, 자연의 물, 토지, 성지들을 통해 생존하고 그를 보살펴야 하는 어머니 자연의 어린이들을 위한 거처로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 성지들의 일부는 칸사마리아(Cansamaria)라고 불리는 장소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마모스가 이 영토 및 전통문화의 유지와, 해당 성지와 시에라 중심부 사이의 영적 힘의 순환을 지속시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유, 교육, 의식 등을 행한다.

사례연구 10. 콜롬비아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의 카산크와에서 성지를 복원하고 원주민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원주민의 노력(계속)

서구 세계와 최초 접촉 순간 이후 원주민공동체는 자신들의 영토, 성지, 매장지와 선조들의 관습이 끝없이 악탈 및 파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끝까지 생존하는 데에 성공한 4개 부족은 각기 다른 정도로 문화접변(acculturation)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원주민공동체 외부의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소수 집단이 타이로나 마모스와 그 원주민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단히 풍부한 철학적, 생태적, 영적 지식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카산크와 유역에서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가치를 갖는다. 원주민이 행하던 천연자원 관리의 기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식민시대의 원주민의 지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마모스들은 카산크와 전체에 걸친 성지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지대와 저지대 성지 중 그 어느 곳도 원주민의 책임관리 하에 놓여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성지의 상당수는 훼손되거나, 신성이 파괴되거나, 다른 집단의 소유 하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수 년간 시에라의 중지대, 저지대에서 게릴라와 불법무장단체 간의 점점 극심해지는 갈등은 공동체의 생계를 심각하게 제약하였을 뿐 아니라 마모스들이 그나마 수행하고 있던 성지에서 종교적 관행과 제한적 관리에 마저 중대한 교란을 가하였다.

마모스들은 이제 각 공동체 별로 하나씩 총 4개의 성지를 회복하여 각각에 2개씩의 칸사마리아를(남녀 각각 하나씩)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 자연과의 관계와 영적, 사회적 법에 대한 지식과 기억의 보유자이자 수호자인 마모스들은 계속하여 자신들이 계승, 보호하고 있는 전통을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모스들은 또한 비원주민공동체로도 손길을 뻗어 상호적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고,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의 카산크와에 대한 그들의 심오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하고 있기도 하다.

원주민공동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절차의 첫 단계는 자신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성지에 대해 문화적, 생태적 조사를 하여 연계고리, 접점 등을 확보하고, 현재 소유주들과 상호이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의 목표는 4개의 자연성지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될 것이다.

마모스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고 보았을 때, 4곳의 저지대 성지를 재획립하는 사업은 시에라 내의 원주민족의 물리적, 영적 생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업은 이 지역 원주민들이 선조의 땅에서 영구히 자신의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시에라에 거주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의존하는 수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호 또한 보장하게 될 것이다.

저자: Guillermo E. Rodriguez-Navarro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성지의 비밀성 유지와 전통적 의식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연성지 내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정기적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5.2 방문자에 의한 압력요인

방문자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요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성지에 대한 방문자 접근에 대하여 적절한 정책, 규칙, 행동수칙, 시설, 관행 등을 개발하면서 성지순례와 계절적 사용 수준 변동으로 인한 압력요인을 특별히 고려한다.

상당수 자연성지는 높은 방문자 압력에 처한다. 이는 성지의 신성성, 경관적 가치, 풍경의 미관, 여가적 가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현장은 연중 일정한 방문자 압력에 처해 있는 데에

반해, 축제나 성지순례 기간 동안은 관리체제의 일시적 변화를 필요로 할 경우도 있다(사례연구 11 참조). 현장의 신성한 가치에 초점을 맞춘 성지순례는 수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성지순례의 성격 변화, 순례객의 총 숫자 증가, 성지가 대변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의 확산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일부 경우에는 성지의 관리주체의 실 거주지가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관리 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는 멕시코 치와와 사막의 위리쿠타 자연성지(Wirikuta Sacred Natural Site)로서, 전통적으로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후이콜 족(Huichol)은 135km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⁵⁵

마찬가지로 일부 자연성지는 접근성의 제한과 함께 방문의 최소화나 완전 금지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런

⁵⁵ Otegui, 2003.

사례연구 11. 스리랑카 스리파다–아담스피크의 다중신앙 수용

스리파다(Sri Pada) 또는 아담스피크(Adams Peak)라고 불리는 산지는 수백만 명의 인구에 물을 공급하는 여러 하천들의 유역을 이루고 있으며, 고도의 생물다양성과 야생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곳은 스리랑카의 문화경관의 지주이자 세계유산 지정지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이 지역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에서 신성시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 산지의 야생산림(wilderness forest) 가장자리에는 수천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이 산림이 제공하는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이 외에도 해마다 3백만여 명이 “폐하(Excellency)”라는 왕실 존칭으로 불리며 살아있다고 믿어지는 신적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산을 오른다. 이 산지의 신성성은 정상의 암석들에 새겨져 있는 성스러운 발자국인 스리파다(Sri Pada)에 집중되어 있다. 각 공동체는 이 스리파다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 발자국이 봇다가 스리랑카를 세번째로 방문했을 때(577BC) 남긴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봇다가 이 산을 보호하는 정령인 수마나 사만(Sumana Saman)을 만났고, 이후 이 정령이 봇다의 성스러운 흔적을 보호하여 왔다고 한다. 힌두교에서는 이 발자국이 세계를 창조한 시바신의 춤의 흔적이라고 믿는다. 반면 이슬람교에서는 이 발자국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속죄의 의미로 이 자리에서 1천년간 한 발로 서 있던 아담이 남긴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도들은 이 발자국이 스리랑카에 기독교를 도입시킨 성 토마스가 남긴 것이라고 믿는다.

원뿔형의 스리파다 봉우리는 해발고도 2,243m(7,360ft) 높이로 솟아 있으며, 이 섬의 중앙 대산고에서 가장 눈에 띠는 요소이다. 높이 솟은 이곳의 위치와 그 정상의 성스러운 발자국은 이 봉우리의 깊은 영성을 강화시킨다. 정상을 둘러싸고는 사만날라–마아비야(Samanala–Adaviya)라고 불리는 산림 야생지(224km²)가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이 산림이 그 풍부성으로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고, 기후를 조정하며, 토양과 물을 보충하는 살아있는 “폐하”로서 숭배된다. 이 산지로부터 하천으로 흘러드는 물은 정화된 “성수”로 여겨진다.

이 산지의 가장자리에는 불교 사원들의 망이 형성되어 있어 순례자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 속의 동굴에는 수도승이 거주하며 명상한다. 산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동체들은 이 사원들과도 연관을 맺으면서 식량, 건축, 섬유 및 도구 제작 등을 위해 이 산림의 자원에 의존한다. 이 산림에서는 640여 종 이상의 약초가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이 산에 대한 존경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산에 감사의 기도를 한다. 산림의 사용에 대한 규칙들은 강한 사회적 기반에 근간하여 확실하게 강자되고 있어, 순례 또는 산림자원의 채집을 위해 신성지역을 출입하기 이전에는 사전허락을 구하여야 한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산림에 대한 파괴, 과잉개발, 낭비성 채집 등 행태는 수마나 사만을 노하게 하여 길을 잃거나, 부상,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모든 자원은 존중심을 바탕으로 사용되고, 수확과 순례를 위한 계절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민감한 장소들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자원의 채집은 심도 깊은 전통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공동체에서 가장 얇이 깊고 경험이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젊은 세대의 구성원은 원로들을 따르면서 선조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도록 지시받는다.

56년간 산림의 암석동굴에 살면서 산림자원으로만 생활하였던 한 지역주민은 이 산림에 대한 자신의 전체론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시리파 아다비야는 모든 조작적 체계들에 비해 우월하며 위대한 힘들로 가득하다. 이 산림은 주관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이 산림은 거대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수 천 종의 동·식물을 위한 다양한 서식지들을 생성해 내었다. 폐하께서는 다양한 생명들을 육성하고 지형 전체에 걸쳐 다양성을 유지하며, 식량, 물, 거처를 마련하고, 계절마다 새로이 자원을 재생하고, 모든 생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을 유지한다. 그 우월성은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산 산림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시켜왔으며, 그 안의 모든 동·식물은 어떤 식으로든 유용성을 갖고 있다.”

성지순례는 12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전통적으로 이 이외의 달에는 누구도 이 산을 오를 수 없다. 지역 주민들과 달리 순례객은 산림으로부터 어떠한 자원이나 동·식물도 가져갈 수 없다. 순례객들은 오래전부터 확립된 순례의 규칙을 따르도록 맹세를 하고, 산을 오르기 전 성수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육식을 피하고, 산을 오르면서 성가를 부른다.

스리랑카의 다른 산림과 마찬가지로 아담스피크도 국유지로서 편입되어 있음은 오래 전부터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산림은 위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로 여겨지며, 고대의 왕들에 의해 명상을 위한 불교 신자의 정착지로 기증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스리파다의 공동체들은 산림 야생지의 다양한 지역을 위한 책임관리자(steward)로서 기능하며, 동시에 정상까지의 순례로를 정립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940년 이후에 이 지역은 야생생물 보전부(Department of Wildlife Conservation)의 법적 권한 하에 높이게 되었으며, 산림과 주변 지역 문화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법적 소유권과 전통적 관계 사이의 갈등이 조절될 수 있었다. 문화는 주변적 사안이 아니라 자연보전에 있어 중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화는 보전조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며 문화적 가치들은 고립된 특정한 문화적 장소에서만 받아들여져 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전과제 중 하나는 전통적 관리주체들과 그들의 영토와 문화, 그리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현지의 도구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스리랑카는 자연과 야생성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방식으로 산림의 신성성을 다룰 수 있기 위한 적정기제는 아직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연구 11. 스리랑카 스리파다-아담스피크의 다중신앙 수용(계속)

스리파다-아담스피크는 전통문화권 인구가 법적 제도와 정책적 개입에 의지하지 않고도 신성한 산지 산림을 보호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러한 성과는 스리랑카 전체에 걸쳐 지난 130년간 광범위한 산림 손실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사례는 또한 서로 다른 영적 전통을 갖고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어떻게 동일한 자연성지를 사용 및 신성시함에 있어 서로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전설과 신앙들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모든 집단을 함께 받아들이고 집합적, 조화적인 방식으로 이곳의 신성한 발자국을 보호 및 승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Wickramsinghe, 2003, 2005

경우 관리주체의 희망에 맞추어 방문과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확립되어야 한다. 일부 관리주체에게 자연성지의 “휴식 상태”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사례연구 5, 카야).

가이드라인 5.3 대화와 존중

관련있는 전통종교, 지역사회 지도자, 텁방객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보호지역 규제와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공공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성지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통제한다.

외부인 방문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중 상당수는 자연성지에서는 문화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예시에는 신성한 산지 또는 기암괴석의 등반, 신성한 동굴 또는 산림의 출입, 신성한 하천, 호수, 샘에서의 목욕, 전통문화 계승인들의 허가 없이 신성한 의식에의 참여, 신성한 동물의 사냥, 화장재의 산골, “뉴에이지”풍 공물을 남기는 행위, 사전허락 또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준비 없이 신성지역에의 출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자연성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관리주체와 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관리주체가 성지를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도입될 수 있다. 그 예로는 수용 가능한 행동양식에 대한 방문자 교육, 성지구획, 방문자들이 민감지역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이동로의 확립, 이러한 부적절한 활동을 명시하는 관련규정의 개발(이들은 가이드라인 2.4, 2.5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등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한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사용자 간 대화를 통해 관리되어 타협과 상호존중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와 존중을 증진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텁방객들은 일단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인식하고 나면 성지에서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관리주체의 희망을 존중하려고 한다. 다만 끝까지 관리주체의 희망을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가이드라인 5.4 관광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은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지만, 이러한 관광활동은 문화적으로 적정하여야 하고,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리주체 공동체의 가치체계를 주도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가 소유 및 운영하는 관광산업을 지원하되, 해당 공동체가 환경적,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왔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관광업은 공동체에게 대안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맥락 속에서 자연성지들은 공동체의 소득과 생계 증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생태관광업은 생태자원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데에도 방점을 두고, 나아가 존중적, 저영향력 방문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상적인 모델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성지와 관련한 생태관광은 잘 시행되고 윤리적인 원칙에 근거한 가이드라인들로 관리될 경우, 주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원주민과 지역주민의 가치체계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은 오늘날 지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 중 가장 규모가 큰 축에 속하게 되었으며, 성지 등의 “특별한 장소”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수요는 매 년 증가하고 있다. 많은 경우 자연성지는 다수의 방문자 유입에 대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상당수 국가에서 주류신앙의 성지는 다수의 방문자를 수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연성지에 대한 관심의 재개는 해당 장소에 대한 방문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방문자의 수는 매우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 사업은 항상 지역 관리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참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가이드라인 5.5).

현 시점에서 관광업과 자연성지에 대한 배움과 정보 공유는 특히 관광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필요하다.

예를들어 관광 안내책자 등의 정보자료와 관광안내인, 지도자들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행동, 제한, 금기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안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예시에는 성산을 등반하거나 등반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성림을 출입할 때 적절한 복장과 행동, 그리고 의식의 중간에 사진을 찍지 말아야 할 때 등이 있을 수 있다.

관광활동이 관리주체와 그 공동체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될 경우, 해당 공동체가 지역적, 토착적, 주류적 전통 중 어느 쪽에 속하든 해당 관광업이 공동체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그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성지의 생물학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함에 있어 긍정적인 강화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가나의 성림에 대한 연구에서는 관리주체인 공동체가 관광을 관리하고 혜택을 수혜받는 주민들이 정부에 의해 관광업이 관리되고 공동체 수준에서는 그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는 성림의 공동체의 경우에 비해 위기종 원숭이들의 보전에 훨씬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이기도 하였다.⁵⁶

가이드라인 5.5 의사결정 통제력

자연성지의 관리주체가 관광활동 등 자연성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지역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와 기타 압력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 균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자연성지는 탐방객에게 큰 매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자연성지가 연간 수백만 명의 탐방객을 유치하는 국제적 아이콘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광업이 탐방객이 경험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가치들을 훼손시키는 경우 또한 많다. 관광업이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비한 효과적 관리의 확보는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관광업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력은 미묘한 수준의 것에서부터 대단히 깊은 경우까지 다양하다. 자연성지의 경우에는 민화적 민감성과 잠재적 위험성이 큰 편이고, 따라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관광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자연성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당수 경우에는 자연성지의 전통적 관리주체들이 성지의 온전성이 인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를 통제할 수 있기 위해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하였다.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를 올바르게 적용할 경우, 관광업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카테고리 I 보호지역은 제한적이거나 낮은 수준의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지정되며, 따라서 거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성지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단 특정 장소가 관광객의 관심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규정이 개발되고 방문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된 최근의 규정에는 행동양식, 복장, 사진촬영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성지이든 세속적인 장소이든 장소에 따라 사진촬영을 제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반면 더 드물지만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의 종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울루루(Uluru; Ayers Rock)의 전통적 보호주체인 아낭구족(Anangu)들은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 내의 많은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다(사례연구 12, 부록 2). 이들은 방문자들이 에어즈락 전체의 사진을 촬영하기를 요청하고, 공원 관리인력은 이 성스러운 암석의 이미지를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모든 상업적 제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한다.

자연성을 구획하는 것 역시 관광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가이드라인 2.5).

관리주체들이 공동체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적극적으로 관광활동을 개시하고자 시도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조심스럽게 시행될 경우 이 역시 유익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사례연구 12. 호주 울루루-카타추타에서의 문화 존중

호주의 극적인 붉은색 돌 기둥인 울루루(Uluru)와 그 인근의 카타추타(Kata Tjuta)는 신양체계가 사막의 경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아낭구(Anangu) 애보리지니 족에게 중대한 영적 중요성을 가진다. 유럽 탐사가들에 의해 “에어스 락(Ayers Rock)”, “마운트 올가(Mount Olga)” 등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이후 호주 정부에 의해 자연보전과 관광개발이 추진되기도 하였던 울루루와 카타추타는 1985년에 아낭구족의 소유로 반환되었으며, 330,000 에이커 면적의 국립공원 및 세계유산 지정지에 포함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호주 공원 관리청(Parks Australia)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울루루 인근의 신성한 장소 중 상당수는 관광객, 사진가 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상당수 관광객은 암석을 등반하기 위해 이곳을 찾지만, 이러한 등반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교육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국립공원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아낭구인은 등반로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문자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이해심을 발휘하여 등반하지 않기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사진촬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⁵⁶ Ornsby, 2007.

사례연구 12. 호주 울루루-카타츄타에서의 문화 존중(계속)

아낭구인은 성지의 모습이 활용 또는 전시될 경우, 또는 국립공원이 그 자연적, 문화적 가치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해, 향유 수준을 신장시키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문화가 타락한다고 여긴다.

울루루는 아낭구인에게 상당한 영성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울루루 자체 역시 수 많은 민감한 장소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방문자들은 모두 본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이러한 장소가 아낭구인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 1(부록 2)은 녹화, 촬영, 작화 등이 금지된 울루루 내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대부분에는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개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구분되거나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아낭구족은 국립공원의 관리 이사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공원 관리원과 문화적 통역가 등으로도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국립공원의 영적, 문화적, 생태적 온전성을 보존하고, 자신의 권리와 지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전통적 문화법인 츄쿠파(tjukurpa)에 기반한 관리관행을 확립하기도 하였다.

이 현장의 애보리지니에게로의 소유권 반환, 애보리지니들의 명칭 사용, 아낭구족이 울루루와 카타츄타에 대해 부여하는 신성한 가치의 존중 등은 관광수입 일부의 공유, 애보리지니 소유의 관광사업 운영 등의 조치와 함께 중대한 진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울루루 인근의 3개 애보리지니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의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를 구성하고 있다.(세부내용은 부록 2 참조)

출처: <http://www.environment.gov.au/parks/uluru/vis-info/permits-image.html>

(사례연구 5, 카야 참조) 자연성지와 그 관련 문화권에 대한 방문자들의 관심은 성지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5.6 문화적 사용

지속가능한 사용을 담보하는 선에서, 자연성지 내에 서식하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자원의 채취 및 사용에 과도한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 관련 결정은 공동 자원평가 및 합의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내리도록 한다.

생태자원 산출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환경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자연성지와 그를 둘러싸는 보호지역 내에서는 제례의식 등 목적으로 동·식물 종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당수 전통적인 신앙체계는 다양한 사유로 동·식물종의 채취를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에는 휘장, 공물, 축제, 신성한 구조물, 의식 중 식용 등으로 사용 용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일부 경우에 이러한 동·식물은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종일 수도 있으며, 이는 상당한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호주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디무루 IPA(Dhimurru IPA)에서는 공동체에 의해 신성시되는 위기종 쥬공, 바다거북, 해양포유류 등을 식용 목적으로 사냥하고 있다. 이 경우 쥬공과 바다거북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은 공동체가 아닌 다른 집단들이 제공하고 있다. 디무루 토지 관리 회사(Dhimurru Land Management Corporation)는 이러한 생물종에 대한 지속가능한 채취 규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동체 전반에 걸쳐 동물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휘장을 위해 특정 생물종을 사냥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인근의 여가용 사냥터에서는 관광객이 바로 그 동일한 생물종을 사냥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악감정이 조성되고 있기도 하다. 동·식물의 채취 전통은 보호지역 관리자와 지역공동체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동·식물종의 선별적, 지속가능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기 위한 장치들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자원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갈수록 참여적 방법론들을 활용한 평가도구들이 각광받고 있다.⁵⁷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의 생물종 사용은 과잉착취로 이어지기가 쉬우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원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물자원의 선별적 사용이 생태계 전반에 가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피하는 데에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며, 해당지역의 특별한 특성들을 유지시키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생물종의 선별적 사용을 위한 기제들이 성공적, 지속가능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들은 보호지역 관리자와 지역공동체들 간 신뢰와 혁신의 구축에 기여하고, 보호지역들에서 일반적으로 갈등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원 자원의 선별적 사용 관련 내용은 상당수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지역공동체 간 자원사용 합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⁵⁸

가이드라인 5.7 보호

남용, 오염원, 자연재해, 기후변화의 영향력, 그리고 손괴나 절도와 같은 사회적 위협요인을 파악, 연구, 관리, 경감시킴으로써 자연성지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도록

⁵⁷ E.g. for plants by People and Plants International; see Annex 8.

⁵⁸ For example see Wild and Mutebi, 1996.

한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 인위적 사태에 대한 재난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모든 자연성지는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구체적인 어려움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용도 변화, 인구학적 압력 증가, 빙곤 및 생계상의 필요 등이 주요 위협요인이다. 이 외에도 젊은 세대가 지역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등 가치체계에의 변화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과 그와 연관된 성지에 대한 관심이 정기적으로 부흥기를 맞기도 한다. 일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의 일부 구성요소가 민속적, 종교적 이유로 자연성지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 손괴를 가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의식의 의도적인 방해, 신성한 나무의 의도적인 벌채, 신성한 동물의 의도적인 사냥, 성산의 의도적인 등반, 의식용구의 의도적인 훼손,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당수 자연성지는 위협에 처해 있다. 이들은 불법벌채, 밀렵, 개발산업 활동의 영향력, 댐과 도로의 건설, 성지와 관련한 매장지와 고고학적 유적지의 도굴, 외부인에 의한 침범, 성지에 대한 존중 없이 이루어지는 관광, 인접지역 환경의 파괴, 전통문화권 인구의 가용 토지 및 자원 감소 등 다양한 외부적, 내부적 압력 및 위협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환경변화는 자연성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 훼손을 가할 수도 있고(예: Mount Athos, Greece, Kakouros, 2008), 반면 잘 관리되는 경우에는 유익할 수도 있는(예: Uluru, Calma 2005) 산불 등의 사안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보호지역에서 자연성지에 대한 상황분석을 수행하여 그 상황과 처한 위협들을 기록할 것이 권장된다(부록 1 요약 관련 상자 9 참조). 이러한 상황분석에는 자연적, 인위적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치 있는 유물이 발견된 성지들에서는 해당 유물에 대한 현지민의 존중과 신뢰 정도가 변화하거나 외부 영향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보호와 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에 대해 위협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자연성지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서식지들의 파편인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전략의 구성요소를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의 자연성지에 대한 영향력은 연구주제로서 갈수록 중요성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완화조치 중 하나는 취약한 생물종의 목록을 작성한 후 관리주체 공동체들과의 협력 하에 가장 취약한 생물종의 일부에 대해 현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력의

상자 9: 과테말라에서의 자연성지 관리계획

국제자연보전협회(TNC: The Nature Conservancy)의 과테말라 프로그램(Guatemala Program)에서는 보전지역 계획 방법론(Conservation Area Planning Methodology)을 개발하여 자연성지를 포함한 보호지역 내의 자연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TNC에서는 서부 과테말라의 고원에 위치한 아티틀란 분수령 다용도지역(Atitlán Watershed Multiple Use Area)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아티틀란의 성지들에서 파악된 주요 훼손 효과는 경관훼손, 접근성 제한, 전통지식 및 문화의 전반적 손실 등이었다. 파악된 주요 성지 훼손 원인은 산림 훼손, 산림산불,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관광에 대한 불충분한 관리 등이었다.”

이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생물다양성, 문화자원, 자연성지에 대한 핵심적 위협요인들의 경감을 위해 가장 실현성이 큰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테말라 아티틀란 지역에서 수행된 계획과정 중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개발되었다:

- 전통지식의 연구, 체계화, 보급
- 원주민 지역 내 정부, 비정부기구, 민간기업 인력의 문화적 민감성을 강화
- 마야인 영적 안내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신장시키고, 성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집을 마련
- 보호지역의 신성성은 그에 대한 법령, 관리계획 번역본, 흥보자료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대중이 해당 장소가 지역공동체에 의해 신성시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를 존중하여야 한다.
- 성지를 포함하는 보호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 영적 안내인(주술인)들의 참여를 강화. 다음의 방식을 권장한다:
 - 영적 안내인을 일반적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과의 특수한 심화적, 소규모 회의를 조직
 - 더 좋은 방법은 현지의 영적 관리주체에게 자체적인 회의와 분석기제에 성지의 보호를 특별주제로 포함하도록 요청
 - 이들을 보호지역 관리와 관련한 공식기관에 참여하도록 함

본 계획 및 평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 참조.

출처: Secaira and Molina, The Nature Conservancy, Guatemala, 2003.

집중과 상당한 자원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이 다른 방법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일 수 있다.

가이드라인 5.8 신성모독과 재신성화

자연성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성모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정한 선에서 훼손된 자연성지의 회복, 재생, 재신성화를 촉진한다.

자연성지에 대한 파괴와 신성모독(desecration) 행위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훼손의 정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 성지들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분명하다.

성지들은 용도 간 경쟁, 권력투쟁, 자원에 의한 압력, 문화적 중요성 감소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훼손된다(인도의 성림의 손실 원인이 요약된 상자 1 참조). 따라서 자연성지에 대한 다양한 압력요인을 더 잘 이해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관리주체의 동의 하에 위협받고 있는 성지에 대한 국가 별 목록을 작성하게 될 경우 이 위협에 대한 관심을 신장시키고 보호와 회복을 향한 행동의 실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자연성지가 훼손된 이후 재신성화(re-sanctification)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몽골에서는 성지들에 대한 불교의 관리가 회복되면서 불교 승려들에 의해 재신성화 의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몽골의 성지 중 상당수는

사례연구 13. 몽골의 성지 복원

몽골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이지만 1924년~1989년까지의 공산정권 집권 기간 중 수만명의 승려들이 살해되는 등 불교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몽골의 900여개 사찰이 모두 파괴되었고 수 많은 불교 경전이 소실되었다. 공산정권이 실각한 1989년에 이르러서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단 한 곳의 사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몽골의 사찰 서재들은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오래된 해법

몽골에서 공산주의 몰락 이후 사찰은 복원되었고, 승려나 지식인에 의해 숨겨졌던 상당수 경전이 재발견되었다. 이 경전은 몽골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과도한 방목, 사냥, 물부족, 오염, 벌채, 쓰레기 처리 등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쇠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의 몽골인은 자신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를 구성한다고 믿었다. 몽골의 수호신은 연민의 신인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svara)였고, 전국에 걸쳐서 수백개의 신성한 산과 계곡들이 각각의 신성성과 숭배 방법을 설명하는 경전과 함께 존재하였다. 2002년 새로이 복원된 간단 사찰(Gandan Monastery)의 승려들은 종교와 자연보전을 위한 연합, WWF 몽골, 세계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서 고대 수트라(sutra; 경전)들의 총서인 “몽골의 성지(Sacred Sites in Mongolia)”을 발간하였다.

몽골의 성지 재확립

이들 경전은 공산정권 하에서 억압받은 80여개 성지의 신성한 지형과 의식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까지 몽골의 성지 중 가장 중요한 7개가 현지의 사찰 공동체에 의해 재신성화된 상태이다. 몽골 전통에 따라 신성한 경관은 선돌로 표시되며, 이는 해당지역의 나무, 동물, 토지는 보호받아야 함을 나타내 준다. 재신성화 이후 단 12개월 만에도 마르모트(marmot), 맹금류 등 야생동물 개체수에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자연이 제자리를 되찾아서 식생과 수목도 회복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사냥과 벌목에 대한 전통적인 금지조치들이 회복되었고, 수백년 간 지켜졌던 위기종 설포(Snow Leopard)와 사이가산양(Saiga Antelope)에 대한 사냥 금지조치도 회복되었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의 정을 설파한 불교 교리의 표현으로서, 불교의 이러한 속성은 불교 신자들이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현재 사냥이 금지된 성지에는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지역인 복드 칸(Bogd Khan Mountain)이 포함된다. 이 곳은 12세기부터 보호되어 왔으며 800년 전 칸(Khan)의 특별 사냥금지령이 최초로 도입된 곳이기도 하다. 2003년 6월, 울란바토르를 향해 있는 산림지역의 보호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불교 공동체는 도시를 향하는 산지 사면에 수호신의 새로운 조각을 설치하여 산림에 대한 보전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 사냥금지 조치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는 또 하나의 지역은 칸 켄티 엄정보호지역(Khan Kentii Strictly Protected Area)이다. 이 곳은 1.2백만 ha의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몽골의 산림 중 1/10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며, 수 많은 희귀, 위기 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선돌과 그들이 상징하는 바가 각지의 승려들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이들이 지방정부와 유목민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출처; The Alliance for Religion and Conservation website(www.arcworld.org), Introduction to Sacred Sites in Mongolia, written by Dr Hatgin Sukhbaatar

종교경전에 그 지역의 신적 존재와 역사적 관리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경전의 상당수는 복원되어 다시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사례연구 13).

가이드라인 5.9 개발압력

자연성지에 영향을 끼치는 개발사업에 대해 통합 환경, 사회 영향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토착적, 지역적 공동체의 경우에는 개발활동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아크웨이 구(Akwé: Kon)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하여 개발계획 법제의 일부로서 환경영향보고를 포함시키고 있다. 자연성지의 경우에는 문화적 측면과 같은 다양한 고려지점이 다루어지도록 하여 이 평가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영향평가가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수행되고, 해당 평가의 범위도 제안된 개발의 영향력 완화 방법 모색에만 국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결정 주체에게 조기에 성지의 가치를 충분히 알릴 수 있기 위한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성한 아크웨이 구 가이드라인(Akwe: Kon Guidelines)은 성지, 또는 전통적으로 원주민, 지역 공동체에서 점유하거나 사용해 온 육상, 해상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영향평가의 수행을 위한 자발적 절차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경우 자연성지의 생물학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크웨이: 구(akway goo로 발음한다)는 “창조된 만물”을 뜻하는 모하크(Mohawk) 족 단어이다.⁵⁹

가이드라인 5.10 재정조달

적정한 선에서 자연성지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재정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투명성, 윤리,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 창출 및 배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연성지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빈곤임을 인식한다.

대연성지의 재정조달과 관련한 사안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성지의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들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 자연성지는 신성한 존재, 조상의 영혼, 성자 등 경제적 곤란 등 어려움의 시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와 관련을 맺고 있다.

- 구체적인 자연성지의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복지 등 전반적인 안녕을 책임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 자연성지 방문 시 교회나 사찰의 봉헌 개념과 유사하게 현물, 현금 등의 공물이 조금 덜 공식화된 형태로나마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관리주체는 문화적,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소속 공동체로부터 공식적으로 급여 또는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더해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하에 놓인 자연성지들은 더 적극적인 관리와 보호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방문자에 의한 사용의 증가는 안내인력의 증가를 필요하게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변화와 지역사회 역학의 변화는 공원 관리인력의 증가를 요구하게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케냐의 카야를 관리하는 원로들은 카야의 장기적 생존에 대한 두 개의 주요 위협요인으로서 생계유지 수단의 부재와 빈곤을 꼽았다(사례연구 5 참조).

적정한 관리주체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는 그들이 회의를 위해 이동하는 노력을 들이고, 귀중한 시간을 연구, 공동체 회의, 보호지역 관리인력과의 대화에 쏟아야 한다. 관리주체에게 그들이 이러한 경비발생과 시간소요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적정하며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빈곤의 증가와 천연자원의 감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두 현상 모두를 완화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계속하여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어 왔다. 이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복잡한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특히 자원 사용을 봉쇄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계유지 수단을 창출할 수 있는 보호지역과 관련하여서는 그 복잡성이 더해진다. 보호지역은 자원과 생계수단이 더욱 훼손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관점은 문화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전통문화의 상실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50년간 이루어진 빈곤과 개발에 대한 논쟁들은 서구식 개발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관점을 지지하였던 경향이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상당수 원주민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개발을 저해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환경훼손 등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로 인해 이러한 관점에 대한 재평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⁵⁹ The Mohawk are an indigenous people of North America.

[제6원칙] 국가정책틀 내에서 자연성지 관리주체의 권리 존중

가이드라인 6.1 제도적 분석

전통적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제도에 의한 자연성지의 관리가 지속 및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관리주체가 없는 자연성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관련기관 등이 그 관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현재의 관리제도 이해하기 : 자연성지는 다양한 전통적인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보호지역 관리자 등의 정부부처에 의해 항상 올바르게 이해받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제도적 보호주체(guardians)들이 더 이상 성지 근방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핵심적인 부족 구성원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기도 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자연성지와 관련한 전통적 제도들과 새로운 관리구조와의 연관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자연성지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의 개선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공동재산 체제(common property regimes)와 그러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이해는 최근 수 년간 계속하여 발전해 왔다. 그 결과 현재에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신장된 이해가 확보된 상태이며, 자연보전계에서도 지식을 활용해 기존 제도를 인정하고 공동재산 제도를 반영하는 공동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통제도들이 보호지역 기관의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호주의 울룰루-카타츄타 국립공원에서는 현지 원주민인 아냥구족의 법률을 의미하는 “츄쿠파”와 호주의 자연보전법률을 모두 집행하는 관리 이사회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구문화에 의한 일상적 공원관리 업무를 츄쿠파의 규정이 이끌게 되었다.⁶⁰ 그리스의 아토스 산(Mount Athos)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정이 이루어져 관리 이사회가 조직되고 6명의 생태학자 수도승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부록 7).

보호지역 관리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서 갈수록 관리 이사회의 설치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생태적 접근법의 법적인 표현형태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가이드라인 2.7). 이의 활용에 있어서는 특히 보호지역 관계부처들이 자연성을 관할하는 다양한 전통적 제도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은 전통적 제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관리주체에 의한 제도는 자연성지 관리의 모든 측면들에 대해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이들 성지 중 상당수의 공통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그 접근성과 가용성의 제한이다.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칙들로 행동이 강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연성지의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들의 자체적인 규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이를 정식적인 보호지역 규칙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관리주체가 부재한 성지의 보호 : 역사적으로 신성성이 인정되었지만 현재 전통적 관리주체가 부재한 자연성지는 관리 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성지에 대한 명백한 관리주체가 없다는 사실은 지역민이 해당 장소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상당수 주민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해당 장소를 비공식적으로 돌보아왔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지에 대하여 현재 활동 중인 보호주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존재하나 단지 명확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인 경우도 많다.

일부 장소에서는 정부의 유산관리 기관이 이러한 성지 중 중요한 장소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과 다른 영적 공동체가 성지의 보호를 승계한 긍정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들어 스코틀랜드 애런섬 해안의 홀리아일랜드(Holy Island)는 오랫동안 잊혀져 온 기독교의 자연성지로서, 최근에는 불교 공동체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일부 대단히 오래된 성지들은 고대유산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은 종교적 가치와 관련한 정책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6.2 법적 보호

국가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 등의 토지계획 체제에 의거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자연성지에 대한 인위적, 자연적 위협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관리적 변화의 도입을 지지한다.

자연성지는 수 많은 위협에 당면해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수는 소실되고 있기도 하다. 자연성을 압력하는 요인은 대단히 다양하다.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 내에 소재한 자연성지는 기본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보호지역 외의 성지들은 상당한 수준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리주체의 지지 하에 자연성을 보호할 적정한 법적장치를 마련할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⁵⁹ The Mohawk are an indigenous people of North America.

사례연구 14. 불가리아 릴라수도원 자연공원

릴라수도원 자연공원(Natural Park of the Monastery of the Rila)은 불가리아 동방정교회에서 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 기독교 교회에 의해 조성된 유럽 내 보호지역 중 규모와 중요성이 가장 큰 경우 중 하나이다. 이곳은 또한 자연보전에 있어 영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들이 효과적으로 통합된 바람직한 사례를 구성하기도 한다.

릴라수도원은 10세기 초반에 은자였던 성 이반 릴스키(Saint Ivan Rilsky)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와 같은 기원으로 인해 이 수도원은 자연과의 “신성한 합일성”을 계속하여 보존해 왔다. 이 수도원은 1947년까지 광범위한 부동산을 소유 및 관리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같은 해 국유화 사업으로 인해 모두 국가에 몰수되었다. 1998년에는 동방정교회로 부동산 자산 환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 1983년에는 UNESCO에서 릴라수도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

불가리아인들에게 릴라는 불가리아에서 가장 장엄한 산지에 자리잡은 신성한 장소로서 여겨지고 있다. 이곳은 발칸반도 전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도원이기도 하며, 천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이 수도원 근처에는 신성한 샘, 창립자의 신성한 동굴, 다섯개의 암자 등 몇 개의 “성소(sanctuary)”가 위치해 있기도 하다. 이 수도원은 현재 소규모 수도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수백년 간 릴라 수도원은 불가리아의 언어와 문화의 근거지이자 불가리아인의 의식의 근간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최초의 불가리아 역사서도 릴라에서 쓰여졌으며, 릴라수도원은 발칸반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 자연공원은 건강한 생태계와 해발고도 1,000~2,700m에 이르는 멋진 산지 경관, 대부분 빙하에서 유래한 28개의 호수, 오래되고 인상깊은 너도밤나무, 참나무, 가문비나무 숲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산림은 36개의 수목 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중 20여종은 이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동물의 다양성 역시 높아서 영양피라미드의 최상층에는 건강한 늑대와 불곰 개체군이 자리하고 있다.

릴라수도원 자연공원은 2000년에 불가리아 환경수자원부의 방침으로 설립되었다. 이 보호지역은 약 25,000ha 규모로, 개중 약 19,000ha는 교회의 소유이며, 3,600ha는 국유지이다. 국유지는 자연보전지역(Nature Preserve)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회 소유의 지역은 최고 수준의 보호 대상인 자연공원이다. 이 지역 전체는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2003년에는 다학제적 연구팀이 자연공원의 관리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자연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구획에는 종교적 가치를 위한 항목이 포함되었고, 사냥이나 채집 행위는 수도공동체를 위한 소규모 허용분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되었다. 관리계획의 주요 목표는 종교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자연적 구성요소의 보전, 천연자원과 관광업의 관리, 통역과 교육, 동방정교회와 국가제도의 활동 조율 등을 포함하였다. 이 관리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연과 릴라수도원의 합일을 보장 및 보존하고, 이 지역이 불가리아의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출처: National Forestry Board. In the bosom of the Rila Monastery Natural Park. www.bg-parks.net.

가이드라인 6.3 권리 기반 접근

자연성지가 기본적인 인권, 종교 및 숭배의 자유, 자가개발, 자치자결 등의 가치를 존중하며 권리가 기반이 되는 접근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부분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종교전통에 속한 관리주체들은 함께 공유하는 자연성지에서 서로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성공하여 왔다(Dudley *et al.*, 2005) (사례연구 11, 스리파다-아담스피크 참조). 반면에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행하지 모하거나, 자연성지의 접근과 사용에 대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부 경우에는 자연성지를 점유하고 외부 가치체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성모독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1948년 UN

총회에서 반포된 UN 인권선언문에서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누구나 사고,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에는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가르침, 실천, 숭배, 의식 등의 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007년에는 UN이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부록 3). 제3.9장 상자 2는 이에서 자연성지와 관련이 있는 핵심 조항 및 문구를 제시한다.

IUCN 역시 그 업무에 있어 권리기반 접근법을 취하며,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공정성의 사안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IUCN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전세계의 사회들에 장려적, 지원적 영향력을 제공하며, 자연의 온전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이 공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⁶¹

보호지역 관리인력은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여타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6.4 관리주체의 권리 확정

전반적인 국가 보호지역 체제를 내에서 자연성지 관리 주체가 자연성지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력과 관리권한을 가지며, 자신들의 가치체계와 상충하는 가치를 강요받는 사태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자연성지의 보전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관리주체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자연성지를 포함하는 신규 보호지역망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주체의 관리권한이 충분히 인정되도록 모든 종류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상당수 전통사회의 미래는 자연성지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다.

갈수록 많은 지역 원주민공동체들이 보호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인식해 가고 있다. 원주민 단체들은 전통적으로 보전되어 온 지역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보전지로 지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최근 “원주민보호지역(IPA: Indigenous Protected Area)” 제도가 새로이 생기기도 하였다(사례연구 15). 이들 원주민보호지역은 상당한 수준의 생물학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들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상자 4).

여전히 자연성지의 관리주체들에 주류사회의 가치체계들이 강요되어 자연성지 자체의 파괴나 훼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6.3에서 다른 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각국 정부들은 자연성지들과 그 관리주체들이 외부 가치체계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례연구 15. 호주 아남랜드 북동부의 디무루 원주민보호지역(IPA)

디무루(Dhimurru) 원주민보호지역(IPA)은 호주 아남랜드(Arnhem Land)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 애보리지니의 거주지역에 소재한 디무루 IPA는 신성한 구릉지인 누룬(Nhulun)의 아래에 지어진 광산 마을인 누룬바이(Nhulunbuy)를 둘러싼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누룬은 문화간 배움 육성의 좋은 사례이며, 성지들이 토지권리 운동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요릉우족(Yolngu)은 선조들에 대한 종교적 의무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문화적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다. 이들의 토지관리 덕에 애보리지니는 고대로부터 호주에서 존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요릉우족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지와의 신성한 문화적 연계관계와, 그를 확보하도록 해주는 롬(rom; 법), 마니케이(manikay; 노래/의식), 미니치(Miny' tji; 미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무루 IPA 내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가치는 요릉우 족의 문화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절대 분리하여 취급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관리접근법은 항상 요릉우 족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되지만, 디무루는 IPA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국립공원 및 야생생물 관리청(Parks and Wildlife Service of the Northern Territory)과 함께 고유한 “양방향(Both Ways)” 관리접근법이 개발되었다.

디무루는 원주민이 단독으로 관리 책임을 지면서,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생산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여 대안적인 형태의 공동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책임을 행사하고자 시도하는 좋은 사례이다.

요릉우 족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풍부한 문화를 갖추고 있으며, 193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유럽의 가치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IPA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가해지는 대부분의 영향력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압력요인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지 않을 수 있다. 요릉우 족의 토지에 알루미늄 광산이 설립된 것에 대해 요릉우인은 자신의 땅과 그로 찾아오는 방문자의 안녕을 우려하여 디무루 토지관리 회사(Dhimurru Land Manage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디무루 IPA는 고유한 해안가 동·식물 종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그중에서도 바다거북과 쥐공들은 요릉우 족에게 특히 큰 문화적 관심의 대상이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무루에서는 이들의 개체군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범관리 관행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의 모니터링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관리관행에는 서식지의 보호(디무루의 허가제도와 순찰 등을 통해), 어장에서의 TED(Turtle Exclusion Device: 거북제외장치) 사용 지원, 해양관리계획 등을 통해 전통적인 북과 거북알 채취가 지속가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⁶¹ <http://www.ucn.org/en/about/>.

사례연구 15. 호주 아남랜드 북동부의 디무루 원주민보호지역(IPA)(계속)

현재에는 북쪽의 애보리를 지원하며, 그들의 성지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들이 확립되어 있다. 애보리지니 거주지역 보호기관(AAPA: Aboriginal Areas Protection Authority)은 1989년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애보리지니 성지 법에 의거하여 전통 소유주에 의해 보고된 성지의 등록 및 기록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이다. AAPA는 또한 성지의 법적 보호와, 성지의 권리 침해 시 고발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권리 침해 사태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디무루는 1931년에 애보리지니 보전지역(Aboriginal Reserve)으로, 그리고 1976년에 애보리지니 토지권리법(ALRA: Aboriginal Land Rights Act) 하에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애보리지니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존중의 부족이 팽배해 있다.

누룬의 토지 권리 역사(누룬 전망대): 누룬(Nhulun)은 인구 4,000명 규모의 누룬바이 마을로 3면이 둘러싸인 자연 구릉지이다. 이 곳은 애보리지니에 의한 최초의 관습법에 의한 전통적 토지 소유권 주장 당시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 시도는 결국 애보리지니 토지권리법(1976)의 확립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토지권리 투쟁은 이 성지의 훼손과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훼손된 성지에는 갈사 봉굴(Galtha Bunggul)이라고 불린 데모가 이루어졌다. 이후 요롱우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나무 껍질에 부착한 후(이는 후에 “나무껍질 청원”으로 알려짐) 1963년 하원에 제출하였다. 나무껍질 청원은 해당 지역의 신성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전통적으로 누룬은 요롱우인이 별미로 생각하는 야생 꿀의 일종인 “슈거백(Sugarbag)”의 모성적 산지이기 때문에 성지로 간주된다. 누룬은 1989년의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성지법에 의거하여 성지로 등록되었으나,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 조깅을 하거나 노을을 바라보기 위해 찾는 여가장소이기도 하다. 자동차들은 봉쇄된 도로를 통해 주변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철제 감시탑 (Nhulun Lookout; 누룬 전망대)을 방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경험을 한 디무루는 화해와 문화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을 육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디무루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애보리지니 출신 밴드인 Yothu Yindi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 밴드는 문화와 토지권리 등의 사안을 주류사회에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밴드는 요롱우 어와 영어로 “조약(Treaty)”, “부족의 목소리(Tribal Voice)”, “주류(Mainstream)” 등의 제목을 가진 노래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밴드는 각국을 투어하며 전세계적인 명성을 쌓았고, 여타 원주민 단체들과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Yothu Yindi 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누룬 전망대에는 성지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와, 토지권리 운동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적힌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판은 요롱우인들의 신념과 가치들을 방문자에게 전달하여 화해와 문화적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디무루의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누룬은 요롱우인들에게 고도의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요롱우인들은 여전히 이 곳에서 의식을 수행한다. 가장 최근의 의식은 2007년 5월 1일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1969년의 갈사 봉굴(Galtha Bunggul)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요롱우인들의 토지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롱우인들은 오늘날까지도 타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의 토지에 대한 불법적 접근과 성지에 대한 잠재적 훼손을 막기 위해 디무루는 이 투쟁의 주요 무기로서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룬의 안내 표지판들은 정기적으로 훼손된다는 점에서 대중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이 지역 토지의 문화적, 영적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성지의 안녕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전반적인 문화 보존. 성지는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의 일부이다. 이들은 육지와 바다의 관리에 대한 전통적 책임사항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법, 노래, 미술, 의식 등의 문화적 개념은 생활문화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주체에 대한 권한부여. 성지에 대한 적정한 보호 제공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현지의 전통적 소유주들이 충분한 도움을 제공받고, 이들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실효적인 법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롱우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외부인들을 교육시킬 명백한 필요가 존재한다. 문화적 규약과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성지와 관련된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방문 과학자, 상업적 사업가, 기업 등 외부 당사자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사례연구 15. 호주 아남랜드 북동부의 디무루 원주민보호지역(IPA)(계속)

성지에 대한 접근은 구획과 허가제도 등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 이 두 종류의 제도는 동시에 서로에 시너지를 부여하며 운영될 수 있다. 특히 구획제도는 문화적, 자연적 가치들을 보전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적정한 미디어 및 소통. 미디어 등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기능적인 소통수단의 활용을 고려하라. 정지화상과 영상의 활용 역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는 기존의 정보체계들과의 연계 하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목표와 권리 등을 외부 조직, 기관 등에 전달하라. 요롱우인의 신앙과 가치들을

번역하여 방문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화해와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도록 한다. 이는 특히 주변 육지와 해양 지역을 사용하는 당사자들과 좋은 업무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유용할 수 있다.

성지 뿐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의 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 외부인들은 요롱우인들의 방대한 성지 관리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저자: Dhimurru Land Management Aboriginal Corporation.

가이드라인 6.5 토지보유권

자연성지가 정부 지정 보호지역 또는 민간보호지역 내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토지소유권(tenure rights)이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권리를 다시 관리주체들에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이양(devolution)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20년간 보전기관 및 지역공동체 간의 공동 관리책임 분담 방식은 상당히 발전하여 왔다(사례연구 12 울룰루 참조). 이들은 거버넌스의 협력적 유형과 공동체적 관리 유형 등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토지보유권을 민주화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30 여개국에서는 토지보유권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토지행정을 지역적 수준에서 운용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⁶² 이 개혁은 효율성을 증강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공동체기반관리의 선두에 서 있는 탄자니아에서는 “사적 집단(group private)” 토지보유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마을에 의한 관습적인 이용의 정식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 산림, 양봉과는 공동체기반 산림관리를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006년까지 382곳 이상의 마을소유 토지에 산림 보전지역이 지정 또는 선포되었고, 이들은 산림과 삼림 지대 2백만 ha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전국 공유지의 10.2%), 1,102개의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⁶³ 이러한 마을 산림보전지역의 상당수는 자연성지이거나 자연성지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공동체 관리 하에 놓여 있는 자연성지를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상당수 중앙계획경제 국가들 역시 자연성지를 국가적 관리대상에서 공동체 관리주체로 환원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국가에는 구 소련과 관련을 맺고 있던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사례연구 13, 몽골; 사례연구 14, 릴라). 예를 들어 몽골에서는 1927년부터 1989년까지의 불교 탄압이 수백 개의 사찰의 파괴와 전통적인 관리체계 폐기로 이어졌었고, 그에 따라 수 많은 자연성지를 과잉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간 몽골의 800여개로 추산되는 기존 자연성지들을 재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이 성지의 상당수는 이제 현지 관리주체에게 환원된 상태이다. 성지의 일부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 자연성지(state sacred natural sites)”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상당수 지역의 공동체는 갈수록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자연성지의 공식 인정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⁶² Wily, 2003.

⁶³ FBD, 2006.

사례연구 16. 세계 최초의 종교공원, 빌카노타 종교공원

페루의 퀘차 족(Quecha)에게 안데스 산맥의 해발고도 20,945ft(6,372m) 아우상가테 산(Mount Ausangate)은 가장 중요한 아푸(Apu) 또는 신성한 존재이다. 이 성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 년간의 투쟁 끝에 이들은 2004년 12월에 마침내 이 산과 주변 지역(Cordillera Vilcanota)을 세계 최초의 종교공원인 빌카노타 종교공원(Vilcanota Spiritual Park)으로 지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페루 남부 쿠스코(Cusco) 인근에 위치한 빌카노타 산지는 469여개의 빙하가 분포하고 있으며, 안데스 고원의 계곡과 동쪽의 아마존 열대우림 모두의 수원이 되는 광대한 분수계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수원은 대단히 다양한 생물종과 수 많은 위대한 문화를 지탱하여 왔고, 아우상가테 산 역시 잉카문화를 포함한 페루 역사 속 수 많은 문화들에 의해 신성시 되어 왔다.

오늘날 퀘차인들의 토착공동체의 케로스(Q' eros)는 코르딜레라 빌카노타(Cordillera Vilcanota)의 산지를 숭상하며 이들이 보호되어야 할 신적 존재라고 믿고 있다. 퀘차 족의 샤먼인 Andres Apaza의 표현을 빌자면, “산과 어머니 지구는 우리에게 생명, 작물, 가축, 초원,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 매해 6월에 약 50,000명이 “눈의 별”이라는 의미의 Q' olloy Rit' I 축제 기간에 맞추어 아우상가테의 생명을 부여하는 빙하로 순례를 온다. 이 축제의 기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가톨릭교의 도입 이후 사람들이 산 위로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 눈 속에 세워서 예수와 아푸에 대한 숭상의 의미를 표현하기 시작한 데에서 유래한 것은 분명하다.

샤먼들의 지도 하에 퀘로스인들은 수백년간 오늘날의 적응적 자원관리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 의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였으나, 이러한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자원개발, 기후 온난화로 인한 빙하 융빙,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더해 취약한 안데스 고원에서 방목, 벌목, 채광 증가로 인해 소규모 현지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토지관리 양상에 외부의 대규모 기업이 유입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는 이러한 외부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계와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당면한 퀘차인들은 정부의 지원 하에 세계 최초의 종교공원을 설립함으로써, 주변 산지경관이 자연성지를 포함한 공동체보전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그 공동체와 문화에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유도하였다. 빌카노타 종교공원은 고고학적 유적지들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상당부분에 걸쳐 복수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대산과 등으로 인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며, 수천 종의 토착 감자종이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 집중지역(hotspot)이기도 하다.

빌카노타 종교공원은 토착적, 전통적 자연보전 및 농생명다양성 관리 방식을 강조하며, 현지의 복지 개념에 기반한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3, 4). 이 공원은 주변지역의 취약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체 기반적 Quechua–Aymara 단체인 Asociación Kechua Aymara para Comunidades Sustentables(ANDES)의 이사인 Alejandro Argumedo는 “주민에 의해 시행되는 자발적 보호조치로 인해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연성지는 지역 생태계와 그 고유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전하여 이들이 고갈된 안데스 지역 경관의 재활을 위한 생물자원의 핵심적 보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한다. 빌카노타 종교공원의 전통적 관리방식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 향후 지정될 특별보전지역(special conservation areas)들의 모델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출처: Sacred Land Film Project, A.Tindall, A. Argumedo, K. Mazjoub.

6. 결론

인류가 지구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갈수록 널리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유전적 자원의 저하, 야생서식지의 축소, 전례없는 속도로의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 어장과 산림의 고갈, 물, 토양, 농지의 부족, 세계기후에 대한 대단히 우려되는 수준의 교란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언어, 신앙체계, 전통적 가치관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구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 역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자연성지는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의 접점을 대변하며, 이와 같은 성지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은 지구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생물학적, 문화적 자원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육상, 해상 면적의 급격한 증가는 지구 상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성공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지표이다. 현대의 이 움직임은 원주민 등의 전통적 영토와 그들의 자연성을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보호지역 체계 속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러한 육상, 해상의 지역이 수천년간 원주민에 의해 보살펴져 왔고, 이와 같이 보호자로서 행동하려는 인류의 오랜 본능의

중심에는 자연성지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연성지는 원주민공동체, 주류신앙, 국가 정부, 민간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대부분이 관심을 두는 대상이다. 자연성지 그리고 그와 연관된 문화적 집단은 자연과의 심도 깊고 다양한 관계를 대변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존중적이고 생명을 긍정하는 성격을 띠어 인류가 지구와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성하여야 할 씨앗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지혜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제시한다.

자연성지 관리주체와의 존중적 동반자 관계에 동참하고 있는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이러한 특별한 장소들의 생존과 효과적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로써 인류 전체를 위해 자연과 문화 모두에 대해 지속 가능한 보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1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 계획: 생물다양성을 위한 방법론 도입과 서부 과테말라 고원에서 얻은 교훈

**Estuardo Secaira, Maria Elena Molina, 과테말라 자연보전협회
(The Nature Conservancy, Guatemala)**

요약

전세계의 보호지역 중 상당수는 문화유산과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다. 국제자연보전협회(TNC)는 특히 과테말라와 같이 풍부하고 현재진행적 원주민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두 대상 모두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NC의 과테말라 프로그램은 열대우림, 습지, Tikal, Mirador, Piedras Negras, Yaxha 등의 고고학적 유적지 수백 곳을 포함하고 있으며 1.5백만 ha에 이르는 광대한 마야 생물권 보전지역의 대규모 계획에 참여한 바 있다. 이후 TNC는 문화부의 초청 하에 마야 최대의 도시 중 하나이자 세계유산 지정지인 티칼(Tikal)의 관리계획 수립도 지원하였다.

이 계획을 위해 우리는 TNC의 보전지역 계획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화권, 문화영역, 문화지역, 유적지, 건축물, 이동 가능한 유물 등으로 분류된 유형적 문화보전 대상(tangible cultural targets)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우리는 서부 과테말라의 고원에 위치한 두 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두 사례 모두에 있어 원주민 주민들은 보전대상으로서 자연성지들을 선정하였다. 이후 문화적, 정신적 가치체계, 전통적 지식과 용도, 사회제도, 종교(우주론, 의식 관행, 성지 등), 집단기억, 문화적 전통과 관습 등으로 분류되는 무형적 문화보전 대상(intangible cultural targets)의 포함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기 위해 인류학자들과 몇 차례의 워크숍이 조직되었다.

이 계획방법론은 또한 자연 보전 대상에 대한 생존능력 분석(viability analysis), 유형적 문화 보전 대상들에 대한 온전성 분석(integrity analysis),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에 대한 중요성 분석(significance analysis) 수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과정 중에서 보전 대상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핵심

보전 요소들이 선정되며, 이들의 지표와 평가성적도 파악된다. 이후 주요 위협요인과 기회에 대한 파악 및 우선순위 배정이 이루어져 전략의 선정과 우선순위 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관리계획의 개발은 핵심 공동체 이해당사자와의 워크숍과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험은 보호지역 관리의 맥락에서 자연성지의 포함이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지역주민 역시 자신들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이러한 성지의 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서론

전세계적으로 문화유산과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설계된 보호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국제자연보전협회(TNC)는 보전노력의 전략적 계획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하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과 도구는 본래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TNC의 과테말라 프로그램은 1.5백만 ha 규모의 열대우림, 야생생물이 풍부한 습지, El Mirador, Nakbé 등 전고전 시대 도시, Tikal, Uaxactún, Piedras Negras, Rio Azul, Yaxhá, Nakum Naranjo 등 고전시대 도시, Topoxté 등 후고전 시대 도시 등을 포함한 수백 곳의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보호지역과 다용도지역(multiple-use zones)들로 구성된 마야 생물권 보전지역의 대규모 계획에 참여한 바 있다. TNC의 2001–2006 마야 생물권 보전지역 기본계획 개발 참여로 그 과정 중에 2개의 문화 보전 대상 포함과(고고학적 유적지과 생활문화지(living cultures)) 생물다양성 보전 대상에 대한 완전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화 보전 대상을 포함한 결과로 우리는 문화부의 초청을 받아 옛 마야의 도시들 중 가장 규모가 큰 현장을 보호하는 티칼국립공원(Tikal National Park)의 관리계획 개발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공원은 전세계에 23곳 밖에 없는 복합 세계유산 지정지(Mixed World Heritage Sites)들 중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받아 최초로 지정된 곳이었다. 이 중요한 계획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둔 현행 TNC 보전지역 계획 방법론이 유형적 문화 보전 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주로 고고학적 유적지들이 주를 이루는 유형적 문화 보전 대상들을 이 방법론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응조치들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획방법론에 대한 철저한 문헌 검색과 고고학자, 인류학자, 자연보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최후의 검증조치는 티칼국립공원 기본계획의 계획과정에 대한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앞서 정립된 개념들을 세부조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서부 과테말라의 고원에 위치하였으며 성지들과 원주민 생활문화가 경관의 근본적 요소를 이루는 도시공원들을 위한 기본계획의 설계에도 참여하였다.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들을 포함하도록 우리의 방법론을 수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류학자들과 몇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다. 2005년에는 서부 과테말라의 보호지역인 아티틀란 분수령 다용도보전지역(Atitlán Watershed Multiple Use Reserve)을 위한 2006~2010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형적,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들과 생물다양성적, 경제적 활동들을 모두 한 방법론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포괄적인 시도를 하였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각 단계가 유형적,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되었고, 자연성지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보전지역 계획 방법론

TNC는 생물다양성 보전 대상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위협요인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 행동들을 전략적으로 정의 및 우선순위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전지역 계획 방법론(Conservation Area Planning (CAP) Methodology)을 개발하였다. 5S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다음 단계들로 구성된다(TNC, 2000):

- **체계(Systems):** 이에서 우리는 보전노력의 생물다양성 적 측면의 대상을 정의하며, 이는 생태계, 생태공동체, 생물종, 생물종의 집합 등이 될 수 있다.
- **생존능력 분석(Viability analysis):** 이는 보전 대상들이 장기적 보전을 위해 의존하는 핵심적인 생태적 속성들을 정의함으로써 그 보전적 지위를 측정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생태적 속성들은 규모, 조건, 경관적 맥락 등으로 분류된다.

- **스트레스(Stresses):** 이는 선택된 보전 대상들이 인위적 세력들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생태적, 문화적 스트레스 현상들을 지칭한다. 여기서 스트레스란 서식지의 파괴, 손상, 파편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스트레스 요인(Sources of stress):**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 대상들에 영향을 끼치는 생태적 스트레스 현상들과 자연성지들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스트레스 현상들의 원인들을 지칭한다.
- **전략(Strategies):** 이들은 보전 대상들에 대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들인 가장 치명적인 위협요인들의 경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일 행동들을 정의하여 구성된다.
- **성공(Success):** 이는 우리의 보전전략들의 진행정도와 보전 대상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의 보전 노력들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 지표들을 지칭한다.

이상과 같은 CAP 방법론은 가장 완전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뚜렷한 과학에 기반한 계획을 제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절차는 소수의 기술자들이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행할 수도, 또는 다수의 참여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워크숍과 공동체 협의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크다. 문화 보전 대상들을 위해 확장 및 적응된 5S 체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 **문화 보전 대상(Cultural targets):** 이 용어는 개별적으로, 또는 특성, 속성, 관리 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의 설립 이유가 되는 문화적 자산을 지칭한다. 문화 보전 대상은 유형적, 무형적인 경우로 분류된다.

유형적 문화 보전 대상

유형유산들은 특정 장소의 문화적 발전 과정 중 모든 시점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권, 문화영역, 문화지역, 유적지, 건물, 유물 등의 물리적 자산들을 지칭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들이 제안된 바 있다(Molina et al., 2003):

- **문화권(Cultural region):** 연결성, 연속성, 문화역사적 일관성 등의 공통적인 문화적 특성을 보유한 대규모 지리적 지역. 예: 서부 멕시코로부터 서부 코스타리카를 아우르며, 복수의 문화적 집단들이 옥수수, 콩, 호박 등 동일한 주식 곡물을 섭취하고, 20진수를 기본으로 하는 수체계를 사용하며, 매우 유사한 태양력, 태음력을 사용하는 중아메리카 문화권.

- **문화영역(Cultural area)**: 구체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역사적, 민속적, 양식적 측면들로 연결되어 있는 문화지역들의 집합. 예: 30여개의 마야어들이 모두 기원, 문법요소, 어근 등을 공유하는 중아메리카 문화권 내의 중아메리카 마야 문화영역.
- **문화지역(Cultural zone)**: 정부형태를 공유하여 과거에 역사적, 정치적 결합이 있었던 지리적 지역단위. 예: 여러 고대 마야 유적지들이 공동의 왕조의 지배 하에 있었어서 유사한 건축 및 도자기 양식이 나타나는 Piedras Negras 및 Yaxchilán 고고학적 유적지.
- **단위/문화 유적지(Unit/cultural site)**: 중요 사건의 발생 장소, 중요 점령지, 선사시대, 역사시대의 중요 활동 현장, 또는 그와 관련된 건물, 구조물로서 역사적, 문화적, 고고학적 가치를 갖는 장소를 말한다. 이의 범위는 다양한 크기의 도시, 시가지, 마을, 고고학적 유적지, 선사시대 유적지, 매장지, 성소 등의 인간 거주지와 중복될 수 있다. 예: Tikal, Teotihuacan, Pompeii.
- **건물, 구조물의 집단, 지구, 모음**: 아크로폴리스, 광장, 고고학적 복합체, 동네, 도시 중심부, 종교지구(religious quarters), 거주지구, 생산장소 등 지어진 역사적 시기 또는 수행한 기능에 의해 연관관계를 갖는 건물 및 구조물이다. 예: Tikal의 North Acropolis, 페루 San Francisco de Lima의 종교 복합지역.
- **건물/건축물**: 가사, 민간, 군사, 생산, 수송, 여가 활동 등과 관련 있는 개별 물리적 구조물로서, 그 내부에서 인간활동이 이루어진 것들을 의미한다(주택, 사원, 궁전, 호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지어진 기타 구조물에는 교량, 포장도로, 송수로, 벽, 터널 등이 있다.
- **이동가능 문화유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요소들로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되 가능하거나 이동이 용이한 경우들을 지칭한다. 앞서 사례들에서 보여졌듯이 이들은 중요한 역사적, 예술적, 민속적, 고생물학적, 고고학적, 기술적 가치를 가지며 주위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이 유물들은 조각품, 스투코(stucco), 석주(stela), 인방(lintel), 회화, 기구, 동굴벽화, 암면조각(petroglyph) 등을 포함한다.
- **역사문서**: 구체적인 문화권, 문화영역, 문화지역, 문화 유적지에 대한 연구와 개입 사례들이 모여 있는 모든 인쇄물, 기록물. 이들은 구체적인 문화 보전 대상에 대한 지식 습득과 관리를 위해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2003).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은 공동체 또는 집단이 보호를 희망하는 요소로서 구체적으로 선정한 관습, 표상이다. 이들을 보다 확실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자연, 보호지역 등과 특별히 연관된 다음의 분류항목이 제안되었다:

- **무형적 가치**: 인간이 특정 지역 또는 경관과 연관짓는 다양한 가치. 이러한 가치는 영적이거나 여가적일 수도, 정체성이나 실존과 연관될 수도, 예술적, 미학적, 교육적, 과학적(연구 및 모니터링)일 수도, 평화적이거나 치료적일 수도 있다(Harmon and Putney, 2000).
- **자연과 관련한 지역적 지식, 관습**: 자연적 작용을 관리하고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천년에 걸쳐 문화적 집단 또는 공동체가 발전시켜 온 민속생태적 지식을 지칭한다.
- **사회제도**: 자연, 문화 유산의 관리와 보전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적 조직 형태. 이 제도들은 과테말라의 Totonican 공유림, 티벳과 인도의 성림 등을 관장하는 관습법 체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의 수 많은 경관의 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영성**: 원주민의 우주론, 조직적 종교 등 몇몇 영성(spirituality)의 형태들이 갖는 관습들은 보전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화산이나 산의 정상, 동굴, 하천이나 석호의 물가 등의 자연적 장소에서 수행된다. 또한, 이러한 자연성지 중 상당수는 보호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책임관리는 인근의 지역공동체에게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보호지역 관리자는 이러한 장소에 대해 관리책임을 분담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집단기억**: 전세계 각지의 공동체와 민족의 문화유산의 일부를 이루는 역사적 사실과 전설. 이 사실과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장소들을 지칭하며, 이러한 성지들 중 일부는 오늘날 보호지역 내에 소재해 있기도 하다.
- **전통**: 이 광범위한 카테고리는 보호 대상 경관, 지역과 내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위에서 특정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문화적 관습을 포괄한다. 이 카테고리에는 언어, 음악, 춤, 연극, 요리, 축제, 전통놀이 등 수 많은 문화적 속성이 포함될 수 있다.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

“무형유산” 이란 특정 공동체나 집단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된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 등을 의미한다(UNESCO,

아래에는 과테말라 서부 고원의 아티틀란 분수계 다용도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의 자연 보전 대상과 유형적,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의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대상

- 활엽수림
- 혼합림(소나무, 참나무)
- 고지대 침엽수림
- 건생군집(xerophytic association)
- 아티틀란 호 분수계
- Madrevieja, Nahualate 분수계
- 뿔구안(horned guan)

문화 보전 대상

- 마야 고고학적 유적지
- 식민시대, 공화국 시대, 토착적 건축

- 마야 시대, 식민시대, 공화국 시대의 이동가능 유물
- 성지
- 구전역사, 전통적 지식 및 관습
- 공동체적 가치, 조직
- 경관적, 여가적 가치

보전 현황 분석

원 방법론에는 자연 보전 대상에 대한 생존능력 분석을 통해 장기적(약 100년 단위)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대상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 분석에서는 보전 대상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핵심 생태적 속성과 자격요건 층족을 보일 지표와 평가성적이 구분된다.

이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대응되는 개념이 정의되었다.

유형적 문화 보전 대상에 대해서는 분석 항목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표 1

생존능력 분석	온전성 분석	중요성 분석	중요성 분석
자연 보전 대상	유형적 문화 보전 대상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	성지
규모	개념적 의미	일치성	일치성
현황	물리적 현황	전달성	물리적 현황
경관적 맥락	사회적, 자연적 맥락	맥락	맥락

● **개념적 내용(Conceptual content):** 특정 요소가 그 기원이 되는 역사적 시기의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정도와 더불어, 그 진위성,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의미 등을 반영하는 정도.

● **물리적 현황(Physical condition):** 특정 요소의 본래 상태와 현재 상태에 대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수행한 비교:

- 본래 상태와 비교하여 얼마나 온전한 상태인가
- 얼마나 파편화된 상태인가(길이, 부피, 건축적 요소의 수)
- 공간적 변화, 정당하고 그렇지 못한 첨가, 계층화 등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
- 그 재료와 형태의 손상 정도

● **맥락(Context):** 자연적, 사회적 주변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된 문화 보전 대상의 보전 또는 손상에 기여하거나 그를 저해하는 자연적, 사회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에 있어서는 항목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일치성(Correspondence):**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이 현존 공동체 및 집단에게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와, 그 본래 사상에 대하여 일치성을 보유하는 정도.

그 중요성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현행 공동체들에게 유효성을 갖는 경우 다음이 고려된다.

● **전달성(Transmissibility):**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과 관련한 지식과 관습의 전승을 위한 효과적 장치의 존재 여부.

● **맥락:**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의 보전에 기여하거나 하지 않는 맥락적 요소들. 이러한 요인 중 중요한 것에는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이 의지하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체제들이 포함된다.

성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유형적, 무형적 문화 보전 대상의 혼합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항목들이 필요하다: 일치성, 물리적 현황, 전달성, 맥락.

표 2

평가성적	개념
매우 좋음	지표가 최적 편차범위 내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유지를 위한 개입이 불필요
좋음	지표가 수용 가능한 편차범위 내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유지를 위한 약간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양호	수용 가능한 편차 범위. 유지를 위한 개입 필요함
나쁨	지표가 수용 가능한 편차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킬 경우 보전대상의 복원이나 절멸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

표 3

항목	지표	나쁨	양호	좋음	매우 좋음
물리적 현황	자연적 맥락을 보전하고 청정한 성지의 비율	30% 미만	30–59%	60–89%	90% 이상
일치성	최근 의식 목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발견된 성지의 비율	30% 미만	30–59%	60–89%	90% 이상
전달성	성지에서 거행된 마야 의식의 참석자 중 40세 미만자의 비율	10% 미만	11–30%	31–50%	50% 이상
맥락	공식적인 보호를 받는 성지들의 비율	25% 미만	25–50%	51–75%	75% 이상

각 요인 별로 지표가 식별되어야 하며, 이후 표 2에서 보여진 평가성적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판별되어야 한다.

표 3에서는 아이틀란 분수계 다용도보전지역의 성지에 대한 중요성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아이틀란의 성지들에 대하여 식별된 황폐화의 주요 효과들은 경관 황폐화, 접근성 제한, 전통지식 및 문화의 전반적 손실 등이었다. 성지에 대하여 식별된 황폐화의 주요 원인은 산림벌채, 산림 산불,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관광업의 부적절한 관리 등이었다.

위협요인 분석(Threat Analysis)

이는 보전 대상에 대한 파괴와 손상을 야기하는 가장 결정적 위협요인의 선정 과정을 지칭한다. 보다 양질의 객관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협요인은 다음의 두 요소로 분류되어 분석된다:

- 스트레스:** 보전대상에 대한 생태적 효과. 생물다양성 보전 대상에 대한 스트레스란 서식지 파괴 또는 손상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문화 보전대상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경우 전문가들은 황폐화 효과(deterioration effects)라고 부른다. 이러한 스트레스 또는 황폐화의 효과들은 강도율(severity)과 범위(scope)의 기준들로 평가된다.

-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의 인위적, 자연적 원인.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는 경작지의 확대, 어류의 남획, 비호환적 임업 또는 목축 관행, 기반시설 개발, 광산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문화 보전 대상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념이 황폐화의 원인(causes of deterioration)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또는 황폐화의 원인들은 기여도(contribution)와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기준들로 평가된다.

전략

이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생물다양성 및 문화 보전대상에 대한 결정적 위협요인의 경감을 위해 가장 실현성이 큰 전략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이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평가된다: 목표달성, 위협경감, 생존능력 개선 등의 측면에서의 혜택(benefits), 실현성(feasibility), 비용(cost).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과테말라의 아이틀란 지역에서 수행된 계획과정 중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개발되었다.

-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체계화, 보급
- 원주민 지역으로 파견된 정부,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 등 인력의 문화적 민감성 증강
- 마야 영적 안내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지의 방문자를 위한 규정 마련.

결론 및 권고사항

관리계획의 개발을 위한 절차는 원로, 종교지도자 등 공동체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대변자와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의 일부는 계획팀 전체가 대상 지역으로 이동하여 해당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한 현장분석을 수행하는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보호지역 관리의 맥락에서 자연성지의 포함이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지역주민 역시 자신들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이러한 성지의 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결론 및 제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연성지는 과테말라 고원의 보호지역의 계획 및 관리 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본 접근법이 보호지역 관리계획의 정교화를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의 개정본에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보호지역의 신성성은 그에 대한 법령, 관리계획 번역본, 홍보자료 등에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은 해당지역이 인근지역 주민에 의해 신성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지를 포함하는 보호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 영적 안내인의 참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제안한다:

영적 안내인을 일반적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과 특수한 심화적, 소규모 회의를 조직

더 좋은 방법은 현지의 영적 관리주체에게 자체적인 회의와 분석기제에 성지의 보호를 특별주제로 포함하도록 요청

이들을 보호지역 관리와 관련한 공식기관에 참여하도록 함

참조문헌과 참고자료

Harmon, D. and Putney, A. 2000. “The Non-Material Values of Protected Areas”. Parks Magazine, Vol. 10, No.2, IUCN.

Molina, M.E., Secaira, E., Lehnhoff, A., Martin, A., Chan, R.M., Vaverde, M.J., Edwards, M. 2003. Conservation Area Planning for Tangible Cultural Resources. Guatemala, The Nature Conservancy.

TNC. 2000. Esquema de las 5 S's para la Conservación de Sitios. Guatemala, The Nature Conservancy. (In Spanish.) Online: <http://www.nature.org/aboutus/howwework/cbd/science/art14309.html>

UNESCO. 2003.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부록 2

호주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의 사진촬영 가이드라인 중 발췌

상업목적의 사진촬영, 사용, 상업적 음성녹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아낭구족(Anangu)으로 알려진 전통적 애보리지니 소유주의 생활문화로 잘 알려진 세계유산 지정지역이다. 아낭구와 호주 국립공원 관리청은 영화제작자, 사진가, 화가 등의 국립공원 방문을 환영하며, 아낭구인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곳의 독특한 생활문화 경관과 취약한 사막 생태계가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 국립공원은 아낭구인의 소유 하에 놓여 있으며, 이들이 국립공원을 임대하여 호주 국립공원 관리청이 실질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계약 상 호주 국립공원 관리청은 아낭구인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본 가이드라인들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영화 제작자, 사진가, 화가 등의 작업을 돋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 지역 토지의 전통 소유주들과 관광업계, 영화업계, 사진계 관계자들과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아낭구 문화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방문자들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결과물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의 정신 하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립공원 관리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 국립공원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는 국립공원 미디어 사무소 (Media Office)에서 답변을 담당한다. 국립공원 웹사이트 (www.deh.gov.au/parks/uluru/index.html)와 이하에서 사용되는 용어 상당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첨부문서 A도 참조하라

허가제도가 왜 필요한가?

문화적 가치의 보호

2.1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의 문화적 중요성은 수 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낭구 전통들로부터

발생한다. 아낭구 문화의 근간은 츄쿠파(Tjukurpa)이며, 이는 이야기, 의식, 경관, 동·식물, 예술, 생활규칙 등의 원천이다(www.deh.gov.au/parks/uluru/tjukurpa/index.html). 이러한 생활문화의 국제적 중요성은 1994년 이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의 “문화경관” 세계유산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인정되었다.

허가제도는 아낭구 문화의 보호를 돋는다. 츄쿠파 하에서 특정 장소, 의식용구, 문양, 의식 등은 그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일부 이야기와 장소들 역시 부족 여성은 제외한 성인식을 거친 남성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또 다른 일부 이야기들은 구전되는 것만 허용되고 문자나 영상으로 기록될 수 없다. 아낭구인들은 성지의 모습이 활용 또는 전시될 경우, 또는 국립공원이 그 자연적, 문화적 가치와 그에 대한 사람의 인식, 이해, 향유 수준을 신장시키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문화가 타락한다고 여긴다.

2.2 아낭구인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역시 민감한 사안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낭구인 역시 허락 없이 누군가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아낭구인은 츄쿠파에 의거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을 나타낸 그림이나 사진을 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기념하는 관습이 있다. 이 때문에 아낭구인들의 사진을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경우 새로이 사전 허가를 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작업

울루루는 아낭구인들에게 상당한 영성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울루루 자체 역시 수 많은 민감한 장소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방문자들은 모두 본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이러한 장소가 아낭구인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 1은 녹화, 촬영, 작화 등이 금지된 울루루 내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대부분에는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개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선정되거나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의도치 않게 민감지역의 모습을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그 사용 사전에 관리청에 문의하라.

3.1 지도 1–울루루에 라고 표시된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자제하라.

3.2 울루루의 북동부 사면에 대한 사진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국립공원 미디어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라. 이는 사면에 수 많은 성지들이 분포해 있고, 그 중 일부는 문화적 사유로 지도1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지들은 그림자, 수풀, 사구 등으로 가려지거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사무소 측에서 아낭구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촬영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북동부 사면에 대한 모든 촬영물은 사용 사전에 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4.3–4.9 참조).

3.4 아낭구인은 울루루에 대한 등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등반을 홍보하는 듯한 영상들을 불편해 한다. 울루루를 등반하는 사람의 모습, 등반 베이스, 등반 장비나 등반 중 보이는 경관, 울루루 정상에서의 경관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진은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3.5 호주 국립공원 관리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암면미술(rock art)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아낭구인과의 협의, 그리고 촬영 시 아낭구인 대표의 동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카타츄타(Kata Tjuta)는 신성한 장소이다. 아낭구인의 법에 의해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공개될 수 없으며, 그 내부의 일부 장소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이 특정 장소의 신성성을 존중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지도 2–카타츄타에는 녹화, 촬영, 작화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들이 나타나 있다.

3.6 문화적인 이유로 바람의 계곡(Valley fo the Winds) 산책로를 나타내는 어떠한 녹화, 촬영, 작화도 불가하다.

3.7 카타츄타 내부와 그와 인접한 공공장소에서는 파노라마 녹화, 촬영, 미술활동 등이 가능하나, 신성한 대상에 대한 세부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세 개의 둑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하나의

둘만 나타내어서는 안된다(지도 2 사진 예시 참조).

3.8 월파 협곡(Walpa Gorge)에서 역시 신성한 장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협곡의 양쪽 사면을 모두 나타낸다는 전제 하에 녹화, 촬영, 작화가 가능하다(지도 2 사진 예시 참조).

용어정의: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 아낭구인의 문화적 가치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서구적인 분류체계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아낭구인에게 이 국립공원은 살아있는 경관의 일부이다. 울루루, 식생, 토양, 동물 등의 요소들에는 모두 “자연”과 “문화”, 인간과 경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서양의 구분적,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문화적인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다. 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들은 언어, 노래, 이야기, 미술, 그리고 “츄쿠파”로 관장되는 일련의 문화적 신앙과 관습들로서 표현된다.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은 1994년에 인간에 의한 전통적인 토지사용의 뛰어난 사례로서, 그리고 우수한 보편적 중요성을 갖는 생활전통 및 신앙들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현장으로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성지(Sacred sites): 아낭구인들에게 신성시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아낭구인의 전통에 의거하여 중요성을 갖는 장소이다. 아낭구인의 법은 이 성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그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려지도록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 성지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져서는 안된다.

민감지역(Sensitive sites): 지도 1에 나타난 장소들과, 문화적인 이유로 지도에 나타내어지거나 대중에게 알려질 수 없는 다른 성지를 지칭한다.

추가정보

<http://www.deh.gov.au/parks/uluru/vis-info/permit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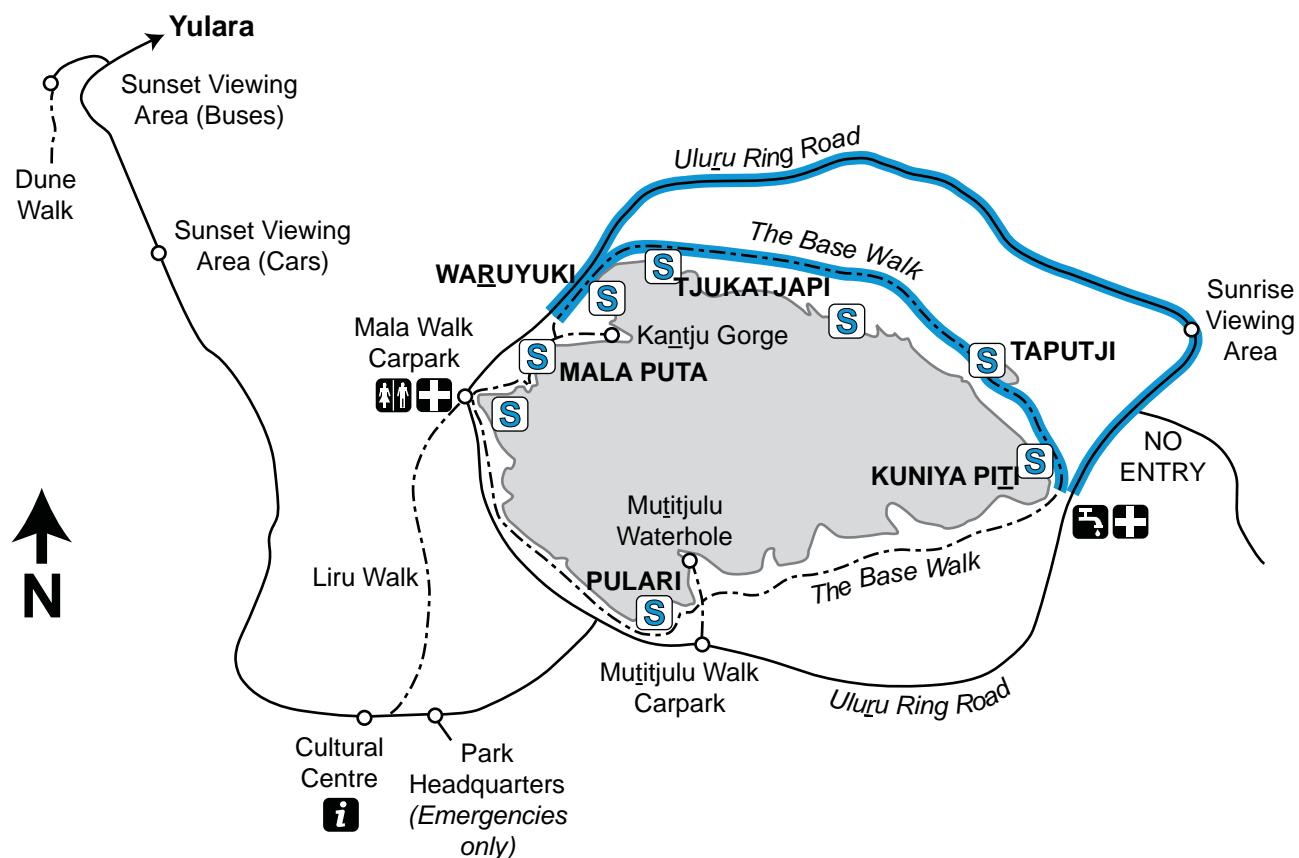
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Media Office
PO Box 119, Yulara, NT 0872

TEL: (08) 89561113 Fax: (08) 89562360
E-mail: uluru.media@deh.gov.au

출처

<http://www.environment.gov.au/parks/uluru/vis-info/permits-image.html>

지도 1. 울루루(Uluru)



Légende

- Eau potable
- Urgence radio
- Toilettes
- Informations
- Route asphaltée
- Piste de promenade

Pas de films, de photos ou de peinture :

- Le long de la section nord de la Ring Road
- Le long de la section nord de la Base Walk
- Points de vue de Sites sensibles

부록 3

UN의 원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 2007

상업목적의 사진촬영, 사용, 상업적 음성녹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주요 위원회 참조 없음(A/61/L.67 and Add.1)]

61/295. 국제연합(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본 총회는

2006년 6월 29일자로 채택된 결의안 1/2 에 포함된 인권 위원회의 권고안과 이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받아들여,

본 결의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심리와 행동을 연기하며, 이러한 심리의 완료 기일을 제61차 총회 회기의 종료 이전으로 결정하였던 2006년 12월 20일자의 결의안 61/178을 상기하며,

현 결의안에 국제연합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부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택하는 바이다.

제107차 총회
2007년 9월 13일

부록

국제연합(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본 총회는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가이드라인 삼아 신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이 헌장에 의거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신뢰하고,

원주민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고, 동시에 모든 민족이 서로 간에 차이를 가질 권리, 스스로의 차이를 주장할 권리, 그리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또한, 모든 민족이 인류의 공동유산을 구성하는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성에 기여함을 확인하며,

또한, 국적, 인종, 종교, 민족, 문화에 따른 차이에 근거하여 특정 민족 또는 개인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사상에 기반한 모든 주의, 정책, 관행은 인종주의적이고, 과학적으로 거짓이며, 법적으로 무효이고,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의함을 확인하며,

원주민들은 그들의 권리 행사를 있어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함을 재확인하며,

원주민들이 특히 그들의 토지, 영토, 자원의 식민화와 탈취 등으로 인한 역사적 부당행위의 피해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자주적인 필요와 이해에 부합한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원주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영적 전통, 역사, 철학으로부터 도출되는 내재적 권리들과, 특히 그들의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신장시킬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며,

또한 조약, 협정 등 국가 간 건설적 합의를 통해 확인된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 및 신장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며,

원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모든 장소에서의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원주민들과 그들의 토지, 영토, 자원에 영향을 주는 개발 과정에 원주민들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원주민들의 제도, 문화, 전통을 유지, 강화하고 원주민들이 자신의 염원과 필요에 부합하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¹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53 (A/61/53), part one, chap. II, sect. A 참조

원주민들의 지식, 문화, 전통관습에 대한 존중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개발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리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원주민들의 토지, 영토에 대한 비무장화가 평화, 경제적, 사회적진보와 발전, 그리고 세계 각국과 각 민족 간 이해와 친교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특히 원주민 가족, 공동체들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원주민 아동들의 양육, 훈련, 교육,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권리를 인정하며,

조약, 협정 등 국가와 원주민 간의 건설적 합의를 통해 확인된 권리도 일부 경우에는 국제적 성질을 가지며 국제적 우려, 관심, 책임의 대상인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며,

또한 조약, 협정 등 건설적 합의와 그로 생성되는 관계는 원주민과 각 국가 간의 강화된 동반자관계의 기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며,

국제연합 헌장,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²,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등은 원주민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자결권의 근본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본 선언문의 어떠한 문구도 국제법에 부합한 원주민들의 자결권 행사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음을 유념하며.

본 선언문에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정의, 민주주의, 인권 존중, 비차별, 신의성실 등의 원칙에 근거한 각 국가와 원주민들 간의 조화롭고 협조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각 국가가 특히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기구들 하에서 관련된 민족과의 협의, 협동 하에 원주민과 관련된 그들의 모든 책무를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장려하며,

국제연합은 원주민의 권리를 신장 및 보호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본 선언문이 원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 신장, 보호하고, 이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국제연합 체계의 활동을 발전시키는데에 있어 중요한 전진을 나타냄을 확신하며,

원주민 개인들은 차별 없이 국제법 상에 인정된 모든 인권을 가지고, 그 존재, 안녕, 핵심적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집단적 권리를 보유함을 인정 및 재확인하며,

원주민들의 상황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다음 국제연합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동반자적 정신과 상호존중 하에 추구되어야 할 성취기준임을 염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제1조

원주민은 집단으로 혹은 개인으로서,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원주민집단과 개인은 자유롭고 모든 다른 민족 및 개인과 평등하며, 그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특히 그들의 고유한 기원 또는 정체성에 근거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원주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자결권에 기초하여 원주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제4조

원주민은 자결권 행사에 있어 그들의 내부적 혹은 지역적 사안에 관련된 사항 및 그들의 자치적 기능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해 자치적으로 또는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원주민은 그들의 독특한 정치적 · 법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할 권리를 가지며, 이와 동시에 그들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² 2200 A (XXI), annex.

³ A/CONF.157/24 (Part I), chap. III

⁴ Resolution 217 A (III).

제6조

모든 원주민 개개인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

1. 원주민 개개인은 생명, 신체적·정신적 일체성,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원주민은 독특한 성격의 집단으로서 자유, 평화, 안전 속에 살 수 있는 집단적 권리를 가지며, 집단학살 또는 원주민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이주 시키는 등의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당해서는 안 된다.

제8조

1. 원주민 집단과 개개인은 강제적 동화 또는 그들의 문화를 파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국가는 다음의 사항을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효율적 기제를 제공해야 한다.
 - (a) 독특한 성격의 집단으로서의 일체성, 문화적 가치,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박탈할 목적을 갖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
 - (b) 그들의 토지, 영토, 자원의 박탈에 목적을 두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
 - (c) 그들의 권리를 침해 또는 훼손하는 것에 목적을 두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강제이주
 - (d) 입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다른 문화 또는 삶의 방식과의 동화 또는 통합 강요
 - (e) 그들에 대한 인종적 혹은 민족적 차별을 장려하거나 선동하는 모든 형태의 선전활동

제9조

원주민 집단과 개인은, 공동체 또는 민족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어떠한 원주민공동체 혹은 민족에 속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 행사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제10조

원주민은 그들의 토지나 영토에서 강제로 이주당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루어진 원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에 대한 합의 없이, 가능한 경우 귀향의 선택권에 대한 동의 없이 어떠한 강제이주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11조

1. 원주민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실행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고고학적 및 역사적 유적지, 유물, 도안, 의식, 기술, 시각적·행위적 예술, 문학 등을 통해 그들 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국가는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주민들의 사전동의 없이, 또는 그들의 법률, 전통, 관습을 침해하며 갈취되었던 문화적, 지적, 종교적, 정신적 자산들에 대해, 원주민들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국가배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1. 원주민은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전통, 관습, 의식을 실현, 실천, 개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중요 장소를 유지, 보호하며, 그에 외부 간섭 없이 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종교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유해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해당 원주민과 협의를 통해 발전시킨 투명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과 유해를 송환하고, 원주민이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1. 원주민은 그들의 역사, 언어, 구두전승, 철학, 표기체계 그리고 문학을 활성화시키고 사용, 개발하며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동체, 장소, 사람에게 그들의 고유한 이름을 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적합한 수단을 통해 원주민이 정치적,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해하고 또 이해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1. 원주민은 교육과 학습에 있어 그들에게 맞는 문화적 방법과 그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체계와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2. 원주민, 특히 원주민 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권리가 가진다.
3. 원주민, 특히 원주민 아동과 공동체지역 밖에 거주하는 원주민 아동을 위하여, 국가는 원주민과 협력하여 그들 고유의 문화적 방식과 언어로 제공되는 교육을 접할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 원주민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 역사, 열망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교육과 공공정보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 국가는 해당 원주민들과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편견과 싸우고 차별을 철폐하며 원주민과 다른 사회 집단들 간의 관용, 이해 및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 원주민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론매체를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비원주민 언론매체에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국영 언론매체가 원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언론매체가 원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7조

- 원주민은 적용 가능한 국제 그리고 국내 노동법이 규정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원주민과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원주민 아동의 취약한 상황과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착취,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저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원주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원주민은 노동조건, 즉 고용과 임금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원주민은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 고유의 의사결정 기구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국가는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입법화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원주민들의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기반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그들의 대표기구를 통해 해당 원주민과 신의를 가지고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20조

- 원주민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와 기구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생계와 발전을 위한 수단의 향유를 보장받고, 그들의 모든 전통적, 여타 경제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가진다.
- 생계와 발전을 위한 수단을 박탈당한 원주민들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 원주민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특히 교육, 고용, 직업훈련, 재훈련, 주거, 위생, 건강과 사회보장의 영역을 차별 없이 향상시킬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원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주민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그들의 특수한 욕구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22조

- 이 선언을 이행함에 있어 원주민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그들의 특수한 욕구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
- 국가는 원주민 여성과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원주민들과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원주민은 그들의 발전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특히, 원주민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주거, 여타의 경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가지며, 가능한 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들의 기관을 통해 스스로 운영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 원주민은 필수 약용 식물과 동물, 광물질에 대한 보존을 포함하여 전통적 약술과 의료행위를 유지시킬 권리가 가진다. 또한 원주민은 모든 사회적, 의료적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진다.
- 원주민은 획득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25조

원주민은 점유 등의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소유, 사용하여 온 토지나 영토, 물과 해안 연안, 여타의 자원들에 대해 그들이 가지는 특유의 정신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권리가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책임을 전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 원주민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소유, 점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 획득한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원주민은 전통적 소유, 또는 다른 방식의 전통적 점유 또는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한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하여 소유, 이용, 개발, 통제의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이러한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법적 인정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인정은 해당 원주민의 관습과 전통, 토지 소유체계에 대한 적절한 존중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해당 원주민과 협의하여, 원주민의 법, 전통, 관습, 토지 소유체계를 적절히 승인하는 가운데,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 사용해 왔던 토지, 영토, 자원에 관해 원주민의 권리를 승인하고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평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개방되면서 투명한 과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28조

- 원주민은 전통적으로 소유해왔거나 다른 방식으로 점유, 사용해왔으나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전동의 없이 몰수, 취득, 점유, 사용 또는 손상을 입은 토지, 영토 및 자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하고 공정하며 평등한 배상을 통한 구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당 원주민에 의한 자유로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동일한 질과 규모, 법적상태의 토지, 영토, 자원의 형태로 또는 재정적인 보상 혹은 다른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9조

- 원주민은 토지, 영토, 자원의 환경과 생산적인 역량을 보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각국은 원주민이 그러한 보전과 보호를 차별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국가는 원주민의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전 동의 없이, 그들의 토지와 영토에서 위험 물질의 저장 또는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는 원주민의 건강을 모니터, 유지,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그러한 위험 물질에 영향받은 사람에 의해 개발, 시행되도록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

- 공적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위협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관련 원주민에 의해 자유롭게 동의되거나 요청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주민의 토지 또는 영토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 국가는 군사행동을 위해 원주민의 토지와 영토를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특히 그들의 대표기구를 통해 관련 원주민과 효과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제31조

- 원주민은 인적·유전적 자원, 종자, 의약품, 동물지 및 식물지에 대한 지식, 구전, 문학, 디자인, 스포츠와 전통놀이, 시각 및 행위 예술 등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표현과 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적 문화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한 원주민은 그러한 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적 문화표현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유지,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원주민과 협력하여, 그러한 권리들의 향유를 승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

- 원주민은 그들의 토지, 영토, 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원주민의 토지와 영토,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특히 그들의 광물, 수자원 또는 기타 자원의 개발, 이용, 채취와 관련된 사업을 허가하기 이전에, 원주민의 대표기관을 통해 해당 원주민들과 신의에 근거한 협의, 협력을 수행하여, 원주민들의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근거한 사전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각국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상을 위한 효과적 기제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

1. 원주민은 그들의 관습 및 전통과 조화되는 정체성 또는 멤버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주민 개개인의 권리로 해쳐서는 안 된다.
2. 원주민은 스스로의 절차에 따라 자신들 기구의 구조를 결정하고 구성원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원주민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한 그 제도적 구조와 고유한 관습, 종교, 전통, 절차, 관행, 그리고 기준에 존재하였던 경우 사법적 체계와 관습 등을 증진, 발전, 유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원주민은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1. 원주민은 국경으로 인해 지역이 나뉘어 거주하는 경우, 국경을 통해 분리된 자신의 구성원들 및 여타의 사람들과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 접촉, 관계,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원주민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37조

1. 원주민은 국가 또는 그 승계국과 체결한 조약, 협정, 여타의 건설적 합의를 승인, 준수, 시행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조약, 협정, 여타의 건설적 합의를 지키고, 존중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선언의 어떠한 부분도, 조약, 협정, 여타의 건설적 합의에 포함된 원주민의 권리를 축소 또는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38조

국가는 원주민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이 선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제39조

원주민은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원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원주민은 그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권리의 모든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다른 당사자와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당하고 공평한 절차들에 접근할 수 있고 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유엔의 기관과 전문기구 및 여타의 정부간기구들은 재정적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 선언 조항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원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원주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이 확립되어야 한다.

제42조

‘원주민 문제에 대한 상설포럼’을 포함한 유엔기관, 국가 차원의 기구를 비롯한 전문기구와 국가들은 이 선언의 조항에 대한 존중과 완전한 적용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 선언의 효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3조

이 선언에서 승인된 권리들은 세계 모든 원주민의 생존과 존엄,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구성한다.

제44조

이 선언에서 승인된 모든 권리와 자유는 남성과 여성 원주민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

제45조

이 선언의 어떠한 부분도 원주민이 현재 소유하거나 또는 미래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축소와 소멸로 해석될 수 없다.

제46조

1. 이 선언은 어떠한 국가, 민족, 집단 또는 개인에게도 유엔헌장에 반하는 어떤 행동에 관여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이 선언에 공표된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들의 행사는 국제적 인권의무에 근거한 법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은 법적 승인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그리고 민주사회의 공평하고 가장 시급한 요청을 위해, 비차별적이거나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존재한다.
3. 이 선언의 조항은 정의, 민주주의, 인권, 평등, 비차별, 선정, 신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부록 4

IUCN 원주민과 보호지역에 대한 결의안, 1996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결의안 1.53 – 원주민과 보호지역(1996년 10월)

일부 보호지역이 원주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 그들의 토지와 영토에 지정되었음을 상기하고,

ILO Convention No 169와 생물다양성협약 중 생물다양성의 관리, 사용, 보전에 있어서의 원주민의 역할에 대한 조항을 고려하며,

의제 21(Agenda 21)에서 확립한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며,

“지구를 염려하며–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략(Caring for the Earth–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원주민의 역할과, 자연자원의 관리에 있어서의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강조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제IV차 세계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총회(IVth World Congress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에서 원주민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보호지역 관련 정책의 개발을 촉구하였음을 고려하며,

일부 국가의 정부에서는 이미 원주민들의 토지, 영토 내에 보호지역을 설립 및 관리함에 있어 그들의 권리와 이해를 완전히 고려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도입하였음을 인식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는 1996년 10월 14일~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본 총회는

1. IUCN의 사무총장, 사무국, 기술 프로그램, 위원회, 회원, 이사들이 주어진 자원의 한계 내에서 원주민의 토지와 영토 내에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지지, 지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a) 보호지역 내에 포함되는 원주민의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그들의 권리의 인정
 - (b) 원주민의 토지, 영토 내에의 보호지역 지정 사전에 원주민들과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의 인식
 - (c) 관련 원주민들이 그들이 토지, 영토에 설립된 보호 지역의 관리에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들의 토지, 영토에 대한 권리와 이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의 채택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
2. 모든 IUCN 회원국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보호지역과 원주민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원칙에 부합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기제를 마련할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
3.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가 원주민의 단체와 보다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면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의 적용에 있어 원주민의 권리와 이해가 충분히 대변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촉구한다.
4. IUCN 사무총장이 주어진 자원의 한계 내에서 보호지역, 자연유산에 대한 IUCN의 업무에 위의 원칙에 기반한 적정한 정책의 추가적인 개발과 시행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부록 5

원주민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정의

A. 원주민(Indigenous) 및 부족민(Tribal Peoples)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정의

C169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1.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집단에 대하여 적용된다:

- (a) 독립국가의 부족민으로서 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국가공동체의 나머지 부문과 구분되며, 그 지위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스스로의 관습, 전통, 또는 특별법, 특별규정에 의해 관할되는 집단.
- (b) 독립국가의 민족으로서 점령, 식민화, 현행 국경 확립의 시기에 해당 국가, 또는 그 지리적 지역에 거주하였던 인구를 계승하고 있음으로 인해 원주민으로 간주되고 있고,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스스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

2. 본 협약의 조항이 적용되는 집단을 판별함에 있어 원주민, 또는 부족민으로서의 자아정체감(self-identification)이 근본적인 기준을 구성하도록 한다.

B. 지역공동체의 정의(Borrini–Feyerabend *et al.*; 2004)

지역공동체

공동체란 영토를 공유하며 자연자원의 관리, 지식 및 문화의 생산, 생산기술 및 관행의 개발 등 서로 다르지만 연관되어 있는 생계활동에 참여하는 인간 집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규모에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인간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도시도 공동체인가? 특정 분수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집합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란 면대면으로 만나고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상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농촌마을, 이동목축을 수행하는 씨족집단, 도시 내 한 동네의 주민 등은 “지역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도시의 동, 구, 또는 농촌 시가지의 주민들 전부는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이룬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영구적으로 정착해 있을 수도 또는 유목생활 하에서 조성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켜 왔다. 공동체는 고유한 사회조직 형태를 보유하며, 그 구성원은 다양한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공유한다(특히 언어, 행동규범, 가치관, 염원, 건강 및 질병 양태 등). 공동체는 또한 과거 또는 현재에 구체적인 역량과 권한을 보유한 미시정치적 기구로서 기능하였거나 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과정에는 사회통합(공동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회갈등(공동체의 개별 구성원, 가족들 간 필요와 욕구의 충돌), 문화적 지속과 문화적 변화 등이 포함된다.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기제에는 호혜성의 양식(혼인 또는 경제적 교역의 교환관계), 재배분(개인, 가족 간 경제적 잉여자산의 공유) 등이 있다. 갈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에는 청년층과 장년층,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공동체 구성단위(가구) 또는 하위집단(씨족, 계급, 직종, 카스트, 이해관계에 따라 얹힌 집단 등) 사이에 권력과 지위의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권력 차이는 자원(토지, 자본, 물, 나무,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지며, 일부의 경우 착취(공동활동에서 다른 구성원들보다 큰 이윤을 얻는 행위), 축적(잉여자산 공유의 회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분리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사회적 조직으로서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갈등과 통합, 지속과 변화라는 상반된 세력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 특정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그를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6

제V차 IUCN 세계공원총회(WPC), 2003: 더반협정 및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권고안

우리는 제V차 IUCN 세계공원총회 3,000명의 참석자로서, 보호지역의 발전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가장 큰 영감과 영성을 제공하고, 생물종과 생태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하며, 식량, 공기, 물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이며, 기후의 안정화에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독특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유하여 인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장소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한다. 이러한 보호지역의 보전의 혜택과 공평한 분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

축하의 이유

우리는 자연의 다양성과, 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 지혜, 지식을 보유한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또한 지역공동체, 원주민, 각국 정부, 민간부문의 개인, 자원봉사 단체들이 자연보전 분야에서 거둔 성공과, 보호지역이 자연적, 문화적, 영적인 수렴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축하한다.

우려의 이유

우리는 대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유한 수 많은 지역이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지역공동체, 유목민족, 원주민족 등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 보전되어 온 수 많은 장소들이 적절한 인정, 보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보호지역 밖에 위치한 야생지, 자연지의 면적이 지난 20년간 절반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생물학적 다양성 역시 대규모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약속과 행동의 촉구

우리는 생물다양성,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위협의

즉각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전세계적인 보호지역 체계를 확장하고 강화하도록 약속을 촉구한다.

우리는 보호지역의 지정, 선포, 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 원주민, 유목민족이 참여하도록 약속을 촉구한다.

우리는 빈곤을 경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의 보호지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촉구한다.

우리는 원주민, 유목민, 지역공동체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의 보호지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동체보전지역의 인정, 강화, 보호, 지원을 위한 약속을 촉구한다.

우리의 다짐

열린 대화를 위한 통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강한 약속마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화는 겸손, 신뢰성, 믿음의 분위기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와 협조를 촉진하기로 다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기로 다짐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자연과의 보호적 동반자 관계 확립 여부에 달려 있다는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기로 다짐하고, 보호지역을 귀중한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 남길 것을 다짐한다.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세계공원총회(WPC) 권고안 V.13

보호지역의 지정은 인간 사회가 자연, 생물다양성, 그리고 특별한 문화적 가치 및 중요성을 보유한 지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식적 선택을 한 결과물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영감, 치유를 얻거나, 평화, 교육, 자연 세계와 소통 등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하기 위한 등 정신적 이유로 보호지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초경계적 보호지역은 이미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으로서 홍보 및 관리되고 있으며, 민족, 국가, 공동체 간 평화구축에 있어 유형적이고 가치가 큰 차원을 더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자연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지구의 생명의 보전을 위한 인류의 가장 높은 열망과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깊은 경외심과 윤리적 실현을 반영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주민 사회나 전통사회 등의 상당수 사회는 자연의 신성성을 전제하는 세계관과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 대해 갖는 불가분적 연결관계를 사회적, 문화적 선택으로서 표현한 결과로 성지를 지정하고 지리적 영역, 자연, 생태계, 생물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관습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들은 또한 성지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고유한 원천이며, 따라서 대학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성지는 원주민 및 전통사회 구성원에 의해 경외와 보호의 대상이 되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공동체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영토의 근본적인 일부분을 구성한다.

일부의 경우 원주민 등이 성지의 기준 보호지역 체계의 일부로서의 인정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광범위한 지지 형성을 위한 워크숍(Building Broader Support Workshop Stream)”에서 이루어진 “보호지역을 위한 문화적 지지 구축(Building cultural support for protected areas)”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보호지역체계가 보호지역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보전에 대해 문화기반 접근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03년 9월 8일~17일에 개최된 제V차 IUCN 세계공원총회의 보호지역을 위한 광범위한 지지 구축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1. 원주민이 그들의 성지, 고고학적, 문화적 유산, 의식용구, 보호지역 내부 또는 인근의 박물관 소장품에 포함된 유해 등을 소유하고 통제할 국제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인정하라. 이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포함된다:

(a) 원주민이 그들의 성지, 성물, 선조들의 유해, 고고학적, 문화적, 지적 유산 등을 정의하고, 그에 대해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할 권리

(b) 필요한 경우 원주민들이 위와 같은 그들의 유산, 유물, 유해, 장소 등에 대해 비밀성을 유지하고, 외부 간섭없이 사적으로 그를 누릴 수 있는 권리

(c) 원주민이 그들의 충분한 정보와 자유의사에 근거한 사전동의 없이 강탈된 성지, 유산, 유물, 유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

(d) 원주민이 관습에 따라 의식과 종교적, 정신적 관행을 자유로이 실천할 수 있는 권리

(e) 원주민이 성지 또는 고고학적, 문화적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의식, 관습에 사용되는 동·식물 등 자원을 채집, 채취할 수 있는 권리

(f) 원주민이 선조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를 유지할 권리

2. 따라서 국제기구, 정부, 보호지역 관리당국, 비정부기구, 종교, 사용자 단체 및 이해단체 등이 자연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위에 명시된 권리는 완전히 인정 및 존중할 것을 권고한다.

3. 각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을 권고한다:

(a) 보호지역체계에 대하여 다문화적 가치관과 접근들을 육성하는 법률, 정책을 발전, 도입

(b) 특히 원주민과 전통민족의 성지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관리에 대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법률, 정책을 발전, 도입

(c) 관련 민족 및 공동체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참여와 동의 하에 성지의 온전성을 보호하는 법률, 정책을 도입, 집행

(d) 성지에 대한 배상과, 지역공동체, 원주민이 주도하는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의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정책을 도입, 집행

(e) 원주민, 지역공동체에 의한 성지의 통제와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체 보전지역과 같은 혁신적 거버넌스 모델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법률, 정책을 발전, 도입

(f) 성지를 포함한 문화적, 정신적 중요지역에 대한 공동체 보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 행동을 발전, 시행

(g) 성지의 관습적 사용과 관리를 존중하고 전통문화 계승인의 보호지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 법적 조치를 도입, 집행

4. 이에 더하여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에 대하여 다음을 권장한다:

(a) 특히 지역적 수준에서 보호지역체계, 보호지역 지정, 목표설정, 관리계획, 구획, 관리인 교육 과정에서 모든 물질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에 대하여 균형잡힌 관심이 기울여지도록 보장

(b) 원주민, 전통사회 구성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그들의 권리와 이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성지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

(c) 특히 성지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과 존중심 함양을 위한 공공교육, 미디어 캠페인을 개발, 시행

5. 보호지역 관리자들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a) 보호지역 내 성지를 신성시하는 집단의 참여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하에 그들을 식별, 인정하고, 이 성지들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b) 원주민, 지역공동체 등 자연보전과 연관된 당사자들간의 문화 간 대화와 분쟁해소 촉진

(c) 이러한 공동체가 스스로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와 보호지역 관련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지원

(d) 이러한 사안에 있어 원주민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촉진

6. 모든 보호지역 카테고리에서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IUCN에 1994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이와 같은 가치들이 관리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테고리들에 그 내용의 추가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7.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와 그 회원들에게 IUCN 프로그램의 보호지역 요소 내에서 위와 같이 권고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 및 증진 활동은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부록 7

델로스 구상의 몬세라트와 우라노폴리스 선언

선진국 내 자연성지에 대한 몬세라트 선언(Montserrat Statement)

IUCN/WCPA 델로스 구상(Delos Initiative)의 틀에서 보호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T/F의 일부로서 2006년 11월 23일~26일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개최된 자연과 영성에 대한 몬세라트 워크숍(Montserrat Workshop on Nature and Spirituality)에서 제시된 3개 대륙의 논문 및 사례연구를 고려하고,

기독교 수도원, 불교 사찰,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환경 당국, 환경보전단체 등의 대표, 그리고 학자, 개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8개국 출신의 40명의 참석자의 지식과 경험을 기본을 삼아,

델로스 구상이 기술선진국의 자연성지에 대하여 지난 2년간 달성한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선진국의 자연성지도 무지와 방관으로 인해,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정신적 실패,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 사업 및 자원개발, 도시화, 대규모 관광, 적정한 토지용도 계획 및 통제 기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절감하며,

본 워크숍의 참석자들은,

신성성은 자연보전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동인이자 현실로서, 경외, 송상, 존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성지, 신성한 경관, 생물종, 또는 기타 구체적인 신성한 요소들의 지정은 과거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자연보전 기제로서 기능하여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국지적인 중요성 만을 가지지만, 반면 광범위한 집단, 문화, 전통, 지역에 걸쳐 중요성을 갖는 신성한 대상도 있었다;

자연에 문화적,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내재적인 가치와 의미들이 서려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이 다양한 신앙과 영적 전통의 구성원에게 보다 심오하고 신성한 현실의 신적인 현현으로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나아가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자연보전 목표, 계획, 메세지가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가치, 신앙, 사상, 관습 등에 근거하여야 함을 인식한다. 자연보전 부문은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보호지역 보전에 있어 이러한 근본적 가치, 신앙, 사상, 관습에 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도전과제인 동시에 현재까지의 자연보전 양상이 물질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던 동반자,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자연보전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보전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다;

선진국 내에서 모든 IUCN 보호지역관리 카테고리 보호지역 내에 자연성지가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 및 확인한다;

나아가서 보호지역 내 성지의 영적 측면이 관련 신앙의 구성원 사이에서 자연유산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신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연보전 구상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보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성지 관리주체의 통시적 권리는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한 대중, 민간개발, 정치적 무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지역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리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보호지역에 대한 적정한 관리는 자연성지의 정신적 가치를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지역 뿐 아니라 자연계 전반에 걸쳐 자연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의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함을 인정한다;

나아가서 자연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 간의 긍정적 시너지가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한 성지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자연보전의 지지와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시너지는 성지의 전통적 관리주체와 보호지역 관리당국이 서로의 특혜와 책임에 대한 상호존중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긴밀하고 공정한 협력을 수행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양 당사자 간 대화는 장려, 강화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공동행동의 목표와 요건이 완전히 이해되고, 양측의 관점을 통합하는 공동의 언어와 접근법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아가서 향후에는 자연성지에 있어서 영적, 자연적 보전목표를 모두 고려하고, 모든 관계인의 완전한 참여 하에 마련되어야 할 통합적 관리계획의 개발과 시행을 목표로 노력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자연성지의 문화적, 자연적, 정신적 가치와 관련한 모든 관리조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광범위한 참여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주민, 전통사회, 소수자에게 신성시되는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신규 이민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다;

여러 신앙이 공존하는 장소에서는 관점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자연보전에 있어서 이 신앙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들을 강조하는 협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성지와 관련하여 협조와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교육과 예술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델로스 구상이 영성-신앙 집단들과 자연보전기관 간의 통합과정을 촉진하고, 자연성지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하기 위한 업무를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몬세라트 수도원, 몬세라트 산 이사회, 카탈로니아 정부 환경주택부, 카탈루냐 저축은행(Catalunya Savings Bank)의 Fundació Territori i Paisatge, 그리고 몬세라트 워크숍을 훌륭하게 조직한 델로스 조정조직(Delos Co-ordination)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선진국 내 자연성지에 대한 우라노폴리스 선언(Ouranopolis Statement)¹

본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HAH 바르톨로메오스(HAH the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의 영감을 주는 말씀을 고려하고;

아토스 산의 성스러운 공동체(Holy Community of Mt. Athos)와 할키디키(Halkidiki) 지역 대표의 델로스 2 워크숍 (Delos 2 Workshop)에 대한 환영사의 긍정적 내용을 염두에 두며;

11개국 출신 22명의 워크숍 참석자들이 사례연구, 논문, 논의를 통해 워크숍에 기여한 내용들을 고려하며;

지난해 델로스 구상의 틀에서 수행된 업무를 평가하며;

본 워크숍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워크숍에서 제시된 사례연구의 교훈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협력과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정한 방식으로 법적인 토지, 자원 소유권 및 사용권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장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권리기반적 접근법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권한부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적절한 방식을 통해 자연성지의 관리주체와 보호지역의 관리당국, 그리고 여타 이해당사자의 상호적 이해, 민감성, 역량이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관련된 자연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의 보전을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 주체들 간 연구와 학습을 위한 공동 접근법의 확립이 촉진되어야 한다.

자연성지 관리주체들은 보호지역의 관리계획 개발 과정과 보호지역 관리구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기여는 충분히 인식 및 장려되어야 한다.

자연성지의 관리주체들이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정한 조치들이 관리계획과 공공사용 규정들에 포함되어야 하고, 동시에 고도로 민감한 자연지역에 대한 방문자 접근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¹ IUCN/WCPA와 그 산하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T/F의 틀에서 2007년 10월 24일~28일 그리스 우라노폴리스에서 개최된 델로스 구상 워크숍의 결론

이에 더해 본 워크숍의 참석자들은 다음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 샌프란시스코 성산(Holy San Francisco Peaks)을 스키리조트로의 개발 시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북미 인디언의 노력은 지원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람사르협약은 마니산 갯벌을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람사르 습지로 인정함으로써 그 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솔로베즈키 세계유산지를 문화유산(1992년에 이미 지정)과 자연유산으로 모두 지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장려받아야 하며, 그로써 이 장소의 통합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 크레테 카니아(Chania, Crete)의 크리소피기 수도원 (Holy Convent of Chrysopighi)이 인근의 자연적,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을 관광 및 개발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노력들은 현지 정부 당국의 협력을 통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연성지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노력들을 강화하도록 장려받아야 한다.

수도원 소유지의 관리

보호지역 관리자와 관련 정책결정자들은 수도원(Monastic sites)과 그 소유의 토지의 신성성을 존중하고, 계획, 관리, 평가 과정에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도원 공동체 역시 그 토지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을 취할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리계획과 평가에 대한 공동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양측 모두의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성지(Monastic sacred sites)들은 교육, 공공인식에 있어 유용한 기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관련 보호지역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수도적 금욕주의의 원칙과 관행은 생태적 생활양식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있어 심도 깊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크리소피기 수녀원의 사례를 통해 예증된다.

같은 맥락에서, 유력 과학자들과 정부기관의 지원 하에 성스러운 수도 공동체 산하의 관리기구를 확립함으로써, 특별환경연구와 그 산하 독립 영토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 그리고 그 시행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아토스 산성스러운 공동체의 바람직한 구상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선진국 내 자연성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류신앙의 당국자들과 신자들 모두가 자연보전 및 환경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하여 민감성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지의 보전에 대한 보호 자연지역의 잠재적 기여도는 강화되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의 원주민의 성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개발 압력으로부터 보호 등을 위한 특별한 존중과 배려가 부여되어야 한다.

델로스 구상의 WCC에 대한 입장²

우라노폴리스 워크숍과 몬세라트 워크숍 회의록은 자연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와 모든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민감성을 보유한 자연보전 접근법들의 시행에 대한 현재진행형의 대화에 대한 델로스 구상의 기여로, 이들이 WCC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그 발간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델로스 구상은 2008년 완료를 목표로 계속 진행중인 UNESCO/IUCN의 자연성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델로스 구상은 또한 2008년~2010년의 3년간 주류신앙 대상의 선진국 내 자연성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작을 위한 체계적 작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성지에 대한 추가적 사례연구가 델로스 구상의 틀에서 분석되어 보다 사례들의 지리적 분포가 보다 균형잡힐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신앙을 대표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확보하며, 그를 기반으로 한 우수사례의 배포와 그에 대한 모방의 장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델로스 구상은 WCPA 산하 보호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T/F의 틀 하에서 2008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관련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² IUCN Fourth World Conservation Congress, Barcelona, Catalonia (Spain), October 2008.

델로스 구상은 그 작업물 중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그리고 특히 세계유산협약과의 시너지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의 말

창조론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옹호하는 신앙을 모으는 데에 광범위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HAH 바르톨로메오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델로스 2 워크숍에 대한 그의 조언의 메세지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사의를 표한다.

아토스 산 신성 공동체, 그리스 환경, 물적계획, 공공공사부, 북부 그리스의 할키디키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참여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테살리아 메테오라에 위치한 발람 수도원(Sacred Monasteries of Varlaam), 할키디키에 소재한 오르밀리아 수도원(Assumption in Ormylia)의 참석자들이 제공한 환대와 유용한 정보에도 감사를 표한다.

효율성, 민감성을 갖추고 본 워크숍을 조직하고, A. G. Leventis 재단의 지원 하에 그 비용을 부담한 지중해 자연과 인류 연구소(Med-INA: Mediterranean Institute for Nature and Anthropos)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부록 8

인터넷 및 기타 자료

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www.cbd.int/cepa/resources.shtml>

IUCN Commission 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http://cec.wcln.org>

Sacred Land Film Project: <http://www.sacredland.org> – produced the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 on sacred natural sites,

In the Light of Reverence, which is distributed by: <http://www.bullfrogfilms.com/catalog/ilr.html>

Community Conserved Areas

IUCN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No. 11 –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tected Areas* (contains a full chapter on CCAs): <http://www.iucn.org/themes/ceesp/Publications/TILCEPA/guidelinesindigenouspeople.pdf>

TILCEPA briefing note on CCAs:

http://www.iucn.org/themes/ceesp/wkg_grp/tilcepa/CCA%20Briefing%20Note.pdf

More material on CCAs: www.tilcepa.org

Conflict management in natural resources and generally

IDRC: http://www.idrc.ca/en/ev-28105-201-1-DO_TOPIC.html

Harvard Program on Negotiation: <http://www.pon.harvard.edu/research/projects/hnrp.php3>

Conservation, ecology and religion

Alliance of Religion and Conservation (ARC): <http://www.arcworld.org>

Forum on Religion & Ecology: <http://religionandecology.org>

Delos Initiative: <http://www.med-ina.org/delos/>

Ecosystem approach

Commission for Ecosystem Management: <http://www.iucn.org/themes/cem/ourwork/ecapproach/index.html>

Ethnobotany and plant assessment

People and Plants International: <http://peopleandplants.org>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orest Peoples Programme: http://www.forestpeoples.org/documents/law_hr/fpic_synthesis_jun07_eng.pdf

Indigenous knowledg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www.cbd.int/t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http://www.unesco.org/culture/intangible-heritage/>

Participatory mapping and participatory GIS

Integrated Approaches to Participatory Development (IPAD): <http://www.iapad.org/>

Poverty and environment

Poverty Conservation and Learning Group: <http://www.povertyandconservation.info/>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http://sea.unep-wcmc.org/wdbpa/>

인용문헌

- Adams, J.S. and McShane, T.O. 1992. *The Myth of Wild Africa: Conservation without illusion*. London, UK: W.W. Norton and Co.
- Barnes, 2003. "Wilderness as contested ground". In Harmon and Putney, *op. cit.*
- Barrow, E. and Pathak, N. 2005. "Conserving 'unprotected' protected areas – communities can and do conserve landscapes of all sorts". In Brown *et al.*, *op. cit.*
- Beltrán, J. 2000.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and Protected Areas: Principles, Guidelines and Case Studie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4.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UCN and WWF International.
- Berkes, F. 1999. *Sacred Ecology: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resource management*. Philadelphia, USA: Taylor & Francis.
- Bhagwat, S. and Rutte, C. 2006. "Sacred Groves: potential for biodiversity management". *Frontiers of Ecology and the Environment* 4(10): 519–524.
- Boucher, C. 2002a. *Digging our Roots: the Chamare Museum Frescoes*. Malawi: KuNgoni.
- Boucher, C. 2002b. *The Gospel Seed: culture and faith in Malawi as expressed in the Miso Banner*. Malawi: KuNgoni.
- Borrini-Feyerabend, G., Kothari, A. and Oviedo, G. 2004.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tected Areas: Towards Equity and Enhanced Conservation*. Guidance on policy and practice for Co-managed Protected Areas and Community Conserved Area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11.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UCN.
- Borrini-Feyerabend, G., MacDonald, K.I. and Maffi, L. (Eds). 2004. "History, Culture and Conservation". *Policy Matters* 13. IUCN CEESP.
- Borrini-Feyerabend, G., Pimbert, M., Favar, M.T., Kothari, A. and Renard, Y. 2004. *Sharing Power: Learning-by-doing in Co-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hroughout the World*. CENESTA, Tehran, Iran: IIED and IUCN/CEESP/CMWG.
- Brown, J., Mitchell, N. and Beresford, M. (Eds). 2005. *The Protected Landscape Approach: Linking Nature, Culture and Community*.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UCN.
- Bryceson, D.F and Fonseca, F. 2005. "Risking death for survival: peasant responses to hunger and HIV/AID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V/AIDS, IFPRI South Africa 14–16 April 2005, Durban SA.
- Buckles, D. (Ed.) 1999. *Cultivating Peace: conflict and collaboration i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World Bank Institute.
- Chape, S., Harrison, J., Spalding, M. and Lysenko, I. 2005. "Measuring the extent and effectiveness of protected areas as an indicator for meeting global biodiversity targets". *Phil. Trans. R. Soc. B*. 360: 443–455.
- Chape, S., Blyth, S., Fish, L., Fox, P. and Spalding, M. (Compilers). 2003. *2003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UCN and UNEP-WCMC.
- Chatterjee, S., Gokhale, Y., Malhotra, K.C. and Srivastava, S. 2004. "Sacred Groves in India: an overview". In Dudley *et al.*, *op.cit.*
- Colchester, M. and Ferrari, M.F. 2007. *Making FPIC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work: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Indigenous Peoples*. Moreton-in-Marsh, UK: Forest People Programme.
- Colfer, C.J.P. 1995. Who counts most i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IFOR Working Paper no.7. http://www.cifor.cgiar.org/publications/pdf_files/WPapers/WP-07.pdf
- Cordell, J. 1992. "Who owns the land? Indigenous involvement in Australian Protected Areas". In Kempf, 1992. *op. cit.*
- Cunningham, A.B. 2000. *Applied Ethnobotany: people, wild plant use and conservation*. People and Plants Conservation Series. London, UK: Earthscan.
- De Lacy, T. and Lawson, B. 1997. "The Uluru/Kakadu model: Joint management of Aboriginal-owned national parks in Australia". In Stevens, 1997, *op. cit.*
- Drobyshev, Yu. I., Bazha, S.N., Gunin, P.D., Dugarjav, Ch. and Prischepa, A.V. 2007. "The role of sacred objects in nature conservation of the Baikal Lake basin". UNESCO, 2007, *op.cit.*
- Dudley, N., Higgins-Zogib L. and Mansourian, S. 2005. "Beyond Belief, Linking faiths and protected areas to support biodiversity conservation". A research report by WWF, Equilibrium and The Alliance of Religions and Conservation (ARC). Available at: <http://assets.panda.org/downloads/beyondbelief.pdf>
- Eade, D. 2002. *Development and Culture*. London, UK: Oxfam.
- Edwards, J. and Palmer, M. 1997. *Holy ground: the guide to faith and ecology*. Northamptonshire, UK: Pilkington Press.
- Elias, D. 2003. "Sacred sites in the Tanami Desert, Central Australia". In UNESCO, 2003b, *op. cit.*
- FBD. 2006.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in Tanzania: Facts and Figures*. Dar es Salaam, Tanzania: Forest and Beekeeping Division, Ministry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 FPP. 2004. "Indigenous peoples'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and the World Bank's Extractive Industries Review: An overview". http://www.forestpeoples.org/documents/law_hr/fpic_synthesis_jun07_eng.pdf
- Gilligan, B. 2006. *The National Reserve System Programme 2006 Evaluation*. Canberra, Australia: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www.deh.gov.au/indigenous/publications
- Githitho, A. 2003. "The sacred Mijikenda Kaya forests of coastal Kenya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UNESCO, 2003b, *op. cit.*
- Githitho, A. 2006. "The sacred Mjiikenda Kayas of coastal Kenya: evolving management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UNESCO, 2006, *op. cit.*
- Gokhale, Y. 2003. "Communicating importance of sacred groves to broader audience for conservation of biocultural heritage". Presented at the CSVPA session at the Vth IUCN World Parks Congress.
- Grim, J. (Ed.) 2001. *Indigenous Traditions and Ecology: The Interbeing of Cosmology and Community*. Cambridge, MA, USA: Harvard CSWR.
- Grimble, R., Chan, M.K., Aglionby, J. and Quan, J. 1995. *Trees and Trade-offs; a stakeholder approach to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Gatekeeper Series 52. London, U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
- Harmon, D. and Putney, A. 2003. *The Full Value of Parks: From Economics to the Intangible*. Lanham, MD, USA: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Harmsworth, G. 1998. "Indigenous values and GIS: a method and a framework". *Indigenous Knowledge and Development Monitor* 6(3).
- IFAD. 2005. "Free prior informed consent and beyond: the experience of IFAD". Report from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methodologies regarding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and indigenous peoples. New York, 17–19 January 2005,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Secretariat of the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 ILO. 1989. Convention (No. 169)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in Independent Countries Adopted on 27 June 1989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t its seventy-sixth session – entry into force 5 September 1991.
- IUCN. 1994.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UCN 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UCN. 2008.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s Management Categories. WCPA Draft for discussion.
- Iwatsuki, K. 2006. "Sacred Forests in temples and shrines of Japan". In UNESCO, 2006, *op. cit.*
- Iwatsuki, K. 2007. *Sacred sites and zoning of the Japanese Archipelago*. UNESCO, 2007, *op. cit.*
- Jaireth, H. and Smyth, D. (Eds) 2003. *Innovative governance: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and protected areas*. New Delhi, India: Ane Books.
- Kempf, E. (Ed.) 1992. *The Law of the Mother: Protecting indigenous peoples in protected areas*. San Francisco, CA, USA: Sierra Club.
- Khalid, F. and Thani, A.K. 2007. *Teacher's Guide Book for Islamic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ng conservation of Misali Island – Pemba, Tanzania*. Birmingham, UK: Islamic Foundation for Ec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 Khamaganova, E. 2007. "Sacred Sites: Our pain, hope and strength". *Pachamama: a traditional knowledge newsletter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1).
- Khamaganova, E. 2005. "Protection of sacred sites: global framework and local actions. Lessons from Lake Baikal and the Altai Mountai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UNESCO, 2006, *op. cit.*
- Koohofkan, P. and Boerma, D. 2006.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Globally Important Ingenious Agricultural Heritage (GIAHS)". In UNESCO, 2006, *op. cit.*
- Laird, S.A. 2000. *Bio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equitable partnerships in practice*. People and Plants Conservation Series. London, UK: Earthscan.
- MacDonald, K.I. 2004. "Conservation as cultural and political practice". In Borrini-Feyerabend, MacDonald and Maffi, 2004, *op. cit.*
- Maffi, L. 2004. "Conservation and the 'two cultures' – bridging the gap". In Borrini-Feyerabend, MacDonald and Maffi, 2004, *op. cit.*
- Malhotra, K.C., Gokhale, Y., Chatterjee, S. and Srivastava, S. 2001. *SCOPE Committee Publication*. New Delhi and Bhopal, India: Indian National Science Academy and Indira Gandhi Rashtriya Manav Sangrahalaya.
- Mallarach, J. and Papayannis, T. (Eds). 2007. *Protected Areas and Spirituality. Proceedings of the First Workshop of the Delos Initiative, Montserrat, 23–26 November 2006*. Gland, Switzerland: IUCN and Montserrat, Spain: Publicaciones de l'Abadia de Montserrat.
- Martin, G.J. 2003. *Ethnobotany: A Methods Manual*. People and Plants Conservation Series. London, UK: Earthscan.
- Merkushina, T.P. 2007. "Role of the specially protected areas of the Khanty-Mansiysk Autonomous Okrug – Ugra in preservation of the local sacred natural-historic sites". UNESCO, 2007, *op. cit.*
- Mgumia, F.H. and Oba, G. 2003. "Potential role of sacred groves in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anzania". *Environmental Conservation* 30(3): 259–265.

-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Synthesis*. Washington, DC, USA: Island Press.
- Motonaka, M. 2006. "Sacred sites and pilgrim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In UNESCO, 2006, *op. cit.*
- NMK. 2004. "Sacred Mijikenda Kayas: World Heritage Nomination Dossier". Kenya: National Museums of Kenya.
- Ormsby, A. 2007. "Cultural and Conservation Values of Sacred Forests in Ghana". Paper presented at the Sacred Species and Sites meeting, Cambridge Centre for Landscape and People, 23–28 September, 2007, Cambridge, UK.
- Otegui, M. 2003. "The Wixarika/Huichol Sacred Natural Site in the Chihuahuan Desert of San Luis Potosi". In Harmon and Putney, 2003, *op.cit.*
- Ott, M. 2000. *African theology in images*. Kachere Monograph No. 12. Blantyre, Malawi: Christian Literature Association in Malawi.
- Oviedo, G. 2001. "Notes on the Panel'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Symposium on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Sacred Natural Sites (SNS) fo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Mexico City, June 12, 2001*. Gland, Switzerland: WWF International.
- Oviedo, G., Maffi, I. and Larsen, P.B. 2000.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of the world and ecoregion conser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to conserving the World's biological diversity and companion map.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in the global 200 ecoregions*. Gland, Switzerland, WWF International and Canada: Terralingua.
- Oviedo, G. and Jeanrenaud, S. 2006. "Protecting Sacred Natural Sites of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In Mallarach and Papayannis, 2007, *op. cit.*
- Palmer, M. and Finlay, V. 2003. *Faith in Conservation. New Approaches to Religions and the Environment*. Washington, DC, USA: The World Bank.
- Papayannis, T. and Mallarach, J. (Eds). 2008. *Proceedings of the Second Delos Workshop, Ouranoupolis, Greece, October 2008*. IUCN and Med-INA, Athens, Greece.
- Phillips, A. 2003. "Turning ideas on their head: the new paradigm for protected areas". *The George Wright Forum* 20(2).
- Phillips, A. 2005. "Landscape as a meeting ground: Category V Protected Landscapes/Seascapes and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In Brown *et al.*, *op.cit.*
- Pumarejo, A. and Berges, G. 2005. *Shamanism and the Forces of Nature: An analysis of the cosmovision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sacred sites*.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Nature Conference, April 27–30, 2005. Music for the World, WWF & IUCN.
- Rabetariana, H. and Schachenmann, P. 2003. "Past, present and future of cultural and sacred sites in Madagascar. The Importance of Sacred Natural Sit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UNESCO, 2003b, *op. cit.*
- Ramakrishnan, P.S., Saxena, K.G. and Chandrashekara, U.M. (Eds). 1998. *Conserving the Sacred for Biodiversity Management*. New Delhi, India: UNESCO and Oxford and IBH Publishers.
- Ramakrishnan, P.S. 2003. "Conserving the sacred: The protective impulse and the origins of modern protected areas". In Harmon and Putney, *op. cit.*
- Rambaldi, G., Corbett, J., Olson, R., McCall, M., Muchemi, J., Kwaku Kyem, P., Weiner, D. and Chambers, R. (Eds). 2006. *Mapping for Change: practice,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 no 54. London, UK: IIED and Wageningen, The Netherlands: CTA. http://www.iied.org/NR/agbioliv/pla_notes/current.html
- Rambaldi, G., Tuivanuavou, S., Namata, P., Vanualailai, P., Rupeni, S. and Rupeni, E. 2006. "Resource Use, Development Planning, a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iji". In Rambaldi *et al.*, *op. cit.* pp.28–35.
- Ramírez, R. 1999. "Stakeholder analysis and conflict management". In Buckles, *op. cit.*
- Rose, D.B. 2002. "Sacred site, ancestral clearing, and environmental ethics". In Harvey, G., 2002, *Readings in Indigenous Religions*. London, UK: Continuum.
- Rössler, M. 2003. "World Heritage Sites: Toward linking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In Harmon and Putney, *op. cit.*
- Sandwith, T., Shine, C., Hamilton, L. and Sheppard, D. 2001. Reprinted in 2003.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for Peace and Co-operation*.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7.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UCN.
- Secaira, E. and Molina, M.E. 2005. *Planning for the Conservation of Sacred Sites in the Context of Protected Areas: An adaptation of a Methodology and lessons from its application in the Highlands of Western Guatemala*. The Nature Conservancy.
-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4. *Akwé: Kon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Cultural,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regarding Developments Proposed to Take Place on, or which are Likely to Impact on, Sacred Sites and on Lands and Waters Traditionally Occupied or Use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BD Guidelines Series). Montreal, Canada: CBD. <http://www.biodiv.org/doc/publications/akwe-brochure-en.pdf>
- Shepherd, G. 2003. "Operationalising the ecosystem approach". Presentation to SBSTTA, Nov 2003. http://www.iucn.org/themes/cem/documents/ecosapproach/esa_g.shepherd_9thcbd_sbstta_nov2003.pdf
- Shepherd, G. 2004. *The Ecosystem Approach: Five Steps to Implementation*. IUCN Ecosystem Management Series No 3. Gland, Switzerland: IUCN.
- Sindiga, I. 1996. "International Tourism in Kenya and the marginalisation of the Washwhili". *Tourism Management* 17(6): 425–432.

- Soutter, R., Ntiamoa-Baidu, Y., Smith, J. and Rana, D. 2003. "Recognising the contribution of Sacred Natural Sit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Paper delivered in Workshop Stream II – Building Broader Support for Protected Areas. Vth IUCN World Parks Congress.
- Stevens, S. 1997. *Conservation through Cultural Survival: Indigenous people and protected areas*. Washington, DC, USA: Island Press.
- Sukhbaatar, H. 2002. *Sacred Sites in Mongolia*. ARC, WWF and World Bank.
- Szabo, S. and Smyth, D. 2003. "Indigenous protected areas in Australia: incorporating indigenous owned land into Australia's national system of protected areas". In Jaireth and Smyth, *op. cit.*
- Taylor and Geffen, 2003. "Battling religions in parks and forest reserves: Facing religion in conflicts over protected places". In Harmon, and Putney, *op. cit.*
- Te Heuheu, T. 2006. "Culture Landscapes and the principle of guardianship". In UNESCO, 2006, *op. cit.*
- Thomas, L. and Middleton, J. 2003. *Guidelines for Management and Planning of Protected Area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10.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UCN.
- Tiwari, B.K., Barik, S.K. and Tripathi, R.S. 1998. "Biodiversity Value, Status, and Strategies for Conservation of Sacred Groves of Meghalaya, India". *Ecosystem Health* 4(1): 20–32.
- Tucker, M.E. and Grim, J. 2001. "Series Foreword". In Grim, J. (Ed.), 2001, *op. cit.*
- UNESCO. 2003a.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text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25/132540e.pdf> [last accessed at 20–09–2006].
- UNESCO. 2003b. (Lee, C. and Schaaf, T. (Eds.))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importance of sacred natural sit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Kunming and Xishuangbanna Biosphere Reserve, People's Republic of China, 17–20 February 2003. Paris, France: UNESCO.
- UNESCO. 2006. (Lee, C. and Schaaf, T. (Eds.)) *Proceedings of UNESCO-IUCN 'Conserving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The Role of Sacred Natural Sites and Cultural Landscapes'*; Tokyo, Japan (30 May–2 June 2005).
- UNESCO. 2007. (Jayakumar, R., Kim, E. and Karolyi, B. (Eds.)) *The protection of sacred natural sites; importanc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Proceedings of the 10th Meeting of the UNESCO-MAB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Terelj National Park Mongolia, 1–5 September 2007*.
- Ver Beek, K.A. 2002. "Spirituality: a development taboo". In Eade, *op. cit.*
- Verhelst, T. and Tyndale, W. 2002. "Cultures, spirituality and development". In Eade, *op. cit.*
- Verschuuren, B. 2006. "An overview of cultural and spiritual values in ecosystem management and conservation strategies". Paper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dogenous Development and Biocultural Diversity, October 2006, Geneva, Switzerland. (Available at: <http://topshare.wur.nl/naturevaluation/75146>).
- Verschuuren, B. 2008. "Power on this land. Sacred Sites management at Dhimurru Indigenous Protected Area in northeast Arnhem Land, Australia". Papayannis and Mallarach, 2008, *op. cit.*
- Wells, M., Brandon, K. with Hannah, L. 1992. *Link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with local communities*. Washington DC, USA: World Bank, World Wildlife Fun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West, P.C. and Brechin, S.R. (Eds). 1991. *Resident peoples and national parks: Social dilemmas and strategies in international conservation*. Tuscon, AZ, US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Wickramsinghe, A. 2005. "Adam's Peak Sacred Mountain Forest". In UNESCO, 2003b, *op. cit.*
- Wickramsinghe, A. 2005. "Adam's Peak in the cultural landscape of Sri Lanka: evidence of an eco-cultural basis for conservation". In UNESCO, 2006, *op. cit.*
- Wild, R.G. and J. Mutebi. 1996. *Conservation through community use of plant resources: establishing collaborative management at Bwindi Impenetrable and Mgahinga Gorilla National Parks, Uganda*. Working Paper 6, People and Plants Programme, UNESCO, Kew, WWF.
- Wild, R.G., Millinga, A. and Robinson, J.M. 2007. Microfinan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t selected sites in Tanzania and Kenya. Unpublished report for WWF-UK and LTS International.
- Wiley, E.A. 2003. *Community-based land tenure management: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anzania's new land management act*. Issue paper no. 120. Drylands Programme. London, U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
- Xiaoxin, H. 2007. *Taking Care of Nature: Building up the Daoist Ecology Temple by our own hands: The Second Workshop on Daoism and Conservation*, July 2007, Taibaishan, China, A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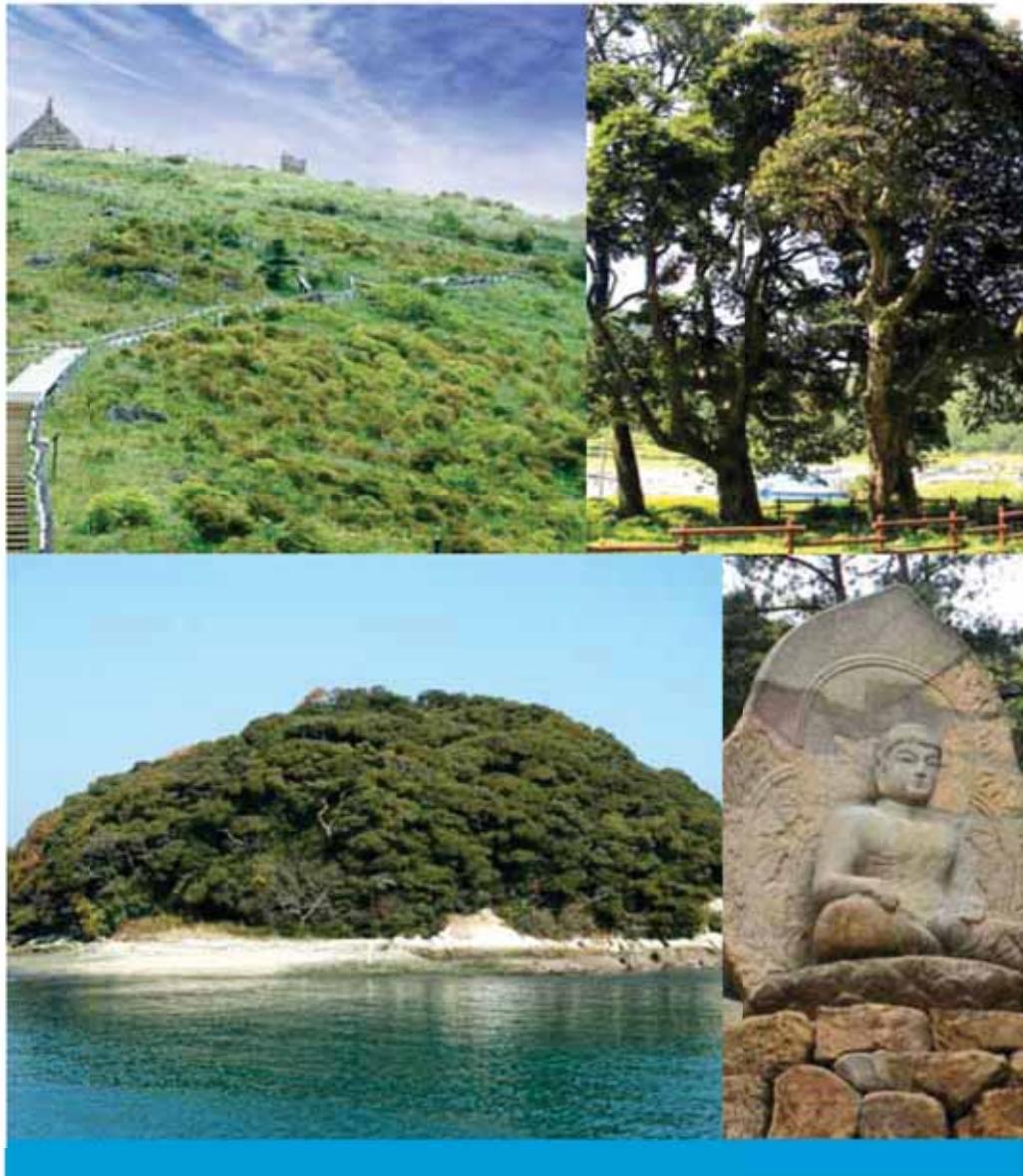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CONSERVATION DE LA NATURE

SIEGE MONDIAL
Rue Mauverney 28
1196 Gland, Suisse
mail@iucn.org
Tel + 41 22 999 0000
Fax + 41 22 999 0015
www.iucn.org



www.paforum.or.kr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44 태영빌딩 12층
전화 : 02-3279-2806
팩스 : 02-3279-2833



비매품

93530



9 788990 126481
ISBN 978 89 90126 48 1